

통계개발원
정책연구 용역

국가공식 범죄통계 연구

A Report on
National Official Crime Statistics

2008. 11.

통 계 개 발 원

제 출 문

제 출 문

통 계 개 발 원 장 귀 하

본 보고서를 “국가공식 범죄통계 연구” 과제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병철

연 구 진

연구책임자 탁종연 (한남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전영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이희길 (통계개발원)

심수진 (통계개발원)

요약문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국가공식 범죄통계 연구		
중심단어	범죄통계, 검찰통계, 경찰통계, 통계원표		
연구기관	한남대학교	연구책임자	탁종연
연구기간	2008. 4. 11. ~ 2008. 11. 10.		
<p>본 연구는 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 등 한국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통계의 작성주체인 경찰, 검찰, 해경 등의 원자료 작성 및 입력과정, 처리과정 및 활용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비교 검토하였다.</p> <p>연구결과, 한국의 공식범죄통계는 작성기관에 관계없이 정확성과 적정성 등의 측면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모든 기관 공히 입력단계에서의 무작위 오류의 가능성이 높았고, 이를 검증할 마땅한 인적·시스템적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의 분류·분석이나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수사기관들의 범죄통계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 때문으로, 이에 따라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고, 통계관리에 대한 연구·교육·감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p> <p>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확성과 적정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방안을 제시하였고, 제도적인 개선안으로 주요 기관에 가칭 범죄통계관리팀을 신설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범죄통계관리를 위한 교육 및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범죄학자 및 통계전문가로 구성된 범죄통계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범죄통계의 정책과 공개심의 등 통계업무를 보조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범죄통계 관리의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둘 것을 권고하였다.</p>			

Project Summary

Title of Project	A Report on Official Crime Statistics		
Key Words	Crime statistics, official crime statistics, police statistics, clearance rate		
Institute	Hannam University	Project Leader	Tark, Jongyeon
Project Period	2008. 4. 11 ~ 2008. 11. 10.		
<p>In this research, we attempted to reveal the problems involving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alyzing, and reporting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by the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including the police, the marine police, the prosecutors, and the special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more importantly to provide a master plan to fix them. In order to do so, we analyzed the whole process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compared them with those of the American and the Japanese counterparts.</p> <p>It was found that the Korean official crime statistics included a variety of serious problems in terms of accuracy and relevancy, regardless of who handled the statistics.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did not employ relevant methods to warran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statistics. In addition to that, they did not fully utilize the data they have collected in part due to lack of human resources and in part due to lack of the proper system that might fix the errors.</p> <p>Several methods were suggested to address those problems. One of the methods was to adopt new technics and standards. Also suggested were: (a) to create a crime statistics management team, (b) to establish a crime statistics advisory board, and (c) to establish a law supporting the process of utilizing the crime statistics.</p>			

< 차 례 >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국가공식 범죄통계	1
제 2 절 각종 범죄통계들의 특성과 한계	2
1. 공식 범죄통계의 특성	2
2. 공식범죄통계의 한계	3
3. 범죄피해조사와 자기보고식 조사	4
제 3 절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6
제 2 장 연구방법	8
제 1 절 한국 범죄통계관리 실태조사	8
제 2 절 외국의 통계관리 실태조사	10
제 3 장 선행연구 분석	11
제 4 장 외국의 범죄통계 관리사례 검토	14
제 1 절 미국	14
1. 미국 연방수사국의 범죄통계 관리	14
2. 미국 UCR 범죄통계 수집절차와 자료활용	15
3. NIBRS 시스템하의 범죄통계	17
4. 미국 범죄통계 품질관리	21
5. 미국사례 소결론	22

제 2 절	일본	24
1.	경찰통계	24
2.	검찰통계	35
3.	사법통계	36
4.	일본사례 소결론	38
제 5 장 한국의 공식범죄통계		41
제 1 절	우리나라 범죄통계의 연혁	41
제 2 절	한국 공식범죄통계 개괄	44
1.	범죄통계 수집기관	44
2.	범죄통계의 법률적 근거	45
3.	수집 대상범죄 및 현황	46
4.	수집통계의 내용과 그 비판	48
제 3 절	검찰의 공식범죄통계	54
1.	검찰의 범죄분석 자료수집	54
2.	통계책자의 발간과 내용 및 구성	56
제 4 절	경찰의 공식범죄통계	58
1.	경찰의 범죄통계 수집절차	58
2.	경찰의 범죄통계 관리와 활용	63
제 5 절	해양경찰 및 특별사법경찰의 공식범죄통계	71
1.	해양경찰	71
2.	특별사법경찰	72
제 6 장 한국 공식범죄통계의 발전을 위한 제안		73
제 1 절	기술적 개선안	73
1.	범죄통계의 정확성 제고안	73

2. 범죄통계의 적정성 향상방안	77
3. 범죄통계자료 공개방안	85
제 2 절 제도적 개선안	90
1. 가칭 범죄통계관리팀의 신설	90
2. 통계교육 및 감사 강화	91
3. 범죄통계 자문위원회 운영	93
4. 관련 법규 정비	93
5. 통계 작성기준 재검토	94
제 7 장 결 론	96
제 1 절 연구요약	96
제 2 절 연구의 함의	97
참고문헌	99
부록	102

< 표 차례 >

<표 1> 미국 NIBRS Group A 범죄용 53개 세부입력 항목	19
<표 2> 일본 범죄통계원표 내용	24
<표 3> 범죄의 인지에 관한 정의	25
<표 4> 범죄의 검거에 관한 정의	28
<표 5> 평성18년의 범죄 주요 통계표 일람	31
<표 6> 경찰백서와 범죄백서의 비교표	32
<표 7> 2007년판 경찰백서의 구성	33
<표 8> 연간통계 (예시)	34
<표 9> 특별조사통계 (예시)	35
<표 10> 검찰통계의 기본적 내용	36
<표 11> 형사사건 관계 사법통계의 기본적 내용	37
<표 12> 소년사건 관계 사법통계의 기본적 내용	38
<표 13> 한국 범죄통계 관련 연혁	41
<표 14> 우리나라 대표적인 범죄통계	43
<표 15> 한국 범죄통계원표의 주요 내용	50

< 그림 차례 >

<그림 1> 미국 범죄통계 수집절차도	16
<그림 2> 일본 경찰통계 작성과정	26
<그림 3> 2007년 총 범죄발생 사건 중 각 기관별 처리비율	47
<그림 4> 한국 범죄통계 집계절차도	59

제 1 장 서론

제 1 절 국가공식 범죄통계

국가공식 범죄통계(official crime statistics¹⁾)란 범죄현상을 다루는 국가기관이 수집하는 범죄관련 통계라고 할 수 있다. 국가공식 범죄통계(이하 공식범죄통계)는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즉 범죄현상 자체에 대한 통계와 범죄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응활동, 즉 수사, 기소, 판결, 행형 등에 대한 통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Mosher et al., 2002). 각 나라별로 수집 및 발표 주체, 통계내용 등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공식범죄통계라고 할 때 대체로 국가의 중심 수사기관이 한 해 동안 수사한 사건의 내용과 결과를 요약한 형태로 나타난다(김준호·이동원, 1991; see FBI, 2008; 일본경시청, 2008). 한국의 경우,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여 「범죄분석」과 같은 통계간행물의 형태로 배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공식범죄통계 중, 각급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범죄통계, 즉 범죄현상 발생과 검거에 관련한 통계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한 것이다.

공식범죄통계는 치안 정책을 수립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Bachman & Paternoster, 2004; Maxfield & Babbie, 2001). 국내외에서 범죄사건 통계치는 시민들의 치안수요와 삶의 질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쓰이며(Felson, 2002), 범죄사건의 검거율은 형사사법기관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되기도 한다(Walker & Katz, 2005; Skogan, 2004; Langworthy & Travis, 2003). 또한, 이러한 통계치는 형사사법기관에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할 때 이용하는 기준이 되곤 한다. 따라서 한국의 검찰청과 경찰청 등 형사사법기관들은 오래전부터 각 기관에서 처리한 각종 범죄사건

1) official crime data라고도 불린다 (Mosher et al., 2002)

에 대한 정보를 통계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범죄분석」, 「범죄 통계」와 같은 통계간행물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국가기관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치안관련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경찰청, 2007).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기관은 공식범죄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범죄통계의 수준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통계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경찰청, 2007). 경찰의 경우, 지난 2000년에 미국 뉴욕경찰국 등에 쓰였던 범죄분석예측시스템(CompStat)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개량해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임준태, 2000), 2004년부터 새로운 사건관리 및 분석 프로그램인 범죄정보관리시스템(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or CIMS)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이건·이현희, 2005). 따라서 현재 경찰 수사관들은 모두 'CIMS'에 범죄통계원표의 내용을 입력하고 있으며, 범죄통계자료는 이를 경찰청에서 취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검찰에서도 'E-Pros'라는 범죄통계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 활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과 검찰의 범죄통계시스템을 통합하려는 형사사법통합정보체계(이하 형통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 2 절 각종 범죄통계들의 특성과 한계

1. 공식범죄통계의 특성

공식범죄통계는 수세기 동안 범죄현상을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공식범죄통계가 가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밝혀짐에 따라, 근래 들어 다른 방식의 범죄통계 추정방식이 병행되어 사용되게 되었다. 이하에서 각각의 범죄통계 측정법은 독특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공식범죄통계의 가장 큰 장점이자 특징은 경찰과 검찰 등 국가의 공식기

관이 작성한 공식적 자료(official data)라는 것이다. 전문적으로 훈련된 수사관들이 범죄로 인정한 행위만을 기록하기 때문에 범죄의 당사자들인 시민들이 느낀 범죄현상보다 형법상 범죄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전국적으로 하나의 형법이 적용되는 나라에서는 상당히 높은 측정의 신뢰성이 담보된다고 볼 수 있다.

2. 공식범죄통계의 한계

하지만, 공식범죄통계는 상당한 문제점과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공식범죄통계에는 시민들이 신고하지 않거나(under-reporting), 형사사법당국이 직접 밝혀내지 못한 사건들은 기록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를 통상 숨은 범죄 또는 암수범죄(hidden crimes)라고 부르는데, 일각에서는 피해자조사와 같은 방법을 쓰더라도 일정량의 범죄는 드러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반론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경찰에 보고하지 않는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은 미국 등의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고, 특히 한국과 같이 신고율이 낮은 나라(김지선 외, 2007)에서는 이러한 우려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식범죄통계는 또한 범죄현상의 변화 자체뿐 아니라 형법의 개정, 형사사법당국의 정책, 또는 통계 작성관행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신뢰도에 대한 의심이 제기될 수 있다(Hofer, 2000). 즉, 특정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거나 감소하면 이것이 그대로 범죄통계에 반영될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통계작성 방법의 변화가 범죄통계를 크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Mosher et al., 2002; 탁종연, 2006).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와 가정폭력범죄는 범죄자체의 증가라기보다는 이러한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관심이 증가한 탓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00년에 절도와 강도 등 범죄발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범죄통계의 진실성을 높이려는 당시 경찰청장의 ‘통계원년의 해’ 정책 탓이라는 분석

유력하다(탁종연, 2006).

셋째, 더욱이 이런 공식통계의 축소와 왜곡 문제점은 특정 계층과 특정 범죄에 있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강간 등 성범죄, 가정폭력 범죄는 특히 다른 범죄에 비해 신고율이 낮다는 것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다. 또한 마약, 성매매, 뇌물수수와 같은 피해자 없는 범죄 또는 기업범죄 등 피해자를 특정하기 힘든 범죄의 경우 신고율이 다른 범죄에 비해 낮다는 점도 잘 알려져 왔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공식범죄통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측정방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3. 범죄피해조사와 자기보고식 조사

가. 범죄피해조사

현재 범죄현상 자체에 대한 공식범죄통계의 대안으로 피해조사(Victimization Survey)와 자기보고식 조사(Self-Report Survey)를 들 수 있다. 이들 모두 공식범죄통계가 체계적으로 범죄현상을 축소, 왜곡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위에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된 것으로서 각각 독특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피해자조사는 무작위로 추출된 범죄피해자들 즉 일반 시민에게 일정기간동안 자신들이 경험한 범죄피해에 대해 질문하여 그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196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 국가에서 시작되어 공식범죄통계에서 밝히지 못하는 숨은 범죄, 즉 신고 되지 않은 범죄사건까지 밝혀내는 장점 등으로 인해 현재 미국, 영국,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다(Cantor & Lynch, 2000). 하지만, 이 피해자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소수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로서의 일반적 한계는 물론, 피해자의 기억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 소수의 한정된 범죄 유형만을 대상으로 조사한다는 점, 살인, 기업범죄, 마약사용, 성매매와 같이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분명치 않은 경우는 조사할 수 없다는 점, 범죄의 내용

에 대한 공식적인 판단에 기초하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Mosher et al., 2002). 특히 매년 수 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불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3-4년에 한 번씩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김지선 외, 2007) 국가전체의 범죄현상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서 공식범죄통계에 비견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²⁾.

나. 자기보고식 조사

자기보고식 조사(Self-Report Survey)도 경찰 등 공식기관에 알려지지 않은 범죄현상을 밝혀내기 위해 고안된 설문조사방법으로서 1940년대 이후 미국의 범죄학자들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Mosher et al., 2002). 이 방법은 주로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이 일정기간 동안 저지른 범죄에 대해 스스로 설문조사를 통해 보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공식범죄통계나 피해자조사로도 알 수 없는 다양한 범죄와 일탈현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인해 범죄학의 원인이론을 분석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예: Hirschi, 1969). 다만, 일부 대상자만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로서의 근본적 한계 외에도, 설문응답의 진정성, 설문대상자의 대표성, 그 내용의 일반화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대상범죄도 한정된다는 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공식범죄통계처럼 국가전체의 범죄현상을 파악하는 자료로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에야 청소년 등 일부계층의 일부 범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이러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위에서 간략히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현상을 측정하는 세 가지 방식 중 피해자조사와 자기보고식 조사는 이제 맹아기에 있으므로, 향후 표본의 크기와 설문의 내용 등이 획기적으로 발전된 후에야 국가 범죄현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효용성을 갖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 때까지는 한국의 형사정책을

2) 2008년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표본의 부족 등으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전면적인 보완작업을 준비 중에 있다.

펼치기 위한 기초자료는 공식범죄통계 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식범죄통계는 지적인 바와 같이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문제의 양태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공식범죄통계가 가진 내재적 한계 외에도, 통계분류, 수집, 발표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계속 보고된 바 있으므로(김준호·이동원, 1991; 탁종연, 2006; 탁종연, 2007), 이에 대한 치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까지 경찰의 통계관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검찰(예외: 김준호·이동원, 1991)이나 해양경찰청, 기타 특별사법경찰의 범죄통계 관리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공식 범죄통계가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도 알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한국의 국가 공식 범죄통계가 어떻게 수집되고, 관리되고, 활용되는지를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국가 치안정책수립과 통계관리 차원에서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절 보고서의 목적과 구성

본 연구는 첫째, 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 등 한국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공식 범죄통계의 원자료 작성 및 입력과정, 처리과정 및 활용실태를 세밀히 검토하여 범죄통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공식범죄통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둘째, 통계의 관리에 관련된 문제점의 발생원인과 개선대책을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의 공식범죄통계 관리 실태를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범죄통계의 품질제고 및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증대하고자

한다. 셋째, 궁극적으로 본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한국 국가통계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식범죄통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이를 통한 국가치안정책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먼저, 연구의 조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서술한 후, 그간 한국의 범죄통계 작성 절차와 내용에 대해 고찰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미국과 일본의 범죄통계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한국의 범죄통계관리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경찰, 해경, 검찰 등 범죄통계의 작성 주체에 대한 직접 조사결과를 제시한다. 특히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 등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범죄통계관리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안을 종합·제시하였다.

제 2 장 연구방법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국내외의 문헌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간 진행된 범죄통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범죄통계 관리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과 규정들을 살펴보았다. 외국의 범죄통계 관리 실태는 그 나라의 학술논문과 관련 기관의 웹문서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둘째,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계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범죄통계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실무자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포커스 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분석하는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을 채용하였다. 선행연구는 통상적인 문헌연구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하에서 질적 연구조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 범죄통계 관리실태 조사

본 연구의 실태조사는 검찰, 경찰, 해양경찰청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한 1차 실태조사와, 경찰과 검찰의 통계담당자에 대해 본 연구진이 공동으로 진행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로 이루어졌다.

먼저, 우리는 범죄통계의 관리 전 과정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찰, 해양경찰, 검찰을 각각 직접 방문하여 통계관리 담당자들에 대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검찰의 경우, 먼저 연구진들이 선행연구와 검찰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면접대상자를 파악한 후, 면접요청 공문을 시행하여 검찰청으로부터 공식 면담 수락을 받은 후에 면접을 진행할 수 있었다. 면접에 앞서 연구진은 검찰의 정책수립과정, 검찰 및 타 수사기관의 통계수집과정, 통계수집과정에서의 오류대응방식, 통계활용 방안 및 공개방안 등에 대한 질문지를 미리 만드는 준비를 하였다.

본 면접은 2008년 5월 서울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범죄분석 책자를 작성하

는 실무관 및 검찰내부 통계담당자, 그리고 E-Pros 시스템의 전산담당자를 모아 공동으로 1시간 정도에 걸쳐 시행하였다. 이들과의 일차 면접을 통해 범죄분석 작성과정 및 문제점, 데이터의 보관 및 활용, 그리고 관리실태 등을 주로 파악하였다. 대검은 경찰, 해경, 특별사법경찰의 모든 범죄통계를 한번에 수집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의 통계 연계 및 통합과정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통계와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물론 통계개발원의 담당자가 같이 참여하였다.

검찰의 범죄통계담당부서를 방문한 후에는 실제 검찰관서에서 어떻게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통계를 입력, 활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때에도 검찰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사전에 면접 수락을 받고 실시하였다. 면접대상자는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 1곳을 연구진이 임의로 선택한 후, 대검의 통계담당직원의 협조를 구해 현지 방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면담은 지방검찰청에서 통계를 관리하는 사건계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들에게 검찰자체의 통계자료 입력, 특별사법경찰 통계자료 입력, 경찰통계자료의 활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연구자들이 실제 컴퓨터를 이용해 관리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통상 행정기관 직원들은 자신의 업무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비밀보장을 약속하고 무기명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현장방문조사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각 기관에 대한 방문조사는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개별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마무리된 후, 2008년 10월, 연구진 전원 및 통계개발원의 담당자가 주도하여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대검과 경찰청의 범죄통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실시하였다. 해양경찰의 경우 1차 방문조사에서 경찰과 수집통계의 내용 및 시스템이 동일하다는 점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포커스그룹 면접에는 제외하였다. 연구원들은 현장조사에서 파

악한 통계기록, 관리 및 활용실태의 자료와 외국형사사법기관의 통계정보 활용실태 자료를 근거로 이들 전문가들과 한국 범죄통계관리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논의와 함께 더 효율적인 통계자료 관리, 활용방안 수립과 공개범위 설정 등 범죄통계의 발전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제 2 절 외국의 통계관리 실태조사

본 연구에서는 외국 범죄통계관리부서의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한국에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다. 이상적으로는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구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으나 예산과 시간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문헌연구를 통해 이를 실시하였다.

미국은 범죄학과 형사사법이 가장 발달한 국가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구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미국 범죄통계는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운영하는 두 개의 범죄통계 시스템 중 '표준범죄보고'(Uniform Crime Reports)와 '전국사건기반보고시스템'(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or NIBRS)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다. 미국 범죄통계에 관련된 국내외 학술논문과 서적, 연방수사국 및 OMB의 웹페이지 등을 통해 미국범죄통계의 내용과 관리방법 등을 조사하여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에서 참고할 점을 파악하여 제시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 형사법의 모태일 뿐만 아니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범죄통계원표를 이용한 통계수집 및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 대한 조사는 법체계적으로 유사한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클 것이므로 반드시 연구가 필요한 분야였다. 일본에 대한 조사는 현지에서 발행된 범죄통계 연구서와 일본경찰의 공문서 및 일본 사법기관의 웹페이지 검색을 통해 실시하였다.

제 3 장 선행연구 분석

범죄통계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몇몇 선행연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최초의 연구로는 김준호와 이동원(1991)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범죄통계를 다룬 최초의 연구로서 우리나라 공식 범죄통계에 대한 개관, 미국 및 일본과 우리나라의 범죄 분류 방식, 기초자료의 종류 및 내용, 범죄통계원표의 작성, 수집, 처리과정, 통계 책자의 발간 및 내용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토대로 범죄통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을 보면, 먼저, 범죄분류에 있어서 검찰통계의 분류 방식을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 범죄의 경우 범죄성격을 고려하여 재분류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범죄성격상 형법범죄이지만 법규가 특별법으로 되어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중 강도, 절도, 약취유인, 체포 및 감금과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을 형법범죄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원표양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예를 들면 피의자통계원표에서의 범죄원인 삭제를 제안하였다. 그 이유는 형법범뿐만 아니라 특별법 범죄까지도 포괄하기는 어렵고,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외에 범죄통계원표의 작성, 수집 및 처리과정, 「범죄분석」의 발간과 내용 등에서의 개선방안도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원표작성자에 대한 교육, 원표검토 및 확인과정의 필요, 일선 경찰서에 통계요원의 배치, 연간 「범죄분석」의 발간 등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 중 일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현재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에서는 ‘폭력행위등처벌법’위반을 형법범죄로 분류하고 있으며, 연간으로 발간되고 있다.

다음으로 권세혁과 탁종연(2007)의 경찰통계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

에서는 형사사건이 기록된 CIMS 시스템과 교통사고 관련 통계인 TAMS를 중심으로 경찰의 통계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였다. 범죄통계에 관련하여, 이들은 경찰이 범죄사건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상당한 양의 통계를 잘못 입력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며, 수집하는 통계의 내용과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고, 통계내용을 관리할 전문 인력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들은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경찰통계의 생산 및 활용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개선안에는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 원표 항목의 내용과 입력기준의 현실화, 통계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재구 등(2008)의 국가통계(범죄분석통계) 품질진단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범죄분석 통계의 목적 등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범죄분석에 대해 품질차원별로 검토하였다. 품질차원에는 관련성(통계자료가 포괄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정도), 정확성(추정값과 참값의 근접성), 시의성(작성기준시점과 결과발표시점간의 차이)과 정시성, 비교성(시공간이 달라도 통계자료가 공통된 기준을 근거로 집계되어 신뢰할만한 비교가 가능한지를 나타내는 지표), 일관성(서로 다른 출처와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되지만, 동일한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경우 각 통계자료가 얼마나 유사한지를 나타내는 정도) 등이 있다. 이러한 차원별로 「범죄분석」을 진단하면서, 관련성에 있어서는 공표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지만 관련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확성과 관련해서 보면, 범죄통계는 수사기관에서의 사건 처리결과를 집계한 내용으로 정확성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통계원표 입력시 CIMS 및 E-Pros 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입력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처리과정에서 바로 잡아 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보았다. 다만 최초 작성자의 자의에 의한 입력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시의성과 정시성을 보면, 공표시점이 익년 9월말이어서 시의성 문제가 있

다고 보았으며, 매년 자료를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므로 정시성을 지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비교성을 보면, 범죄분석통계에서 범죄수사사건은 1980년부터 2006년까지 시계열자료가 잘 유지되며, 범죄종류의 경우 1974년부터 시계열자료가 유지되는 등 비교성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관성과 관련해서 보면, 「검찰연감」은 경찰에서 발표하는 범죄자료가 제외되어 있고, 「경찰통계연감」의 경우는 검찰에서 발표하는 범죄자료가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개선방안을 보면, 통계작성환경과 관련해서 통계전문가 확보 및 양성, 통계작성절차와 관련해서 이용자의 수요조사를 통한 통계항목 발굴, 자료수집 타당성과 관련해서 범죄수법의 다양화에 따른 통계원표 변경, 경찰과 검찰 전산망의 통합화 필요, 특사경의 통합전산망 보급필요, 통계작성자 교육 및 관리를 제안하였다. 또한 통계자료서비스의 충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통계품질차원의 개선방안으로는 공표시기를 앞당기는 등의 시의성 제고, 범죄통계들의 일관성 제고, 통계자료의 접근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범죄통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았다. 김준호와 이동원(1991)의 연구와 정재구 등(2007)의 연구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에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으며, 권세혁과 탁종연(2007)의 연구는 경찰통계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과 더불어 우리나라 전체 범죄통계의 생산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실태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공식 범죄통계에 대한 실태파악 및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4 장 외국의 범죄통계 관리사례 검토

제 1 절 미국

1. 미국 연방수사국의 범죄통계 관리

미국의 공식범죄통계의 시작은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0년 대 이전 미국에는 주마다 심지어 도시마다 범죄에 대한 개념정의가 달랐을 뿐 아니라 범죄통계 수집절차 등이 현저히 차이가 나, 미국 전역의 범죄현황을 포괄하여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Mosher et al., 2002). 1929년 국제경찰장회의(IACP)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전역의 경찰관서들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범죄통계보고시스템을 고안하여 1930년 1월 처음 발표하였다. 같은 해 9월부터는 한국의 경찰청 역할을 하는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이 구체적 업무를 이어 받아 전국 경찰관서로부터 범죄통계수집, 발표, 저장 등 ‘표준범죄보고’(Uniform Crime Reports or UCR) 프로그램을 관리해오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미국의 가장 중추적인 범죄통계 정보시스템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 UCR프로그램에서는 처음부터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주로 전통적인 범죄(street crimes)에 중점을 두고 관리해 왔다. 특히, 초점을 두는 것이 소위 지표범죄(Index Crimes) 또는 1군 범죄(Part I offenses)라고 부르는 8개 범죄인데, 여기에는 폭력범죄인 살인, 강간, 강도, 가중 폭행(상해) 등 4개 범죄와 재산범죄인 주거침입, 절도, 자동차절도, 그리고 방화 등 4개 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이외에도 소위 2군 범죄(Part II Offenses) 또는 비지표 범행(non-index crimes)이라고 부르는 범죄들에 대한 통계치도 수집하고 있는데, 이들도 대부분 전통적인 범죄이다.

UCR의 자료는 현재 한국 검찰에서 제공하는 범죄통계와 유사한 요약정보

(summary data) 형태로, 나름대로 미국 치안정책 수립에 기여를 해왔으나, 1970년 후반부터 UCR의 통계정보가 요약정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 정책 목적이나 학문 연구목적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수년간의 연구 끝에 ‘UCR 프로그램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통해 개선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 개별 경찰관서가 FBI에 관할 범죄통계를 보고할 때 요약통계가 아닌 개별사건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고토록 하는 ‘전국사건기반보고시스템’(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or NIBRS)이 개발되었다.

비록 여전히 미국의 기본 범죄통계 시스템은 UCR이지만, 개별범죄사건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된 NIBRS가 서서히 시스템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즉, 현재 미국에는 NIBRS 방식과 구 UCR방식이 병존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보고시스템을 쓰느냐 하는 것은 경찰관서의 재량이며, 따라서, 많은 미국 경찰관서는 아직도 요약정보 위주의 UCR을 사용하고 있다. 2007년 현재, FBI에 UCR 범죄통계를 제출하는 기관 중 38%가 NIBRS를 통해 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이 담당하는 인구는 미국 인구의 약 25%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UCR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 NIBRS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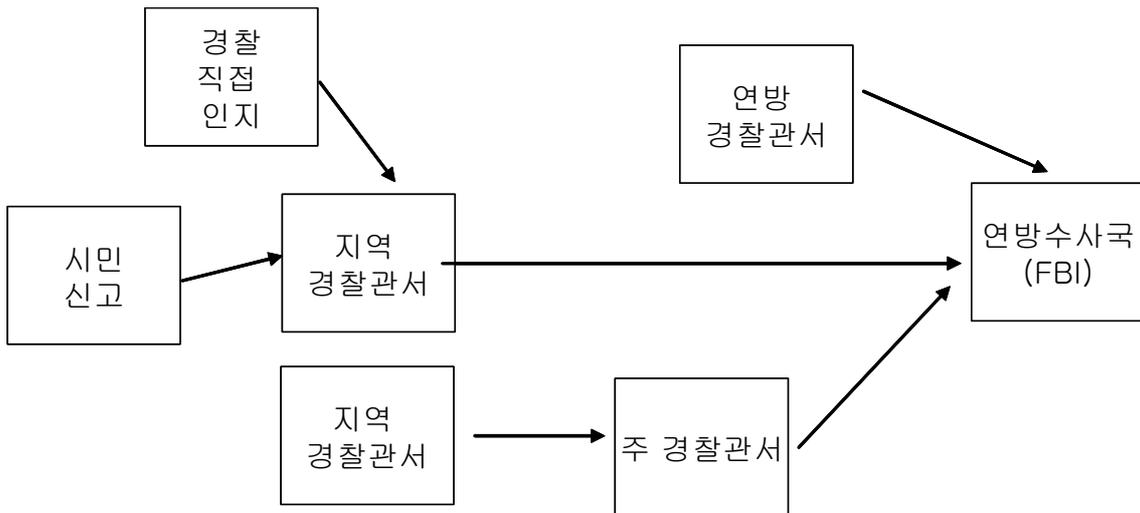
2. 미국 UCR 범죄통계 수집 절차와 자료 활용

1930년대부터 미국의 17,000여 경찰조직은 UCR 방식에 따라 관할구역내 범죄정보를 요약하여 FBI에 보고하여 왔으며, FBI는 이러한 정보를 통합하여 미국내 범죄현황에 대한 자료를 구성하고 발표해 왔다(FBI, 2008). UCR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시골지역이나 소도시지역에서는 범죄통계가 집계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발적인 권고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경찰관서들이 참여하여 2000년 현재 97% 이상의 미국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통계치가 집계되고 있다(FBI, 2008).

UCR의 범죄통계 수집방식은 우편에 의한 서류취합 방식이다. FBI는 보고양식(report forms)과 범죄수 계산용지(tally sheets), 그리고 반송봉투를 제공하며, 전국의 각 경찰관서들은 보고양식과 범죄계산용지를 작성하여 매달 직접 FBI에 송부하거나 또는 주 경찰국을 경유하여 관내 범죄통계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UCR에서 계산하는 범죄사건은 시민들이 신고한 사건과 경찰 스스로 적발한 사건, 즉 경찰에게 알려진 사건(crimes known to the police)이다(FBI, 2008). 따라서, 경찰의 체포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접수되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계산한다³⁾.

(가) <그림 1> 미국 범죄통계 수집 절차도



FBI에서는 전국에서 수집한 범죄통계를 이용하여 매년 이를 분석하고 공개한다. 현재 FBI 웹사이트(<http://www.fbi.gov/ucr/ucr.htm>)에서 범죄요약통계와 이를 이용한 미국의 범죄(Crime in the United States), 증오범죄통계

3) 이렇게 된 데에는 버클리 경찰서장이자 경찰개혁가인 August Vollmer의 역할이 컸다. 그는 경찰의 체포통계는 경찰에 의한 왜곡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Mosher et al., 2002).

(Hate Crime Statistics), 살해 또는 폭행당한 법집행관들(Law Enforcement Officers Killed or Assaulted) 등 각종 분석 보고서를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살인(Homicide)의 경우, 그 중요도를 감안하여 ‘보충 살인보고’ (Supplementary Homicide Report)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 인종, 나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용된 무기,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FBI에서는 더 나아가 요청이 있을 때 형사사법 정보서비스과(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ervices Division or CJIS)를 통해 ‘미국의 범죄’ 등 각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한 파일은 물론, 보충살인보고, 경찰관 고용인, 방화, 범인의 인종 및 성별 등 보다 더 자세한 파일을 아스키(ASCII)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3. NIBRS시스템하의 범죄통계

미국 범죄통계관리에 대한 가장 혁명적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NIBRS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체제하에서는 각 경찰기관들이 범죄통계정보를 FBI에 보고할 때 UCR에서처럼 요약정보만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세부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NIBRS가 기존 UCR 프로그램과 가장 구별되는 점은 요약통계가 아닌 “범죄사건에 기초한”(incident-based) 통계보고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즉, NIBRS의 가장 큰 특징은 경찰이 인지한 범죄사건(crime incident)을 기본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다. 범죄사건은 “같은 가해자 또는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 그룹이나 같은 가해자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저지른 하나 또는 다수의 범죄”로 정의 된다 (FBI, 2007). 한국 경찰의 CIMS와 ‘입력단위’가 유사하지만 보다 포괄적이고 사건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다.

NIBRS에서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기록하는 통계정보의 양을 달리하고 있다. 중요범죄라 할 수 있는 22개의 Group A 범죄에는 후술하는 52개 항목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입력하지만, 경미범죄라고 할 수 있는 Group B의 범죄에는 체포된 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 기록하게 된다. Group A에는 방화, 폭력행위, 뇌물, 주거침입범죄, 위조, 손괴, 마약, 횡령, 공갈, 사기, 도박, 살인, 납치/유괴, 절도, 자동차절도, 음란물, 성매매, 강도, 성범죄, (비강요)성범죄, 장물관련, 무기관련법 위반 등 22개 범주의 범죄들이 속하며, 이는 다시 46개의 범죄로 세분화된다. Group B에는 부정수표, 통금/배회, 무질서행위, 음주운전, 만취(drunkenness), 가족간 비폭력 범죄, 주류관련법위반, 훔쳐보기(Peeping Tom), 가출, 타인소유지 침범, 그리고 기타 범죄 등이 있다.

(나) <표 1> 미국 NIBRS GroupA 범죤용 52개 세부입력 항목

통계표 부분명	세부 입력내용	
행정요소 (Administrative Segment)	1. ORI Number 3. Incident Date/Hour 5. Exceptional Clearance Date	2. Incident Number 4. Exceptional Clearance Indicator
범죤 부분 (Offense Segment)	6. UCR Offense Code 8. Alcohol/Drug Use by Offender 10. Number of Premises Entered 12. Type of Criminal Activity	7. Attempted/Completed Code 9. Type of Location 11. Method of Entry 13. Type of Weapon/Force Used
피해품 부분* (Property Segment)	14. Type of Property Loss 16. Property of Value 18. # of Stolen Motor Vehicles 20. Suspected Drug Type 22. Type Drug Measurement	15. Property Description 17. Recovery Date 19. # of Recovered car 21. Estimated Drug Quantity
피해자 부분 (Victim Segment)	23. Victim (sequence) Number 25. Type of Victim 27. Sex of Victim 29. Ethnicity of Victim 31. Homicide/Assault Circumst. 33. Type of Injury 35. Relation of Victim to Of-der	24. Victim UCR Offense Codes 26. Age of Victim 28. Race of Victim 30. Resident Status of Victim 32. Justifiable Homicide Circumst. 34. Related Offender Number
가해자 부분 (Offender Segment)	36. Offender Number 38. Sex of Offender	37. Age of Offender 39. Race of Offender
피체포자 부분* (Arrestee Segment)	40. Arrestee (sequence) Number 42. Arrest Date 44. Multiple Clearance Indicator 46. Arrest Armed Indicator 48. Sex of Arrestee 50. Ethnicity of Arrestee 52. Disposition of Arrestee Under	41. Arrest Transaction Number 43. Type of Arrest 45. UCR Arrest Offense Code 47. Age of Arrestee 49. Race of Arrestee 51. Resident Status of Arrestee

주: * 해당사항이 있을 때만 입력한다.

출처: National Incident-Based Reporting System.

NIBRS의 특징은 개별 범죄, 특히 Group A에 속한 범죄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를 자세하게 입력 관리한다는 점이다(FBI, 2008). 모든 Group A 범죄에 대해 (i) 행정요소, (ii) 범죄, (iii) 피해자, (iv) 가해자 부분(segment)들을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v) 피해재산과 (vi) 피체포자에 대한 부분도 입력할 수 있다. NIBRS의 입력방법이 한국 등 다른 나라의 통계원표와 구별되는 점은, 그 범죄사건(incident)에 포함된 범죄, 가해자, 피해자, 범죄자, 재물, 피체포자가 여러 개라면, 모든 부분에 대해 ‘각각’ 입력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 범죄사건(incident)내에 저질러진 범죄가 여러 건 이라면 10건까지 각 범죄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도 999명까지, 가해자는 99명까지, 피해재산과 체포된 자 부분은 해당 대상 별로 각각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각각의 범죄에 대한 기록이 이뤄지기 때문에 기존에 한 범죄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하나만을 기록하던 위계적 최수산정법(Hierarchy Rule)보다 더 많은 범죄가 기록된다는 점⁴⁾이다.

또한, 각 단위의 내용도 최대한 정확하게 하기 위해 재물의 경우 그 종류, 가치, 그리고 양까지 입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은 모두 원자료 상태(raw data)로 저장 관리되어, 이를 중앙경찰기관 격인 FBI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ICPSR, 2007).

NIBRS는 한 범죄사건에 포함된 모든 입력단위(범죄, 피해자, 가해자, 피체포자, 재물)에 대한 각각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어 입력단위 별로 통계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즉, 범죄통계의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를 범죄, 피해자, 가해자, 피체포자, 재물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로는 피해자, 가해자, 범죄의 세 가지 분석단위가 주로 쓰인다. 이러한 상세하고 복잡한 통계정보의 구성은 분석은 물론 입력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FBI에서는 각 개념의 정의, 입력방법, 프로그래밍 기법

4) 미국 경찰도 공식범죄율에 의해 평가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NIBRS가 도입되면 마치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것이다. 사실 이것이 NIBRS가 미국에서 빨리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Mosher et al., 2002: 72)

등 자세한 내용을 매뉴얼로 만들어 각 경찰관서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분석의 편의를 위해 정보공개 전문기관에게 통계관리를 위임하여 연구목적에 맞게 통계정보를 쉽게 추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범죄통계의 주관부서인 FBI는 지금도 매년 미국 내 범죄현상에 대한 요약정보를 인터넷과 소책자 등을 통해 발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NIBRS에서 수집한 개별사건의 정보까지 공개하고 있다. 현재 범죄사건의 데이터는 미시간 대학내 설치된 정치와 사회연구를 위한 대학 컨소시엄(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or ICPSR) 산하 국립형사사법 자료저장소(The National Archive of Criminal Justice or NACJD)를 통해 공개되어 일반인도 ASCII 데이터 파일형태의 NIBRS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다. 더욱이, 자료가 방대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원상태로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자료사용법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쌍방향 파일구성기(Interactive Code Builder)를 만들어, 사용자가 원하는 분석단위에 맞게 상용 통계패키지인 SPSS와 SAS 파일형태의 자료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FBI, 2008).

미국에서는 자료를 공개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자료의 활발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교수 및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료의 내용과 사용법을 교육시키는 한편, NIBRS자료를 이용한 연구용역을 주는 노력까지 하고 있다.

4. 미국 범죄통계 품질관리

미국 연방수사국에서는 UCR에서 관리되는 범죄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제공 및 감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FBI, 2008). 먼저, 연방수사국은 CJIS 과내에 감사팀을 운영하여, 각 주의 UCR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연방수사국의 지침을 준수하고 있

는지를 감사하고 이를 통해 범죄통계의 정확성 및 타당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품질보증 리뷰(Quality Assurance Review or QAR)라고 불리는 감사에서는 특히 범죄분류 및 범죄계산, 검거율, 피해품 가치, 체포 계산, 이전 지적사항의 교정여부를 점검한다. 품질보증리뷰는 주정부의 UCR통계담당부서, 지역 경찰관서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와 이를 통한 보고서작성 및 권고안 제출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감사 뒤에는 주의 UCR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보고서를 제공하고, 주 경찰국은 이에 따라 범죄통계 보고관행을 조정해야 한다. 감사팀은 마지막으로 CJIS의 UCR소위원회에 감사를 통해 밝혀낸 문제점의 교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연방수사국은 또한 범죄통계 관행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각급 경찰관서를 현장 방문하여 훈련할 수 있는 훈련관을 양성하고 있다. 이들은 UCR은 물론 NIBRS 등에 대한 자료의 수집절차 및 지침에 대해 초급, 기본, 고급코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각급 경찰관서에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문의사항이 있으면 응답을 해 주고 있다. 특히 최근 도입되고 있는 NIBRS체제에 대한 인증(certification)을 받고 싶어 하는 관서에 도움을 제공하는 특별 조정관도 보유하고 있다.

5. 미국사례 소결론

미국은 범죄통계의 중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여 효율적인 통계관리에 힘을 써왔다. 광활한 영토와 지방분권화로 인한 표준화된 범죄통계관리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범죄통계 담당부서인 연방수사국(FBI)에서는 1930년부터 표준화된 범죄정의, 통계수집 방법 등을 전국 경찰관서에 전파하여 통계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여 왔다.

무엇보다 한국의 경찰과 검찰이 배워야 할 점으로는 범죄통계의 품질관리와 통계소비자를 우선하는 태도를 들 수 있다. 미국 경찰은 정확한 범죄통계

가 치안정책 수립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품질관리에 힘써 왔다. 현재 미국연방정부의 행정관리 및 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에서는 연방수사국에 범죄통계 관리를 위해 2008년 기준 약 850만 불, 한화 약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OMB, 2008), 이를 바탕으로 연방수사국은 전국의 각급 경찰관서에 직접 나아가 교육훈련은 물론 감사를 실시하여 범죄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사기관의 범죄통계 관리에 대한 과감한 예산과 인원의 지원을 통한 품질관리 방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미국경찰은 자신들이 수집한 범죄통계가 내부목적으로만 쓰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학계와 민간기업 등도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장려하고 있다. 범죄통계를 공포할 때에는 통계의 수집 방법, 용어해설, 통계의 의의 등 자세한 해설을 포함하여 일반인이라도 현재 범죄의 실태와 향후 전망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특히 NIBRS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범죄통계의 내용을 충실히 보완하는 한편, 수집한 통계의 내용을 학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일구성기(code builder)를 개발하여 누구나 온라인상에서 통계프로그램용 파일형태로 원자료를 내려 받게 하는 점 등은 인상적이었다. 한국 경찰과 검찰도 애써 수집한 범죄통계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미국경찰은 범죄통계의 소비자들이 원하는 통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효율성을 제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모든 범죄의 통계를 수집하는 것은 경찰 내부목적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일반인이나 학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이므로, 이들에게 밀접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범죄만을 대상으로 범죄통계를 관리해온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가지고 관리대상 범죄통계에 대한 충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형법범과 특별법범에 대해 같은 수준의 통계를 수집·관리하는 한국 수사기관들이 참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제 2 절 일본⁵⁾

1. 경찰통계

가. 경찰통계의 작성과정

(1) 범죄의 인지 및 검거의 의미

경찰통계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범죄의 인지건수와 검거건수이다. 먼저 인지건수는 치안의 척도로 사용되는 것이다. 즉 인지건수가 증가했는지 혹은 감소했는지가 치안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표2>에서 범죄의 인지 및 인지건수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살펴 볼 것은 범죄의 인지(건수)란 범죄발생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건수(발생건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경찰통계에서는 1965년까지 “발생건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1966년에 명칭이 “인지건수”로 변경되었다. 본래 사회현상의 발생을 모두 관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생건수”라는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렇듯 일본의 경찰통계에서는 범죄발생건수가 아닌 범죄인지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 <표 2> 범죄의 인지에 관한 정의

용어	정의
형법범 인지표	형법범에 관한 피의사건에서 인지 한 때 작성하는 것(범죄통계세칙 제4조)
인지	범죄에 대해서 피해의 신고 또는 고소·고발을 수리 하거나, 범죄수사규범(1957년, 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2호) 제69조 제1항 또는 제78조 제1항에 의한 사건의 이송을 받거나 또는 기타의 단서에 의해 그 발생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통계세칙 제2조(4))
인지건수	경찰에서 발생을 인지한 사건의 수를 말한다(「평성○년의 범죄」 범례)

5) 일본에 대한 내용은 浜井浩一(2006)과 일본 경찰청, 법무성, 최고재판소 홈페이지를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범죄의 검거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범죄의 검거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검거율’이다. 범죄의 검거는 피해자·피해관계자 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안정감과 경찰활동에 대한 평가와도 관계가 있다. 그 때문에 검거율이라는 수치가 주목을 받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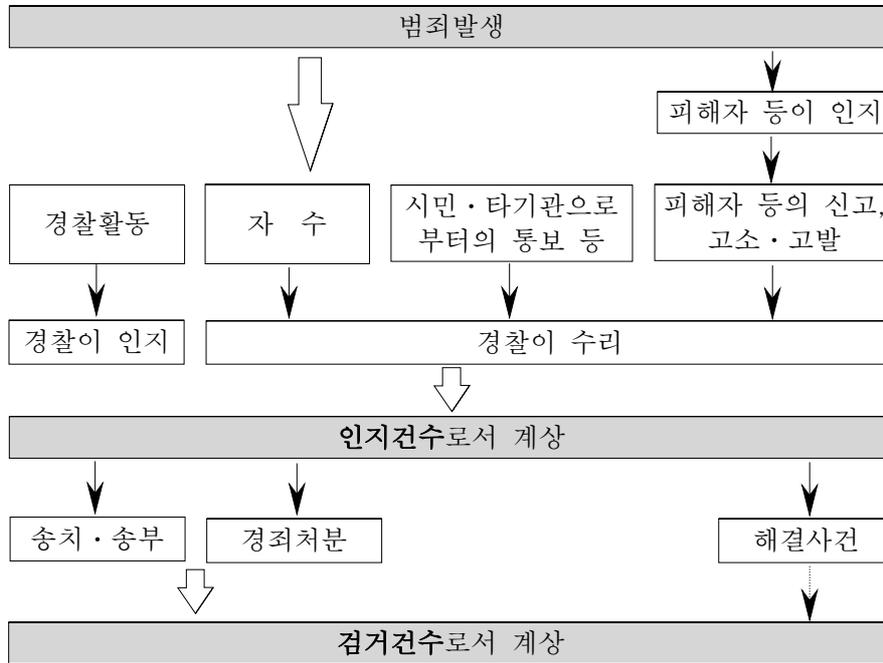
범죄의 검거는 일반적으로 인지된 사건의 피의자가 판명되어 검찰청으로 송치한 것을 지칭하지만, 통계상으로는 “해결사건”도 포함된다. 특히 검찰청에 송치하지 않는 여죄도 형법범검거표가 작성되어 통계상으로는 검거에 포함되고 있다.

(라) <표 3> 범죄의 검거에 관한 정의

용어	정의
형법범 검거표	형법범에 관한 피의사건에서 검거 나 해결 또는 피해품을 회복 한 때 작성하는 것
특별법범 검거표	특별법범에 관한 피의사건에서 검거한 때 또는 경찰행정상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를 종료한 때 작성하는 것(이상, 범죄통계세칙 제4조)
검거	범죄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송치·송부 또는 경죄처분에 필요한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해결	인지한 사건에서 해당 인지와 관련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소송조건을 결한 것(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벌조건을 결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 것을 말한다.
피해품회복	자동차절도, 오토바이절도 또는 자전거절도와 관련된 사건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환부 또는 가환부하거나 또는 소유자의 의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이상, 범죄통계세칙 제2조).
검거건수	형법범에 대하여 경찰에 사건을 송치·송부 또는 경죄처분을 한 건수를 말하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해결사건 건수를 포함한다.
검거인원	경찰에서 검거한 사건의 피의자 수를 말하며, 해결사건과 관련된 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해결사건(건수)	형법범으로서 인지되어 이미 통계에 계상되어 있는 사건으로서, 이것을 수사한 결과 형사책임무능력자의 행위라는 것, 기본사실이 없다는 것, 기타 이유에 의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소송조건·처벌조건을 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사건(건수)을 말한다.
송치건수·송치인원	특별법범에 대하여 경찰에 사건을 송치·송부한 건수·피의자 수를 말한다.
검거율	인지건수에 대한 검거건수의 비율을 배분율로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 산식은 다음과 같다. $\frac{\text{검거건수(해결건수 포함)}}{\text{인지건수}} \times 100$ (이상 「평성○년의 범죄」 범례)

(2) 경찰통계 작성과정

(마) <그림 2> 일본 경찰통계 작성과정



실제 발생한 범죄는 다음 <그림 2>와 같은 과정을 거쳐 “통계상의 범죄”로서 가공되는 것이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림에 보여진 조건들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상의 범죄로 나타나지 않는 암수범죄가 된다.

나. 경찰통계 작성관련 규칙 및 범죄통계원표내용

(1) 경찰통계 작성관련 규칙

일본에서는 범죄통계규칙(1965. 9. 16. 일본국가공안위원회규칙 제4호) 및 범죄통계세칙(1971. 경찰청훈령 제16호)에서 범죄통계의 작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범죄통계는 경찰청장관이 정하는 범죄통계원표 또는 범죄통계조사표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범죄통계규칙 제2조). 이 규정을 엄밀하게 파악한다면 ‘범죄통계’란 경찰에서 작성한 것만을

말하는 것으로 ‘범죄통계’가 바로 ‘경찰통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나 사법실무에서도 범죄통계라고 할 때 경찰의 통계만이 아니라 검찰, 법원 등의 통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범죄통계는 가장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통계는 원표를 통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도도부현 경찰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로 사료되는 사건을 인지하거나 또는 검거한 때에는 신속히 원표를 작성하여 …”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원표를 통한 통계작성 이외에 범죄통계조사표를 통하여서도 범죄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도부현 경찰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원표 이외에 장관이 임시로 특별한 조사사항에 관한 범죄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신속히 그 지시와 관련된 조사표를 작성하여 …”라고 규정하고 있다(범죄통계규칙 제3조). 즉, 범죄통계원표는 사건을 인지 및 검거한 때에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며, 범죄통계조사표는 특별조사를 통해 작성되는 것이다.

(2) 범죄통계원표의 내용

일본 범죄통계원표의 종류를 보면 <표4>와 같이 사건표 7종과 피의자표 3종으로 되어 있다.

(바) <표 4> 일본 범죄통계원표 종류

	① 범죄통계원표의 종류	② 작성내용
③ 사건표	④ 형법범인지표	⑤ 형법범에 관한 피의사건에서 인지한 것
	⑥ 형법범검거표	⑦ 형법범에 관한 피의사건에서 검거나 해결 또는 피해품을 회복한 것
	⑧ 특별법범검거표	⑨ 특별법범에 관한 피의사건에서 검거한 때 또는 경찰행정상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한 조사를 종료한 것
	⑩ 교통사고사건 ⑪ 인·검거표	⑫ 도로상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에 관한 피의사건에서 인지한 것 및 검거나 해결한 것
	⑬ 뺑소니인지·검거표	⑭ 도로교통법에 규정하고 있는 죄에 관한 피의사건에서 검거한 것
	⑮ 교통법령위반사건 ⑯ 검거표	⑰ 교통법령 위반에 관한 피의사건에서 검거한 것 또는 범칙사건에 대해 통고에 필요한 절차를 종료한 것
	⑱ 압수물건표	⑲ 범죄의 수사와 관련하여 물건을 압수한 것
⑳ 피의	① 형법범	② 형법범을 범한 성인 피의자의 피의사건에서 검거한 것

자 표	성인 표	
	③ 형 법범 소년 표	④ 형법범을 범한 소년(촉법소년의 보도를 포함) 피의자의 피의사건에서 검거한 것
	⑤ 특 별법 범피 의자 표	⑥ 특별법범을 범한 성인 또는 소년(촉법소년의 보도를 포함) 피의자의 피의사건에서 검거한 것

일본 범죄통계원표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는 원표양식을 구할 수 있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원표의 종류 중 형법범인지정보표 2개(차량절도등 제외/차량등 절도), 형법범검거정보표 2개(차량절도 이외/차량절도), 형법범피의자정보표 2개(성인/소년)에 대해 원표를 소개하였다 (부록1 참조).

먼저 형법범인지정보표를 보면, 차량절도 등을 제외한 표에는 범죄관련 사항, 피해자관련 사항, 인지일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수법에 관한 사항을 보면, 강도, 절도, 사기, 성범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차량 등 절도에 대한 형법범인지정보표는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차량절도 등을 제외한 표와 같다. 그러나 차량등 절도와 관련된 수법을 조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도난방지장치 유무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다.

다음으로 형법범검거정보표를 보면, 차량절도 이외의 표에는 검거관련 사항, 피의자관련 사항, 피해관련 사항, 검거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차량절도에 관한 형법범검거정보표는 기본적인 내용에서 차량절도 이외의 표와 동일하다. 그러나 도난차량과 관련해서 도난차량의 처분, 도난차량발견의 단서, 도난차량으로 인정된 근거 등을 파악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형법범피의자정보표를 성인과 소년으로 구분해서 보면, 기본적

인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에서는 거의 동일하다. 성인의 경우에는 소년에게 없는 범죄수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수법코드에는 살인, 강도, 절도, 사기, 성범죄의 수법을 파악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소년의 경우를 보면, 기본적인 인적사항 외에 부모관련 사항 등 가족사항이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이하다. 소년의 경우에는 부모 각각의 태도, 가출관계, 생활형태(가족과의 동거여부 및 생활하는 곳), 모의 부재상황(어머니가 소년과 함께 보내는 시간), 가족관계(주요 가족의 이름 및 가족들의 기본사항), 비행집단 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소년의 비행과 관련되는 내용들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소년의 경우 보호를 요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일본의 범죄통계원표를 보면, 형법범인지정보표와 형법범검거정보표는 차량절도를 제외한 것과 차량절도에 대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법범피의자정보표도 소년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소년에 대해서는 부모의 태도 등을 포함한 가족관계 사항이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통일된 원표양식보다 범죄유형이나 범죄자 특성에 따라서 구별된 원표양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원표의 자세한 내용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다. 범죄통계의 공표

(1) 「平成○년의 범죄」 발간

경찰통계는 기본적으로 「平成○년의 범죄」를 통하여 공표되고 있다. 경찰은 경찰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한다. 예를 들어 범죄를 인지 또는 검거하고 범죄수사에서 물건을 압수하는 등의 활동을 할 경우 기록(통계)으로 만들게 된다. 또한 이러한 통계는 원표나 조사표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즉, “범죄통계는 경찰청장관이 정하는 범죄통계원표 또는 범죄통계조사표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범죄통계규칙 제2조). 각 도도부현 경찰에서 작성된 범죄통계원표 및 범죄통계조사표는 경찰청에 보고되어 모든 경찰청 형사국에서 정리하여 매년 책자로 나오게 된다. 이 자료는 1963년에는 「犯罪統計書」라고 명칭되었지만 1964년 이후에는 「昭和(平成)○년의 범죄」로 개칭되었다. 한편 「犯罪白書」에서는 이것들을 일괄하여 「경찰청통계」라고 한다.

「平成○년의 범죄」에는 「犯罪白書」등에서 볼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초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약 140여개의 표와 520페이지에 달하며 일본의 범죄·비행현상에 대한 대부분의 데이터를 망라하고 있다.

다음 <표 5>는 「平成19년(2007년)의 범죄」의 항목 및 주요 통계표 일람이다.

(사) <표 5> 「平成19년(2007년)의 범죄」 주요 통계표 일람

항 목	주요통계표
범죄의 개황	
제1 형법범	
1. 총괄	
2. 인지상황	인지의 단서, 발생시간대, 발생요일, 발생장소 등
3. 검거상황	검거활동(공범형태, 피의자 특정의 단서, 신병조치), 범죄의 광역성 등(도주시 교통수단, 범행 부현수), 범행공용물, 동기·원인 등(직접 동기·원인, 정신장애 등의 유무), 피의자의 신상(직업, 연령, 성별), 전과 등(처분력의 유무, 전과 수)
4. 범죄피해상황	피해재물(피해품, 피해액·피해회복액) 피해자(사상, 연령·성별,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제2 특별법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총괄 2. 선거위반 3. 경범죄·경미한 폭력 4. 풍속관계사범 5. 매춘사범 6. 총포도검류소지등단속법 7. 화약류단속법 8. 환경관계사범 9. 출자의 수납, 예금 및 금리 등의 단속에 관한 법률 (출자법) 10. 전당포·고물영업법 11. 관세법·외국환 및 대외무역관리법 12. 약물사범 13. 외국인등록법 14.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15. 주택건물거래업법
제3 교통범죄	죄의 종류·위반 태양, 차종, 뺑소니사건의 도주 동기
제4 소년범죄	
1. 범죄소년	연령·학력, 처분경력의 유무, 비행장소, 동기·원인, 보호자의 상태·태도
2. 촉법소년	연령·학력, 비행장소, 동기·원인, 보호자의 태도
3. 복지범죄 등	소년의 복지를 침해하는 범죄, 조례위반
제5 폭력단범죄	지위, 계열, 연령, 전과수
제6 공무원범죄	소속
제7 외국인범죄	국적, 일본방문외국인
제8 기 타	자동차등 절도 피해회복 건수·회복율, 보호취급상황, 가출, 자살자수

(2) 「경찰백서」 발간

① 경찰백서와 범죄백서의 차이

범죄백서(경찰통계연보와 사법통계연보를 참조해서 작성하고 있음)는 인지 및 검거와 관련된 통계자료는 원자료와 동일하지만, 경찰백서와 범죄백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찰백서는 사진이 특징적이다. 또한 경찰행정의 소개와 사례에 관한 기술이 많고, 그림은 기초적인 데이터를 집계한 것이 많으며 그에 대한 설명은 많지 않다. 반면 범죄백서는 사진은 없으며 가공한 데이터와 그에 대한 해설이 상당 부분을 점하고 있다.

(아) <표 6> 경찰백서와 범죄백서의 비교표

①	② 경찰백서	③ 범죄백서
④ 편집원	⑤ 경찰청 ⑥ (각 국에서 작성한 것을 장관관방에서 집계하고 있다)	⑦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⑧ (법무총합연구소 연구부는 법무성 타 국 및 타 성청으로부터 자료제공을 받아 의견을 청취한 이후 편집하고 있다)
⑨ 인쇄원	⑩ (주)ぎょうせい	⑪ 독립행정법인 국립인쇄국 ⑫ (구 법무성 인쇄국)
⑬ 특집편집	⑭ 앞부분(제1장 앞)	⑮ 최종편
⑯ 사	⑰ 다수	⑱ 없음

진 개 재		
-------------	--	--

② 경찰백서의 내용

경찰백서는 범죄통계서라고 말하기 보다는 경찰활동의 팜플렛적 성격이 강하다. 2007년판 경찰백서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에서 제시된 것 이외에 경찰백서의 제일 앞 부분에는 이 책자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소개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즉 형법범과 특별법, 비행소년의 의미, 교통사고관련 내용, 인지 및 검거건수, 검거율의 의미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소개내용을 통해 경찰백서에서 제시된 자료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 <표 7> 2007년판 「경찰백서」의 구성

장	제목	주요 관련국
특집	조직범죄를 허락하지 않는 사회를 목표로 하여 - 자금 획득활동과의 대결 - 제1절 불투명화하는 자금 획득활동의 위험 제2절 폭력단의 자금 획득활동의 변천 제3절 폭력단의 자금 획득활동과의 대결	전체
토픽	I. 아이를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대응 II. 음주운전 근절을 향한 경찰의 대응 III. 훗카이드 토우야호 서미트의 성공을 향하여 IV. 미결구금제도의 개혁: 형사수용시설 및 피수용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시행 V. 형법범 인지건수의 증감에 대하여	전체
제1장	생활안전의 확보와 범죄수사활동 제1절 최근의 범죄정세와 그 대책 제2절 범죄의 검거와 억제를 위한 기반정비 제3절 안전하고 안심한 생활을 지키는 시책 제4절 소년의 비행방지와 건전육성	생활안전국
제2장	조직범죄대책의 추이 제1절 폭력단 대책 제2절 약물총기대책 제3절 방문외국인범죄 대책	형사국 (조직범죄 대책부)

제3장	<p>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의 확보</p> <p>1. 2006년의 교통정세 2. 자전거의 안전이용의 촉진</p> <p>3. 교통안전교육과 안전활동 4. 운전자 교육</p> <p>5. 운전자 시책 6. 도로교통의 IT화</p> <p>7. 안전·안심한 교통환경 정비 8. 도로교통환경의 정비</p> <p>9. 교통지도단속 10. 종합적인 폭주족 대책</p> <p>11. 교통사고 사건수사 12. 종합적인 주차대책</p> <p>13. 고속도로상 교통경찰활동 14. 자동차 운전 대행업</p>	교통국
제4장	<p>공안의 유지와 재해대책</p> <p>1. 국제테러 정세 2. 국제테러 대책</p> <p>3. 무력공격사태 등 대처 4. 대일 유해활동의 동향·대책</p> <p>5. 일본공산당 등의 동향 6. 대중운동의 동향</p> <p>7. 움진리교의 동향·대책 8. 우익의 동향과 대책</p> <p>9. 극좌폭력집단 동향·대책 10. 경비실시</p> <p>11. 재해대책 12. 사이버테러 대책</p>	경비국
제5장	공안위원회제도와 경찰활동의 버팀목	전체
자료편		전체

(3) 기타 경찰통계의 공표

「평성○년의 범죄」 및 「경찰백서」에서의 범죄통계 이외에도 경찰업무에 대한 여러 통계도 산출되고 있다. 경찰에서는 매년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통계들을 발표하고 있다.

① 연간통계

이것은 매년 집계되고 있는 통계이며, 예를 들어 <표 8>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제시된 것 중 하나인 평성○년의 범죄정세를 보면, 이는 매년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평성 19년(2007년)의 범죄정세를 보면, 경찰백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자료에서 제시된 용어들의 의미에 대해 소개하고 있으며, 형법범 전체의 추이 및 주요 범죄의 특징적 사항, 기타 자료 등에 대해 16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 통계자료에는 해당항목별로 주로 최근 10년간의 통계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최근의 범죄통계관련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차) <표 8> 연간통계(예시)

① 통계명	② 내용
③ 생활안전의 확보에 관한 통계 등	④ ▶ 평성○년 중의 약물·총기정제 ⑤ ▶ 소년비행 등의 개요 ⑥ ▶ 평성○년 중의 소년의 보도 및 비행의 개황 ⑦ ▶ 평성○년 중의 생활경제사범의 검거상황에 대하여 ⑧ ▶ 평성○년 중의 수난·산악조난 상황 ⑨ ▶ 평성○년 중의 자살의 개요자료 ⑩ ▶ 평성○년 중의 가출의 개요자료
⑪ 수사활동에 관한 통계 등	⑫ ▶ 평성○년의 범죄정세 ⑬ ▶ 범죄통계자료(평성○년)
⑭ 폭력단 대책에 관한 통계 등	⑮ ▶ 폭력단의 구성원수 등
⑯ 국제범죄 대책에 관한 통계 등	⑰ ▶ 국제조직범죄대책 등
⑱ 안전·쾌적한 교통의 확보에 관한 통계 등	⑲ ▶ 교통관련 통계
⑳ 사이버범죄에 관한 통계	㉑ ▶ 평성○년 중의 사이버범죄 검거상황 등에 대하여

② 특별조사

이것은 사회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범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범죄, 정부 및 경찰청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범죄 등에 관하여 특별히 통계를 취합한 것이다. <표 9>와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다.

(카) <표 9> 특별조사통계(예시)

① 통계명	② 내용
③ 생활안전의 확보에 관	④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리포움 관련 사범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하여(2005. 7 월)

한 통계 등	⑤ ▶ 인신매매사범에 대하여(2005. 7월) ⑥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사안의 대응상황(2005. 3월) ⑦ ▶ 스토키 사안의 대응상황(2005. 3월) ⑧ ▶ 농작물등의 절도현상 등에 대하여(2004. 2월) ⑨ ▶ 아동학대사건의 검거상황(2002. 2월)
⑩ 수사 활동에 관한 통계 등	⑪ ▶ 위조통화의 발견매수(2005. 7월) ⑫ ▶ ‘불입사기(공갈)’의 인지·검거상황에 대하여(2005. 6월)

2. 검찰통계(형사통계)

검찰관련 데이터는 각 검찰청에서 조사·수집된다. 검찰통계의 집계방법, 조사사항, 공표방법 등을 정리하면 다음 <표 10>과 같다.

(타) <표 10> 검찰통계의 기본적 내용

① 항목	② 내용	
③ 근거 규정	④ ▶ 형사통계조사규정(장관훈령) ⑤ ▶ 형사통계조사요령(사법법제부장의명통달)	
⑥ 주요 조사 매체 ⑦ 작성 시기 등	⑧ 통계보고표	⑨ ▶ 사건의 수리·처리 등의 상황에 대하여 죄명과 처리구분별로 집계하는 것. ⑩ ▶ 월 또는 년 단위로 청별로 작성.
	⑪ 피의자조사표	⑫ 사건의 처리가 기제로 된 경우 각 사건마다 작성 ⑬ (다만,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자동차등에 의한 업무상(중)과실치사상의 자에 대하여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⑭ 주요 조사 항목	⑮ ① 처리관계(성별, 국적, 수리죄명, 수리사유, 수사의 단서 등) ⑮ ② 처리관계(기제죄명, 기제사유(기소·불기소 등), 처리시 연령 등) ⑮ ③ 신병관계(체포나 구류 상황) ⑮ ④ 기타(범죄시 연령, 전과, 가석방·가출옥·집행유예 중인가의 여부)	
⑰ 데이터의 집계	⑳ 법무성장관관방사법법제부에 제출하여 여기에서 집계	
① 간행물	② 검찰통계연보(매년 6월무렵 발간)	
③ 인터넷	④ 일부를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공개 ⑤ (http://www.moj.go.jp)	

3. 사법통계

사법관련 통계는 크게 형사사건에 관한 것과 소년사건(소년의 복지를 침해하는 성인의 형사사건 포함)에 관한 것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 11> 및 <표 12>와 같다.

(파) <표 11> 형사사건 관계 사법통계의 기본적 내용

항목	내용	
근거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판통계보고에 대하여(최고재판소사무총장통달) ▶ 재판통계보고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최고재판소총무국장의명통달) 	
주요 조사매체 · 작성시기 등	통계월보 통계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의 수리 · 처리 등의 상황에 대하여 죄명과 처리구분별로 집계하는 것. ▶ 월 또는 년 단위로 소별로 작성.
	형사보통제1심사 건표*	간이재판소 및 지방재판소에서 사건이 기제로 된 경우 개별적으로 작성
	형사항소사건표	고등재판소에서 사건이 기제로 된 경우 개별적으로 작성
주요 조사항목	<p>[보통제1심사건관계] 죄명, 연령, 국적, 심리기간, 합의 · 단독별, 변호관계(변호인의 유무 등, 자백의 정도, 증거방법(증인의 수, 감정 · 통역번역인의 유무 등), 구류 · 보석 관계, 종국구분, 형 · 처분의 내용(형기, 벌금액 등), 집행유예의 유무 등</p> <p>[상소사건관계] 죄명, 연령, 수리구분, 심리기간, 구류 · 보석 관계, 증거방법, 상소이유, 제1심의 내용, 파기자판의 내용 등</p>	
데이터의 집계	최고재판소사무총국에 제출하여 집계	
간행물	사법통계연보(형사사건편) (매년 7월무렵 발간)	
인터넷	전부를 최고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공개 (http://www.courts.go.jp)	

* ‘보통제1심’이란 보통의 공판절차에 의한 사건만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단순히 ‘제1심’이라는 경우와는 다르며, 약식절차 및 교통사건 즉결재판절차를 포함하지 않는다.

(하) <표 12> 소년사건 관계 사법통계의 기본적 내용

항목	내용	
근거규정	형사사건과 동일	
주요 조사매체·작성시기 등	통계월보 통계연보	▶ 사건의 수리·처리 등의 상황에 대하여 죄명과 처리구분별로 집계하는 것. ▶ 월 또는 년 단위로 소별로 작성.
	소년일반보호사건표*	가정재판소에서 사건이 기제로 된 경우 개별적으로 작성
	성인형사사건표	상동
주요 조사항목	[소년일반보호사건관계] 연령, 국적, 심리기간, 보호조치 상황, 시험관찰 상황, 부침인·통역번역인의 유무 등, 증인·검찰관 관여·피해자 등 의견청취 등의 상황, 본건 비행내용, 종국구분, 처우권고 상황, 항고의 유무, 전처분의 유무·내용, 교육정도, 공범자의 유무 등,	
	[성인형사사건관계] 죄명, 국적, 심리기간, 변호관계, 증거방법, 종국구분, 형·처분의 내용, 집행유예의 유무, 피해자관계(성별, 인수) 등	
데이터의 집계	최고재판소사무총국에 제출하여 집계	
간행물	사법통계연보(소년사건편) (매년 7월무렵 발간)	
인터넷	전부를 최고재판소 홈페이지에서 공개 (http://www.courts.go.jp)	

* 통상 일반보호사건이란 소년보호사건 가운데 도로교통보호사건(도로교통법위반 보호사건 및 자동차의보관장소의 확보에 관한 법률위반 보호사건)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다만, 소년 일반보호사건표의 작성 대상은 일반보호사건에서 다시 이하의 사건을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司法統計年報의 개요(범례) 참조)

- ① 간이송치사건
- ② 차량운전에 관한 업무상(중)과실치사상사건·위험운전치사상사건
- ③ 이송·회부로 종결한 사건
- ④ 병합심리되어 기제사건으로 종결되지 않은 것

4. 일본사례 소결론

일본의 범죄통계는 경찰, 검찰, 사법통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경찰통계에서 범죄통계원표는 크게 사건표와 피의자표로 구분되며, 사건표에는 7

종류, 피의자표에는 3종류의 원표가 있다. 이렇듯 다양한 원표의 종류를 통해 범죄나 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내용들이 보다 잘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경찰통계원표의 내용들을 보면, 범죄내용이나 범죄자연령에 따라 구분해서 주요 범죄의 수범이나 소년범의 특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본의 경찰통계는 기본적으로 「平成〇년의 범죄」를 통하여 공표되며, 전체적으로 140여개의 표와 520페이지의 분량으로 되어 있다. 경찰통계는 이외에도 「경찰백서」에서도 제시되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양한 범죄통계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의 한 예로 평성〇년의 범죄정세를 보면, 형법범 전체의 추이 및 주요 범죄의 특징적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렇듯 일본 경찰의 범죄통계는 수집과정에서부터 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찰통계 자료의 활용면에서도 책자발간 및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범죄통계 자료의 제시로 범죄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경우도 범죄 및 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원표양식의 개발 및 범죄통계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검찰통계는 통계보고표와 피의자조사표로 조사되며,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처리관계, 신병관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검찰통계는 검찰통계연보를 통하여 발간되며, 일부를 법무성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검찰통계에서 특이한 점은 도로교통법위반 또는 자동차 등에 의한 업무상(중)과실치사상의 자에 대해서는 피의자조사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원표에 간단한 내용만 파악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경찰과 검찰의 통계작성 및 처리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범죄사건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경찰통계이며, 피의자 처리 및 신병 등 피의자 관련 사항을 다루는 것은 검찰통계이다. 이렇

듯 구분된 통계로 인해 경찰과 검찰통계가 각기 필요에 따라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경찰과 검찰통계의 불일치 등이 문제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제 5 장 한국의 공식범죄통계

제 1 절 우리나라 범죄통계의 연혁

우리나라 범죄통계의 기원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근대적 의미의 범죄통계는 일제시대에 발표한 조선총독부시정연보(朝鮮總督府施政年報, 1912-1942)가 최초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총독부시정연보에서는 범죄사건을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구분해서 범죄건수급검거수인원, 범죄즉결사건건수를 집계했다. 정부수립 이후의 범죄통계는 내무부 치안국에서 집계하고, 조선은행조사부에서 조선경제연보(朝鮮經濟年報, 1948-49)⁶⁾를 발간한 것이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거) <표 13> 한국 범죄통계 관련 연혁

6) 조선경제연보는 조선은행조사부(1948~49)에서 발간하던 것을 이후 한국은행(1953~1961)에서 경제연감이란 제호로 발간한 바 있으며, 현재 전국경제인연합회(1966~)가 기획, 제작, 배포하고 있다. 한 해 동안의 우리나라 경제, 산업 동향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제, 산업 총서지만, 조선경제연보의 경우 당시 국가의 통계업무를 조선은행조사부에서 시행하고 있었기에 현재의 한국통계연감으로 사료된다.

① 연 도	② 내 용
③ 해 방 이 전	④ 조선총독부시정연보(朝鮮總督府, 1912~1942)
⑤ 해 방 후	⑥ 조선경제연보(朝鮮銀行調查部, 1948~1949)
⑦ 1 96 3 년 3 월	⑧ 월간 범죄분석 발간(중앙정보부)
⑨ 1 96 3 년 12 월	⑩ 업무이관(중앙정보부->대검찰청)
⑪ 1 96 4 년	⑫ 대검찰청 분기별 범죄분석(1964~1992)
⑬ 1 96 7 년	⑭ 경찰범죄통계규칙 제정(내무부 훈령 202호)
⑮ 1 98 3 년	⑯ 경찰청 범죄분석 발간
⑰ 1 99 3 년	⑰ 대검찰청 연간 범죄분석 발간
⑱ 1 99 9 년	⑱ Compstat모델로 범죄분석활용(노량진 경찰서)
① 2 00 0 년 2 월	② 서울청 단위의 컴스탯 개발

한국의 범죄통계관리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1963년 중앙정보부에서 국내 범죄추세를 분석하고 발표하기 위하여 각 수사기관의 범죄통계를 수집하여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해 12월 통계업무가 대검찰청으로 이관되면서 검찰은 지금까지 검찰 및 사법경찰기관의 범죄통계를 종합하여 「범죄분석」 등 책자를 통해 한국의 범죄현상에 대한 요약정보를 생산 및 배포하고 있다.⁷⁾ 대검찰청 「범죄분석」은 1964년 발간한 이후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발간하던 것을 1993년부터는 연간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1998년(통권 제131호)부터 프랑스 유니온 카탈로그사의 ISSN(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1226-7716)을 부여 받았다.

아울러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서 전산 입력한 형사사건의 범죄통계원표(발생·검거·피의자통계원표)를 경찰청 수사국에서 분석한 경찰청 범죄통계가 있다. 이 범죄통계는 1983년부터 「범죄분석」이란 명칭으로 발간하던 것을 2006년부터 「범죄통계」란 명칭으로 변경하여 발간하고 있다.

아래 <표 14>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범죄통계 간행물인 대검찰청의 「범죄분석」과 경찰청의 「범죄통계」를 비교·정리한 것이다.

7) 탁종연, “한국 범죄통계관리 분석과 발전방안:경찰범죄정보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17권 제3호(2007. 12), p. 177.

(너) <표 14> 우리나라 대표적인 범죄통계

구분	대검찰청 범죄분석	경찰청 범죄통계(구 범죄분석)
작성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 혁신기획과	경찰청 수사국
최초실시연도	1963.3(중앙정보부 월간범죄분석) 1964년 대검찰청 이관(분기별)	1983년
통계작성승인	1976년	1995년
조사목적	범죄의 현황과 범죄심리 및 그 양적·질적 변화를 조사 측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검거대책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 자료제공	범죄추세 파악 및 중요국책인 형사정책 및 사회 치안정책 수립
조사내용	발생통계원표: - 발생지 수사기관, 죄명, 장소, 수법 등 24개 항목 검거통계원표: - 검거 수사기관, 검거인원, 검거 단서 등 19개 항목 피의자통계원표: - 총 32개 항목, 경찰 31개 항목, 검찰 1항목	범죄통계원표(발생·검거·피의자통계원표)를 140개 유형별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
작성방법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의 통계원표 서식을 집계	전국 각급 경찰관서에서 취급한 사건 처리 결과에 따라 작성된 범죄통계원표 집계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의한 통계분석
작성기간	전년.1.1~12.31.	전년.1.1~12.31.

제 2 절 한국 공식범죄통계 개괄

1. 범죄통계 수집기관

현재 한국에서 범죄발생 현황과 수사 활동에 대한 공식범죄통계를 수집하는 기관은 경찰,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다. 이들 수사기관들은 자신들이 수사한 사건 중 내사 후 종결된 사건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수사하기로 결정한 사건, 즉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한 사건들에 대해 범죄통계를 수집하게 된다.

경찰은 일반 형법위반 범죄, 즉 형법범과 각종 특별법 위반 범죄, 즉 특별법범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통계를 수집한다. 이들 기관 중 가장 많은 범죄사건(전체 범죄사건의 약 91%)을 처리하는 곳이 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이 작성한 범죄통계가 가장 많다.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므로 이에 대한 통계를 주로 수집하게 된다. 해경이 처리하는 사건은 대부분 해양에서 발생한 일반 형법범 사건이지만, 일부 특별법 사건은 해경만이 처리하므로 이에 대한 통계도 해경만이 수집하게 된다. 특별사법경찰은 지방자치단체, 세관, 출입국사무소, 노동청, 철도청 등에서 해당기관이 관리하는 특별법 위반사건을 다루는 공무원 또는 그 소속기관을 일컫는데, 이들은 해당 특별법 위반사건에 대한 범죄통계를 관리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기소기관인 검찰이 모든 형법사건과 특별법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적으로는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⁸⁾(형사소송법 제195조 및 제196조), 검찰도 범죄통계의 주요한 작성주체가 된다.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는 경찰에 비해 현저히 적어 검찰이 작성한 범죄통계 자체는 큰 의미가 없지만, 검찰은 범죄통계에서 다

8) 한국 형사소송법에 제196조에 의하면, 경찰 등 사법경찰관리는 모두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는 기관이다.

른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모든 수사기관의 공식범죄통계를 다시 모아서 종합 정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검찰에서 한국의 모든 공식 범죄통계를 정리하여 「범죄분석」이라는 통계간행물의 형태로 보고하고 있다.

2. 범죄통계의 법률적 근거

한국 수사기관이 범죄통계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규정한 법률적 근거는 다소 모호하다. 법률로서 범죄통계의 수집을 규정한 것으로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3호(직무범위)에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한 것이 전부이다. 다만, 이 조항이 범죄통계를 가능케 하는 수권 조항인지 아니면 경찰관의 직무범위를 설명한 데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치안정보라는 개념이 확실히 범죄사건의 각종 통계 정보를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도 학계나 주관부서인 검찰⁹⁾의 확실한 답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법률에는 범죄통계의 작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하위법령인 법무부령에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법무부령 제629호) 제13조에서는 사법경찰관리는 “사건마다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대검찰청의 내부 규정인 대검예규 제215호인 범죄통계개선시행에서는 구체적으로 범죄통계원표를 어떤 기준과 내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검찰과 경찰에 적용하고 있다. 기타 관련 규정으로는 경찰청 경찰범죄통계규칙(경찰청훈령 제384호)이 있으나 이 또한 대검예규와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내부의 범죄통계 관리규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

9) 연구자가 범죄통계작성의 법률적 근거를 대검찰청에 문의해 본 결과, 확실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즉답을 하기는 어려우니 공문으로 그 근거규정을 질의하기를 원했다.

범죄통계에는 피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과, 사건의 세부사항 및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피해품 등 민감한 정보가 기록되므로 범죄통계의 작성근거와 관리에 대한 법률의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수집 대상범죄 및 현황

가. 수집 대상 범죄

한국에서는 형법상 처벌하는 모든 범죄사건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이는 불과 수십 건의 범죄, 특히 전통적 범죄에 대해서만 정보를 수집하는 미국 등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모든 범죄에 대해 같은 양의 통계치를 수집하고 있다. 이것은 대검의 예규에서 통계치를 수집하는 도구인 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의 내용을 범죄의 중요도나 특성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동일하게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세부정보를 수집하는 미국의 NIBRS나 죄종이나 피의자 별로 원표내용을 상이하게 구성하는 일본의 사례와 구별되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범죄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공식범죄통계 자료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을 필요로 하며, 반면 연구 자료로서 엄청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범죄통계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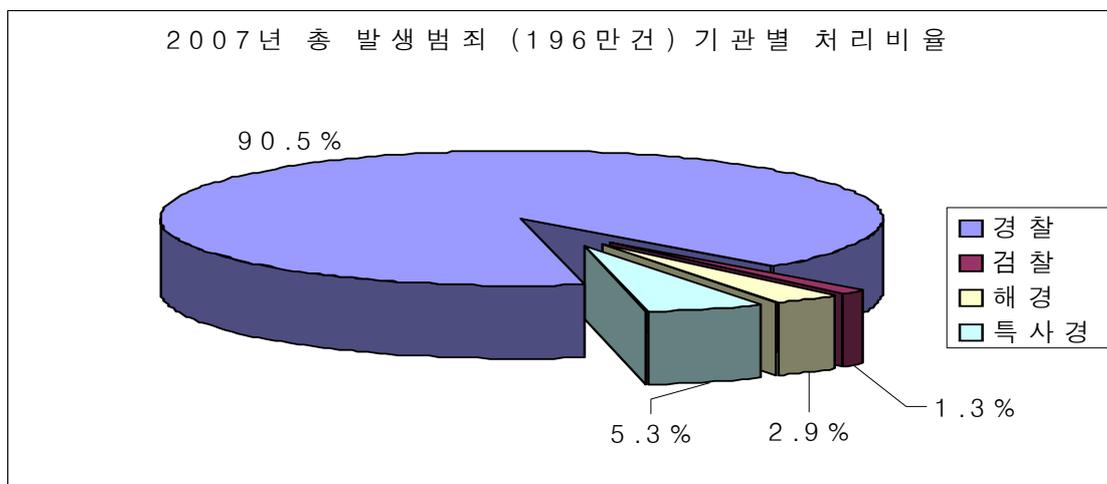
2008년 발간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7년 한해 한국 수사기관이 알게 된 사건, 소위 발생사건은 총 1,965,977건이었고, 검거된 사건은 1,720,000건으로서 약 87.5%의 검거율을 나타내고 있다. 총 발생사건 중 형법을 위반한 사건, 즉 형법범이 845,311건(43%)이었고, 각종 특별법을 위반한

사건 즉 특별법범이 1,120,666건(53%)으로 전체 범죄사건 중 특별법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범 발생사건을 죄명별로 나눠보면, 형법범 전체 84만여 건 중에서는 재산범죄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강력범죄(폭력 및 흉악)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별로 보면 (i) 절도(212,530건) 및 사기(186,115건) 등 재산범죄가 469,654건이었고, (ii) 폭행(97,598건), 상해(93,178건)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57,002건)등 강력범죄(폭력)가 255,459건, 다음으로 (iii) 강간(13,634건)이나 강도(4,470건)과 같은 강력범죄 (흉악)가 20,9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법범을 죄명별로 나눠보면, 전체 112만여 건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건(음주운전)이 351,4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이 192,493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89,920건, 기타 도로교통법위반 58,966건 등으로 차의 운전과 교통사고에 관련된 사건이 특별법 위반 사건의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외 자주 발생하는 특별법범에는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 36,810건, 저작권법위반 20,558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이 12,843건, 식품위생법위반이 10,841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이 10,837건, 병역법 위반사건이 10,563건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 <그림 3> 2007년 총 범죄발생 사건 중 각 기관별 처리비율



범죄사건을 처리기관별로 살펴보면, 경찰이 대부분의 범죄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경찰은 2007년 한해 전체 발생사건 1,965,977건의 90.8%에 해당하는 1,784,149건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형법범 발생사건 84만여 건의 96.2%에 달하는 813,539건을, 특별법범 112만여 건의 86.5%에 해당하는 970,610건을 처리하였다.

반면 검찰은 독점적인 수사권은 물론 많은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히 소수의 사건만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96만 건 중 검찰이 처리한 사건은 전체의 1.3%에 해당하는 25,475건에 불과하다. 이중 형법범이 13,749건으로 전체 형법범의 1.6%를 처리했고, 특별법범은 11,746건으로 전체 특별법범의 1.0%를 검찰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의 경우에는 경찰보다는 적지만 검찰보다는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96만 건 중 해경이 처리한 사건은 전체의 2.9%에 해당하는 52,076건에 불과하다. 이중 형법범이 16,518건으로 전체 형법범의 2.0%를 처리했고, 특별법범은 35,558건으로 전체 특별법범의 3.7%를 해경이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세관, 노동부 등 각종 특별사법경찰의 경우에는 기관의 성격상 주로 특별법위반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96만 건 중 특사경이 처리한 사건은 104,257건으로서 전체의 5.3%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형법범은 불과 975건으로 전체 형법범 중 0.1%만을 처리했으며, 특별법범은 103,282건으로 전체 특별법범의 9.2%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4. 수집통계의 내용과 그 비판

가. 수집하는 범죄통계의 내용

한국에서는 통계수집 주체나 대상범죄와 관계없이 대검찰청에서 요구하는

같은 내용의 통계를 수집하게 되어 있는데,¹⁰⁾ 그 수집내용은 대검예규 215호에서 규정하는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등 세 가지 범죄통계원표에 의한 것이다(부록 2 및 표 15 참조).

각 원표별로 수집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발생통계원표는 발생지 수사기관, 범죄수법, 수사단서, 범행시 일기, 범죄발생지, 범죄발생장소 및 재산피해상황 등으로 경찰이 처음 알게 된 시점에서 알 수 있는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다. 다음 검거통계원표는 검거수사기관, 검거인원, 기수/미수별 인원, 범죄수법, 공범수, 범행도구, 검거단서, 장물처리방법 및 금전소비 용도, 회수상황 등 범인을 검거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으로 채워져 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및 전과상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당시 상태, 조치, 구속여부, 송치의견, 사건처리기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원표의 내용은 수십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범죄의 행태를 거의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당연한데, 다만 각 기관에서 의견을 개진할 경우 담당 연구관 등의 회의를 거쳐서 검찰총장의 결정으로 원표양식의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아주 드물게 있었다. 일례로, 2008년부터는 원표양식 중 범행동기에 보복범죄의 항목이 추가되었으며, 소년범죄자 범행시 정신상태 항목이 신설되었다. 범죄통계원표가 변경될 경우 이전 자료와의 비교가 어렵다는 단점은 있지만, 관련기관이나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0) 다만 경찰의 경우, 자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대검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수집하고 있으나 검찰에 송부할 때는 검찰이 규정하는 통계원표의 내용대로 다시 축소하여 보내고 있다.

(러) <표 15> 한국 범죄통계 원표의 주요 내용

통계표 부분	변수	
행정요소**	작성년월 본표번호 검거 사건표 번호 작성일 전산 입력일	발생지 수사기관 수사사건부 번호 작성자계급 및 성명 전산입력자
범행 부분	발생일시 및 요일 발생부터 인지까지 시간 발생지 (서울, 부산, 대구 등 53곳) 강도수법* 사기수법* 수사단서 침입강절도의 침입구 범행도구 입수방법	인지일시 및 요일 발생일 특수사정, 범행시 일기 발생장소 절도수법* 가정폭력* 학교폭력* 기수/미수별 침입방법 범행도구
피해품 부분	재산피해정도 피해금액 장물처분방법 회수액 및 액수 회수정도	피해품명 피해액 합계 (원) 금전소비 용도 회수액 합계 (원)
피해자 부분	성별 피해자 피해시 상황 상해정도	연령(6세 이하, 12세, 15세, 20, 30, 40, 50, 60세 이하, 60세 초과) 신체피해구분
검거부분 (피체포자부분)	검거연월일 발생부터 검거까지 시간 검거단서 조치 구속별 처분일자	검거인원 범행도구 조치 검거자 자백여부 송치 처분결과

* 발생원표와 검거원표에서 중복되는 항목포함

** 발생원표와 검거원표, 피의자원표 거의 동일

(머) <표 15> 계속

통계표 부분	세부 입력내용	
가해자부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범행시 연령 (만 세)	성별
	직업	외국인
	전과	전회처분내용
	보호처분	재범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후 은신처
	마약류 등 상용여부	범행시 정신상태
	범행동기	학력
	생활정도	혼인관계 및 부모관계
	공범관계	공범수

나. 범죄통계의 내용에 대한 비판

한국 범죄통계의 내용, 특히 수집도구인 범죄통계원표의 내용과 기준에 대하여 상당한 비판이 따르고 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지적 중 하나는, 통계원표의 입력항목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김준호·이동원, 1991; 탁종연, 2007). 세 가지 통계원표 항목의 내용은 대검찰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원표는 강도와 절도 등 전통적인 범죄에 초점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범죄, 예를 들어 사이버 범죄나 교통사고 관련 범죄¹¹⁾ 등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즉, 이런 범죄에는 범행수법이나 피해품 등이 강도나 절도범죄의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므로 새로운 통계항목이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관련된 문제로서, 범죄통계 수집대상 범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범죄사건에 대해 많은 양의 통계를 동일하게 입력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원을 사실상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범죄통계의 선진국에서도 국가 범죄 상황을 대표하기 위해 주요한 범죄들 수집 종만을 선정하여 통계를 수집하고 있는데, 한 번 들어보지

11) 이런 점을 감안하여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통계원표와는 완전히 다른 통계를 별도로 수집 관리하고 있다.

도 못한 희귀한 특별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까지 일반적인 형법범죄 사건과 같은 수준의 통계를 수집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다. 더욱이 원표의 내용은 이미 강절도 등 전통범죄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 교통사고, 환경, 위생 등 특별법 위반 사건의 특성이 제대로 수집된다고 보기도 힘들 것이다.

세 번째 비판은 전체적으로 통계의 입력항목(변수)과 그 세부 값(변수 값)이 너무 단순해 통계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다(탁종연, 2007). 예를 들어, 절도피해품의 경우, 피해액수와 피해품목만 기록하게 되어있어 향후 수사를 위해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농기계 전문 절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현재 발생원표에는 피해품 세부항목에 “기계류”밖에 없어 농기계라는 점을 특정할 수도 없고 주관식으로 기록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절도 품목이 농기계인지 몇 대를 훔쳤는지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마찬가지로 전문도둑의 경우에도 피해품을 “농임산물”이라고 입력해야 한다. 따라서 많은 항목에 세부적인 기록이 가능하도록 서술식 정보의 입력기능을 추가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범죄통계 작성 기준에 관한 비판

통계작성에 관한 다른 문제로서, 잘못된 죄수(罪數) 산정기준으로 인해 전체 범죄건수 산정이 부정확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탁종연, 2007). 대검찰청의 「범죄통계원표 작성 전산입력 요령」에 따르면, 어떤 범죄가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될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통계를 입력하지 않고(대검찰청, 2004: 3), 따라서 발생한 범죄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에서 폐기하고 있는 위계적 규칙(Hierarchy Rule)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사기범들은 종종 사적인 문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사기죄를 저지르는데, 이 때 형법상 사기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등 세 가지 죄를 저지른 것이지만 대검에서는 그 중 중한 죄 1건, 즉 사기로만 입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사문서

위조의 죄 등 주로 사기죄 등에 부속되어 저질러지는 범죄는 실제로 발생하여도 경찰이 처리한 사건 중의 일부만이 기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범죄 검거율이 부풀려지도록 사실상 유도시키는 기준도 존재한다. 대검예규에서는 여러 명이 하나의 죄를 공동으로 저지른 경우, 공범사건에서 “공범 중 일부라도 먼저 검거하면” 검거사건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대검찰청, 2004: 5). 즉, 현행 규정대로라면 10명이 공동으로 강간을 저질렀을 때 아무나 한 명만 잡으면 그 사건전체가 검거된 것으로 처리되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다수의 범죄자 중 주범과 종범을 구분하지 않고 일부만 검거해도 검거된 사건으로 통계치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수인 1죄의 경우 검거율이 부풀려지도록 보이게 하는 효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범죄사건을 처음 입건할 때 알고 있던 죄명이 검거시에 다른 죄명으로 판명 나더라도 발생원표상의 죄명을 바꾸지 않도록 한 규정(대검찰청, 2004: 15)도 검거율 부풀리기에 활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피살자가 발견된 경우, 검찰이 일단 상해치사 등으로 발생원표를 작성한 후, 범인을 검거 후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밝혀내면 살인으로 검거원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때 발생원표상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하지 않아야 하므로 상해죄(상해치사죄가 포함된)의 검거율은 떨어지고, 살인죄의 검거율은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실제로 수사관들은 발생, 검거, 피의자원표 모두를 검거시에 한꺼번에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므로 이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피의자원표에 관한 작성기준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다. 대검의 예규를 보면, 일반적으로 여러 명이 한 죄를 같이 저지른 경우, 즉 수인 1죄의 경우, 피의자 모두에 대하여 피의자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여러 명이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공범관계인 경우, 즉 수인 수죄의 경우, 피의자원표는 피의자별로 자신이 저지른 가장 중한 죄에 대해서만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피의자 갑은 절도와 사기죄로, 피의자 을

은 강도죄와 사기죄로 입건되었고, 이 때 사기죄는 공범관계일 때, 피의자
같은 사기죄로만, 피의자 을은 강도죄로만 피의자원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
다. 즉 한 범죄사건에 여러 명의 공범이 있을 때 어떤 경우에는 모든 공범에
대해 피의자 원표를 작성하고, 어떤 경우에는 주범 한명에 대해서 원표를 작
성하게 하는 등 기준이 혼란스럽게 되어 있다.

제 3 절 검찰의 공식범죄통계

1. 검찰의 범죄분석 자료수집

가. 통계생산과정

검찰통계는 경찰통계에 검찰 및 특별사법기관 인지사건을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경찰통계는 경찰이 인지하고 검거한 사건에 관한 통계이고 검찰
통계는 경찰을 포함하여 전국 각급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고 검거한 사건의
통계라고 할 수 있다(김준호·이동원, 1991: 53). 구체적으로 통계생산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는 다음의 세 가지 자료를 통하여 집계된다
고 볼 수 있다. 첫째, 경찰통계자료가 있는데, 이러한 경찰자료(해양경찰포
함)는 통계원표 관리서버를 통하여 대검찰청으로 보내진다. 경찰통계는 매일
1회 승인된 통계원표가 대검찰청으로 넘겨지게 된다.

둘째, 특별사법경찰(세관, 노동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사한 자료가 있
다. 이는 각 특별사법경찰에서 종이원표로 작성하게 되며, 이것을 각 검찰청
(지검 혹은 지청)으로 보내 각 검찰청 전산실에서 입력하게 된다. 이렇듯 각
검찰청 전산실에서 입력된 내용은 자동으로 대검찰청에 전달되게 된다. 참고
로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경찰의 기록송치와 원표가 검찰에 같이 전달되었으
며, 전산화 이후에는 특별사법경찰과 검찰의 전산이 통일되었다. 특별사법경

찰에서는 피의자 통계원표 번호가 기록되어서 검찰에 넘겨지게 되며, 특별사법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청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셋째, 검찰 자체인지 사건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검사실에서 직접 입력하게 된다. 입력은 검사실의 실무관이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입력된 것은 자동으로 대검찰청에 전달되게 된다.

이렇듯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로 범죄통계가 집계되며, 이를 종합한 것이 대검찰청에서 발간하는 「범죄분석」이며, 현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작성과 발행을 담당하고 있다.

나. 입력오류 등의 확인 작업

입력오류 등의 점검은 우선적으로 일선 검찰청의 전산 담당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검찰청(지검 혹은 지청) 전산실에서는 월말에 피의자통계원표 미작성, 혹은 사건번호 불일치를 확인하게 된다. 이는 전산에 불일치목록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를 중심으로 점검하게 된다. 즉, 전산에 불일치목록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중심으로 하게 되며, 그 외의 원표입력과정에서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전산담당자에 의해서도 입력오류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는 범죄분석지틀에 넣어보고, 전년도와 차이가 많은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에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대검찰청의 수정요구에 의해서 수정이 이루어지면, 다시 범죄분석지틀에 넣어 보게 된다. 이 때 큰 흐름에서 문제가 없으면 종료된다.

대검찰청에서 오입력을 점검하는 부서는 정보통신과이다. 정보통신과에서 오입력자료를 발견하게 되면 혁신기획과에서 일선청으로 수정지시가 이루어지게 된다.

다. 경찰, 검찰 통계 불일치 문제

검찰과 경찰통계자료의 불일치는 주로 발생건수에서 나타나고 있다. 검찰에서는 이러한 불일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는 경찰에서 CD로 온 자료 1년치를 검찰자료와 매치해 보고, 입력오류를 체크하며, 이를 토대로 경찰에 수정을 요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 통계책자의 발간과 내용 및 구성

가. 범죄분석의 발간

대검찰청에서 집계한 범죄통계는 「범죄분석」으로 발간된다. 「범죄분석」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에 접수처리되는 내용을 토대로 전산망을 통하여 입력된 것들을 종합하여 다음해 9월에 발표된다. 「범죄분석」은 1963년부터 책자로 발간되어 왔으며, 2000년에 발간된 「범죄분석」(1999년의 범죄통계)부터는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표되고 있다. 범죄분석 통권 131호부터는 프랑스 유니온 카탈로그사의 ISSN(국제 표준 연속간행물 번호) 1226-7716을 부여받아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나. 범죄분석의 내용 및 구성

「범죄분석」에서는 우선 범죄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주요 범죄관련 내용을 최근 5년 치의 통계를 통해 비교하고 있어서 범죄의 변화추세를 파악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범죄발생 검거상황, 일반적 범죄분석, 범죄자 처분결과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또한 범죄자 특성별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특성을 표로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여성범죄, 소년범죄, 학생범죄, 공무원범죄, 전과자 범죄, 정신장애 범죄 등이다. 「범죄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범죄현황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다. 범죄분석의 작성관련 문제점

검찰의 「범죄분석」이 한국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포괄적인 공식범죄통계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작성방법과 분류 등에 있어 매우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먼저 검찰의 「범죄분석」은 이름과 달리 범죄에 대한 분석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단순한 기술통계의 요약집에 불과하다. 경찰에서는 종래에는 비슷한 범죄통계 요약집을 「범죄분석」이라고 부르다가 현재 「범죄통계」라고 바꿔 부르는 것에 비추어 책자의 이름부터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범죄현상에 대한 실태와 추세 등에 실질적 분석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둘째, 사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건중심 자료가 전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심 있는 범죄학자들의 분석작업 마저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범죄통계의 학술적, 정책적 중요성에 비추어 미국의 NIBRS와 같은 사건중심자료의 공개를 이뤄야 할 필요성이 높다.

셋째, 검찰의 「범죄분석」의 경우, 외국 경찰기관의 범죄통계와 달리 범죄사건의 분류체계가 매우 미흡하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형법상 범죄사건 분류체계를 그대로 사용한다. 우선 전체 범죄는 그 실질적 내용에 관계없이 우선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형법상 상해와 범죄내용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으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로 법적용 된 경우, 「범죄분석」에서는 별도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같은 내용의 범죄라도 형법 조항이 적용된 경우와 특별법이 적용된 경우를 포괄하여 알 수 없다. 실제로, 2007년도 「범죄분석」에 따르면, 폭행이 64,235건, 상해 79,542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폭처법 사건이 무려 100,661건에 달하는데 폭처법 내용 중에는 폭행 및 상해에 해당되는 사건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2007년 한해 실질적인 상해나 폭행사건이 몇 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2008년도 「범죄분석」(대검찰청, 2008: 50)에서는 폭처법상

폭력 또는 상해에 해당되는 범규위반으로 처벌한 경우를 폭력 또는 상해 등으로 새롭게 합산하였다. 그 결과 폭력이 97,598건, 상해 93,178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폭처법 사건은 57,002건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7년도 폭처법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 중 3만 여건은 폭행, 2만 여건은 상해사건으로 분류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형법범의 경우에는 크게 (i) 재산범죄, (ii) 강력범죄(흉악), (iii) 강력범죄(폭력), (iv) 위조범죄, (v) 공무원범죄, (vi) 풍속범죄, (vii) 과실범죄, (viii) 기타 형법범죄 등 8가지로 대분류하고, 이하에 세부 범죄를 다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분류방식은 대분류에 있어서는 형법전이 대략 범죄의 본질로 나누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세부 범죄분류에 있어서는 범죄의 내용에 관계없이 형법전의 각 ‘장’별로 집계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통계 내용의 이해에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형법상 ‘강간의 죄’의 하단에는 강간뿐 아니라 남자도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강제추행도 포함되어 「범죄분석」 등에는 강간피해자에 남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별법의 경우에는 아예 분류를 포기하고, ‘가나다’순으로 정렬하고 있다. 범죄의 본질에 따라서 형법범과 성격이 비슷한 범죄들은 형법범과 합산하여 범죄유형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범죄는 별도 유형을 만들어 분류하여 통계치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제 4 절 경찰의 공식범죄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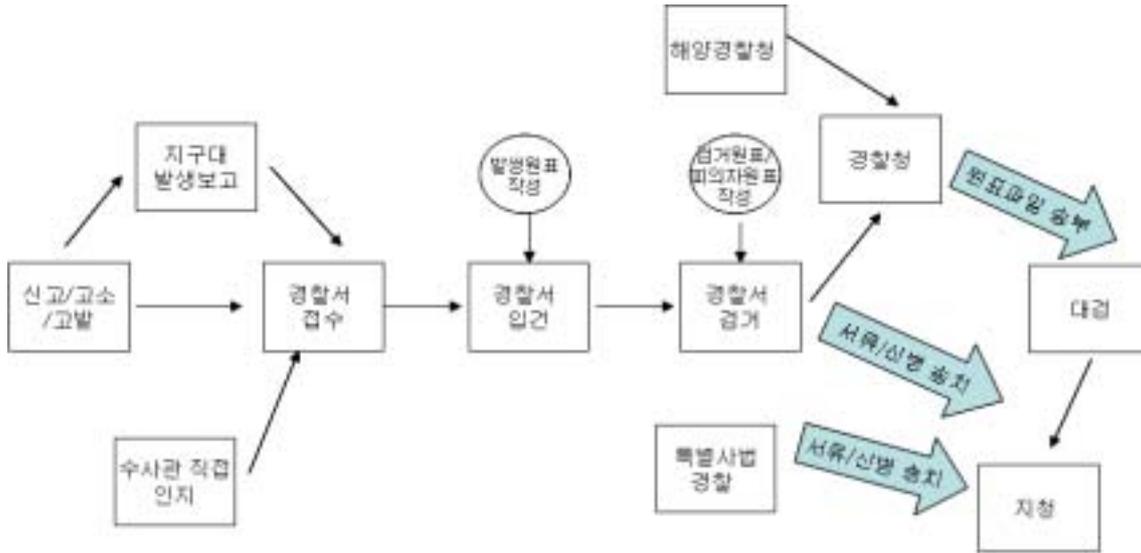
1. 경찰의 범죄통계 수집절차

가. 범죄통계 수집절차 개관

경찰의 범죄통계 수집절차는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

어 있다(탁종연, 2007). 즉, 범죄사건을 경찰관이 알게 되는 접수과정, 수사과정별로 담당 수사관은 그 내용을 3종의 범죄통계원표의 형태로 입력하게 되고 이것이 경찰청 범죄통계의 기본 자료가 되는 것이다.

(버) <그림 4> 한국 범죄통계 집계절차도



<그림 4>는 경찰과 각급 수사기관들의 범죄통계 집계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 특히 경찰의 수사과정과 연계하여 접수단계부터 검찰송치 단계까지 절차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먼저 접수단계를 살펴보면, 범죄사건은 (i) 피해자나 관련자가 범죄사건을 신고, 고소, 고발 등의 형태로 직접 경찰서에 접수시키거나, (ii) 시민들의 신고를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일차 접수한 후, 이를 경찰서에 송부하는 경우, 그리고 (iii) 경찰서의 형사 등이 직접 인지하는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경찰서에 접수된다. 접수가 되면, 형사과나 수사과 등 수사부서의 책임자는 당해 사건의 형사 처분 가능성을 판단하여 종결 또는 수사관에게 배당하게 되는데, 이때 배당받은 수사관이 이 사건의 간략한 내용을 ‘범죄사건부’에 기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으면 ‘입건’처리, 즉 수사의 개시가 되는 것이다. 이때 수사관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경찰의 범죄정보

관리시스템인 CIMS(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¹²⁾ ‘발생 통계 원표’ 입력창에 입력해야 한다.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어 범인을 검거하는 등으로 종결하게 되면, 담당 수사관은 수사내용을 바탕으로 검거원표와 피의자원표에 해당되는 내용을 CIMS에 입력하게 된다. 수사관들이 입력하는 통계원표 내용은 경찰청 과학수사계의 서버에 직접 기록하는 것이므로 경찰청에서 전국의 수사관들이 입력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종합, 분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지방경찰청에는 대체로 독립된 서버는 없고 단지 해당 지방청 산하 수사관들의 정보를 실시간 열람하고 분석할 수 있는 접근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경찰청에서 종국적으로 「범죄통계」는 이렇게 전국 경찰수사관들이 보고한 범죄통계원표를 근간으로 작성하는 통계요약자료이다.

경찰청에서는 일선 수사관들이 입력한 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의 내용을 모두 종합한 후, 이를 대검찰청에 송부하게 된다. 2007년까지는 각 내용을 파일형태로 전송하였으나, 일부 사건의 원표내용이 누락되는 등 불일치의 문제가 드러나, 2008년부터는 그 내용을 CD로 만들어 우편으로 배송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에서 전달받은 각 사건의 원표내용을 전국의 해당 지방검찰청에게 열람 가능하도록 해준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관들이 수사종결 후 지방검찰청에 해당 피의자의 신병과 사건서류를 직접 송치하므로, 지청의 검사는 해당 사건의 원표내용과 사건서류 및 신병을 비교해 볼 수 있다.

12) 범죄정보관리시스템이란 (CIMS) “사건수사, 범죄통계, 전자지도, 피해통보, 수사지식정보 등이 연계되거나 통합된 전산시스템”으로서 2004년부터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경찰청, 2007: 20). 이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은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다룬 모든 범죄사건기록이 입력되므로 각 범죄사건기록들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각종 범죄관련 통계자료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나. 범죄통계 수집과정에서의 문제점

(1) 입력통계의 정확성(accuracy) 부족

경찰의 범죄통계 생산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입력 자료의 정확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탁종연, 2007). 정확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대검예규로 되어 있는 범죄통계원표의 작성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자세한 매뉴얼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특히, 죄명과 죄수(罪數) 등에 대한 명확하고 자세한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에서 범죄통계와 관련하여 교육훈련도 거의 시행하지 않아 일선 수사관들이 복잡한 내용을 익히기 힘든 측면이 있다¹³⁾.

정확성이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수사관들의 통계에 대한 관심이 낮아성의 있는 입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사관은 한 범죄사건에 대해 발생, 검거, 피의자원표 등 세 가지 통계원표에 필요한 상당히 많은 양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 통상 통계업무는 직접적인 수사업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활용도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한, 부정확하게 입력해도 불이익이 거의 없다는 점도 이런 문제를 더 심화시킨다.

외부기관에서 정확한 범죄통계의 작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의 생활수준, 종교 등 신상정보를 질문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를 범죄통계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었으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신상정보를 묻는 것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여,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관이 오직 통계원표의 정확한 기록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피의자에게 신상정보를 묻거나 수사와 관련하여 간접적으로 알게 되지 않는 한 정확한 통계입력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일선 경찰관들이 범죄사건을 알게 되기도 이를 목살하거나 축소해야 할 압력을 느끼고 있으며, 실제로도 상당한 범죄사건이

13) 참고로, 경찰관 승진과목인 수사과목에 범죄통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난이도가 높아 대부분 기피한다고 한다.

은폐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다. 실무자급 경찰관에 대한 한 연구(탁종연, 2006)에 따르면, 시민들이 신고한 사건보다는 직접 인지한 사건과 무거운 범죄보다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 예를 들어 경찰관이 직접 알게 된 절도사건 등은 누락되는 경우가 특히 많다고 한다. 이것은 경찰수뇌부에서 범죄발생에 대한 근본책임이 경찰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믿는 소위 “경찰만 능론¹⁴⁾”을 믿고 있고,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도 같은 이유에서 수뇌부를 압박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2) 입력오류 검증시스템 미비

범죄통계의 정확성이 저하되는 또 다른 이유는 입력오류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이다(탁종연, 2007). 통계오류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적 통제기제와 시스템적 통제기제가 작동해야 하는데, 검찰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실정이다. 인적 통제는 직접 입력한 사람 외에 또 다른 감독자가 입력의 오류를 찾아내는 것인데, 현재 경찰에서는 담당 수사관이 범죄통계의 내용을 입력하고 나면 이를 다시 검증하는 사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수사기능의 서무기능을 수행하는 수사지원팀의 범죄통계 담당자가 입력자료에 대한 승인을 하기 전에 정확성 여부를 점검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수사서류를 직접 검토하는 과정 없이 거의 형식적으로 승인을 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 수사지원팀에는 범죄통계 담당자가 통상 1명뿐이기 때문에 경제팀, 지능팀, 교통사고조사계 등 여러 수사 실무부서에서 처리되어 올라오는 모든 수사서류를 검토하여 통계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마찬가지로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청에도 범죄통계 담당자가 1명 정도에 불과해 수많은 서류를 사람이 점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현재 경찰청

14) 하지만, 범죄학계에서는 경찰이 범죄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 여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캔사스시 순찰실험에서 드러난 것처럼, 순찰강도를 강화하는 정도로는 범죄의 발생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에서는 범죄통계 작성 중 과거의 자료와 비교하여 납득하기 힘든 사례 등,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몇 가지 오류의 유형을 찾아내어 일선 경찰서에 수정토록 지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든 오류를 발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통계오류 검증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법인 시스템적 통제기제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시스템적 통제방식은 주된 오류의 패턴을 분석하여 이를 프로그래밍화해 입력자가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자료를 입력하면 이를 바로 입력자와 감독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을 말한다. 물론 모든 자료가 논리적으로 점검될 수 없기 때문에 찾아낼 수 없는 오류도 있으나 사용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이런 방법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사건 발생일자와 검거일자를 대비하여 검거일이 발생일보다 앞설 수 없도록 하는 등 몇 가지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2. 경찰의 범죄통계 관리와 활용

가. 범죄통계 관리와 활용 개관

(1) 범죄통계 관리

전술한 바와 같이 전국 경찰 수사관들이 CIMS에 입력한 범죄통계는 경찰청 수사국에서 모두 수집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계에서 서버를 관리하고, 실제 범죄통계 자료의 관리와 활용은 수사국 수사계에서 담당한다. 수사계에는 범죄통계 담당 경찰관 1명과 지원하는 실무관 1명이 범죄통계 관리 및 활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실무관은 범죄통계업무 외에 여타 업무를 동시수행하고 있다. 경찰이 연간 처리하는 180만 건에 달하는 범죄사건의 통계관리와 분석 작업을 실질적으로는 단 두 명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2) 범죄통계의 분석 작업

경찰청 수사국에서는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수집한 방대한 범죄통계를 충분히 분석하거나 활용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의 통계자료 사용은 단순히 전국 경찰관서의 범죄통계를 종합해서 정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경찰의 범죄통계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 해 동안 경찰이 알게 되고 처리한 사건들의 현황을 요약 정리한 「범죄통계」 책자를 제작하고, 국회 등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하면 이를 토대로 한 통계자료를 추출해 주는 것이다. 「범죄통계」의 내용은 경찰청의 다른 자료, 「범죄백서」 등을 작성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통계수집 절차나 통계의 의의, 이유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범죄피해 조사를 담당하는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단 2천명을 대상으로 8개의 범죄에 한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지만, 수백 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통해 상세한 분석과 해설을 시도하는 점과 대조된다(예: 김지선 외, 2007).

이렇게 경찰의 범죄통계 활용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통계를 제대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인력, 의지, 법적 근거가 모두 부족한 탓으로 판단된다. 우선 경찰청 수사국내에 통계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할 자체 연구 인력이 없고, 경찰청 산하의 연구기관인 경찰대학이나 치안정책연구소 또는 외부 연구기관에도 범죄통계의 분석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도 않다. 또한 법률적으로 경찰이 검찰에 보고하는 외에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위탁하는 등 활용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규정한 법규가 없다는 점도 이유가 된다. 경찰청에서는 범죄통계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분명하지 않고, 하위 법령인 사법경찰관리 직무규칙, 대검예규, 그리고 경찰범죄통계규칙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과 외부 공개 등 적극적인 활용이 쉽지 않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할 경찰 수뇌부의 의지가 부족한 탓으로 판단된다.

경찰의 범죄통계의 활용이 범죄통계의 작성에 거의 국한되고 있으므로 아

래에서는 경찰청의 범죄통계 작성방법과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나. 범죄통계의 내용 및 관련문제

(1) 기본적 배경설명 부족

대검의 「범죄분석」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의 「범죄통계」는 범죄통계를 보여주는 책자인데, 통계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거의 전무하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통계 중 하나인 검거율이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설명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강간죄가 강제추행도 포함된 죄이기 때문에 남성 피해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해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 이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물론 범죄학자들조차도 통계내용 자체를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실질적인 범죄분석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대검의 범죄분석은 제목이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통계내용을 분석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다행히 경찰청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통계간행물의 이름을 「범죄통계」로 바꾸기는 했으나, 여전히 근본적으로 180만 건에 달하는 범죄사건에 대한 통계치를 제시하면서 각 범죄의 추세분석, 범죄의 증감이유, 향후 전망 등 기초적인 설명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결국 범죄통계의 관리책임을 방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개별 범죄들에 대한 특별보고서가 제공되는 것도 아니다. 경찰청의 경우 「경찰백서」를 통해 아주 약간의 추가 설명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도 본격적인 의미의 범죄분석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이 아니다.

(2) 「범죄통계」 간행물의 내용상의 한계

경찰의 「범죄통계」도 검찰의 「범죄분석」과 마찬가지로 방대한 교차분석표의 집합에 불과한 것인데, 교차분석 작업마저도 충실히 되어 있지 못하

고 있다.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왼쪽 세로축에는 죄명을 배치하고, 가로축에는 (i) 발생건수와 검거건수, 그리고 범죄자의 (ii) 성별, (iii) 다시 성년과 미성년의 성별을 배치해 교차분석의 결과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양식으로, 같은 내용을 지방경찰청별로 반복해 보여주는 것이 책자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된다.

추가적인 교차분석은 각 범죄의 내용을 (i) 범죄사건의 상황정보, 예를 들어, 발생시간 및 요일, 장소, 수법과 (ii) 피해자에 관한 정보, 예를 들어 피해자의 성별 및 피해, 피해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그리고 (iii) 범행수법, 즉 침입방법, 공범, 범행도구, 그리고 (iv) 범죄자에 대한 정보, 예를 들어, 범인의 연령, 직업, 전과, 이전 형사처분내역, 마약류 사용여부, 범행동기 등으로 나뉘본 것이다.

물론 이 같은 교차분석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임에는 분명하나, 범죄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최종별 분석의 의미가 제한적이다. 죄명은 크게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누고, 이를 죄의 형태와 세부 범죄내용으로 나누어 제시하는데, 특정 범죄사건을 실질적 내용에 관계없이 적용 법률명으로 나누기 때문에,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처럼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음에도 완전히 다르게 분류되어 있고, 이를 합산하여 보도록 분류해 놓고 있지도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범죄성격에 따라 분리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도, 오직 죄명 하나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에도 국내외의 범죄조사기관에서는 피해품과 범죄방식에 따라 자동차절도, 자동차부품절도, 대인절도, 주거침입절도 등으로 세분화된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예: 한국 범죄피해조사, 국제 범죄피해조사, 영국 범죄통계 등), 「범죄통계」에서는 단순히 절도로만 분류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절도위험이 가장 큰 지 알 수 없고, 국내외 자료

와 비교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범죄의 세부양태와 적용법조 등 범죄통계의 원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관련 학자들이 보다 세밀한 분석을 할 수 없으므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원자료의 공개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다. 범죄통계의 분류체계 관련문제

경찰청의 「범죄통계」는 기본적으로 범죄통계원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는 검찰의 「범죄분석」과 거의 같은 방식에 따라 작성되므로, 「범죄분석」에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 자료의 단순성, 위계적 죄수산정 (Hierarchy rule) 등이 그대로 내포되어 있다. 다만, 경찰의 「범죄통계」가 검찰의 「범죄분석」과 약간 다른 점이 있으므로 그 차이점에 대해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형법범 분류

먼저 경찰의 「범죄통계」와 검찰의 「범죄분석」은 분류체계가 약간 다르다. 경검 모두 범죄를 형법범과 특별법범죄로 나누고 형법범의 경우, 대략 형법전의 장 순서대로 배열하는 것은 같다. 다만, 형법범과 특별법범 내에서의 세부적인 분류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난다. 검찰의 경우, 형법범의 경우에는 크게 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 형법범죄 등 8가지로 대분류하고 이하에 세부 범죄를 다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범죄분석, 2008).

이에 비해 경찰의 경우에는 형법범을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 지능범, 풍속범, 기타 형법범 등 6가지로 대분류하고, 이하에 범죄 형태별로 중분류하고, 적용법조에 따라 다시 소분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범죄통계, 2007). 즉, 경찰의 분류방식이 훨씬 더 상세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검찰의 경우 강력범죄(흉악)라는 대분류 하에 ‘살인’이라는 한 가지 죄에 대한 건수만이 나열

되어 있는데 비해, 경찰의 경우, 강력범 대분류하에 ‘살인’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 밑에 다시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및 승낙살인, 자살교사 및 방조, 위계/위력/촉탁/승낙살인 등 6가지로 다시 소분류해서 보여준다. 이렇게 경찰의 통계가 검찰보다 상세하기 때문에 경찰의 「범죄통계」의 분량이 무려 1,145쪽에 달해, 검찰의 「범죄분석」 591쪽의 두 배 가까이 된다.

경찰의 「범죄통계」가 검찰의 「범죄분석」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범죄분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찰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범죄사건을 실질적 내용에 관계없이 크게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 큰 차이가 없더라도 형법상 폭행과 상해로 처리된 경우와 폭처법으로 다뤄진 경우를 합산하여 볼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2) 특별법범 분류

경찰의 특별법범 분류도 검찰과 마찬가지로 큰 문제가 있다. 검찰의 경우 특별법을 가나다순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비해, 경찰의 경우에는 분명한 기준 없이 특별법을 나열한 것으로 보인다. 「범죄통계」에는 특별법을 183개로 나눠보고 있는데, 아무런 대분류 없이 1번부터 183번까지 순서를 매겨 제시하고 있다. 사실 자세히 보면 1번부터 5번까지는 교통사고 관련 특별법 사건이고, 6번부터 9번까지 선거법 관련 사건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¹⁵⁾, 10번 이후에는 10번 변호사법, 11번 출입국 관리법, 12번 소년법, 13번 상법, 14번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일관된 기준이 없어 보인다. 마찬가지로, 본질상 유사한 특별법, 예를 들어, 윤락행위등방지법은 122번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139번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법률은 180번에 배치되어 있어 관련 법률을 묶어보기도 힘들게 되어 있

15) 예를 들어, 특별법 1번 도로교통법 (교통사고), 2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번 특가법 (도주차량), 4번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5번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6번 도로교통법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나열되어 있다.

다.

(3) 지표범죄 분류

기타 관련된 문제로는, 경찰이 전체 범죄현상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하는 소위 5대 범죄사건의 통계가 기본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소위 5대 범죄사건은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범죄를 말하는데, 무엇보다 이들 범죄가 가장 중요한 범죄인지 여부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이들 범죄는 분류방식의 문제로 인해 실상 그 범죄사건들을 제대로 산정한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강도살인사건은 살인이 아닌 강도로 분류되어 있고, 폭처법 사건으로 처리된 사건은 폭력에 포함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부 범죄사건의 비중이 너무 높아 전체 범죄를 대표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절도, 폭력 사건 등이 여타 사건보다 월등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가중치부여(weighting)없이 단순히 합산하여 발표하기 때문에, 소위 5대범죄사건의 발생추이는 사실상 절도와 폭력사건의 추이에 불과한 실정이다.

라. 범죄통계 작성권한문제

경찰의 범죄통계가 신속히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공식 범죄통계를 작성하면서도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모두 검찰에 있다는 것이다. 즉, 실질적인 통계의 생산주체(경찰)와 이를 통제하는 예규의 주체(검찰)가 달라 문제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근본적으로 범죄통계 원표는 대검예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서, 통계내용의 수정 등에 대하여 일일이 검찰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신설 경찰서가 생기면 통계원표에 이에 대한 새로운 입력코드가 있어야 하나, 이런 사소한 수정이 몇 차례 건의과정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통계원표 내용 지침 중 경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 예를 들어, 발생통계 작성 후 한 달이 지나면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지 말라는 사항에 대해 검찰과의 조정 및 승낙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듯 실질적인 통계생산 주체인 경찰과 이를 통제하는 예규의 주체가 달라 문제해결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마. 경찰 범죄통계의 외부 이용자에 대한 비공개

범죄통계 자료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경찰청이나 검찰 외에도 일반 국민들, 사업가, 지방자치 단체, 그리고 관련 학자 등에게도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범죄통계 원자료의 공개는 물론 책자로 제작되는 범죄통계의 내용의 공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 경찰청 홈페이지인 사이버 경찰청에서는 「범죄통계」 내용 중 극히 일부 내용만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 FBI에서는 범죄통계자료 책자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고, 한국 검찰청에서도 「범죄분석」의 내용을 Pdf파일의 형태로 자유롭게 내려 받게 하는 것과 대조된다.

경찰은 원자료의 공개도 일체 하지 않고 있다. 범죄통계가 행정기관 외에도 다양하게 쓰여야 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자료공개로 인한 해당자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공개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생활보호 등이 우리나라보다 철저한 미국에서도 사생활침해 방지를 위해 적정한 가공을 한 후 범죄통계를 공개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전혀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제 5 절 해양경찰 및 특별사법경찰의 공식범죄통계

1. 해양경찰

해양경찰청은 종래 경찰청의 예하기관으로 존재하다가 1996년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한 후 2008년 현재 국토해양부의 외청으로 편제된 사법경찰기관이다(해양경찰청, 2008). 해양경찰의 주 임무는 해양에서의 경찰활동과 오염방제이며, 경찰예하기구 시절부터 바다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에 대한 사법권을 가진 경찰기구였으며 지금도 경찰로서의 임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찰과 해양경찰의 업무분장에 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오직 범죄의 발생장소가 바다인지 여부만이 기준일 뿐이다. 따라서 해경은 오염방제 등과 관련한 특별법 뿐 아니라 상당한 수의 형법범 사건도 다룬다. 2007년의 경우, 형법범 사건 16,518건과 특별법범 35,559건 등 총 52,076건의 발생사건을 처리했다.

해양경찰은 독립한 지 십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찰과 많은 면에서 밀접하게 업무협조를 하고 있으며, 범죄통계측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실제 해경은 범죄통계의 수집과 관리를 위해 경찰의 범죄통계 시스템인 CIMS를 그대로 빌려 쓰고 있다. 각 해양경찰관서의 CIMS는 해양경찰청 본부에서 접속할 뿐, 바로 경찰청 과학수사계의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즉, 범죄통계관리 측면에서 해양경찰청 본부는 경찰청 산하의 일개 지방경찰청과 같은 존재인 것이다(그림 4 참조). 범죄통계 수집도구인 통계원표도 대검의 예규에 따라 동일한 것을 쓰고 있으므로 통계관리 면에서는 경찰의 그것과 거의 모든 것이 같다고 할 수 있다.

해양경찰청의 범죄통계 관리와 공개도 경찰의 그것과 마찬가지로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경도 별도의 범죄통계 분석요원이 없다시피 하고 실무자는 해경이 처리한 범죄사건을 요약하여 해양경찰백서를 작성하는 수준의 업무

에 초점을 두고 있다. 통계자료의 심도 있는 분석이나 공개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 특별사법경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방자치단체, 세관, 노동부, 철도공안 등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이 인정된 일부의 중앙행정부처나 지방자치단체를 일컫는다. 따라서 특사경은 기관의 성격상 주로 특별법위반 사건을 처리한다. 2007년 한해 특사경이 처리한 사건은 104,257건 중, 형법범은 불과 975건이었으며, 특별법범은 103,282건에 달했다.

특별사법경찰은 많은 기관을 포괄하여 일컫는 개념이다. 따라서 이들의 통계관리 실태를 모두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다만, 검찰청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들 기관이 공통적으로 범죄통계관리에 있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특사경 중에 범죄통계관리와 수집을 위해 경찰의 CIMS같은 별도의 통계입력시스템을 가진 경우가 없고, 모두 대검에서 예시한 종이로 된 3종의 통계원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특사경은 범죄사건을 종결하여 사건서류와 신병을 지방검찰청에 송치할 때 사건서류에 통계원표를 첨부하는 것으로 관련 업무를 종결하고 있다(그림 4 참조).

특별사법경찰기관들이 직접 범죄통계를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사경이 처리한 범죄사건 통계의 실질적인 관리는 지방검찰청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사건서류를 접수한 지방검찰청의 접수계에서 첨부된 통계원표의 내용을 검찰청의 통계시스템에 입력하게 되고 이것이 「범죄분석」의 자료로서 활용되는 것이다.

지방검찰청 직원에 따르면, 특사경에서 처리하는 범죄가 통계원표와 잘 맞지 않는 특별법범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많은 원표의 항목이 빈칸으로 남겨진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제 6 장 한국 공식범죄통계 발전을 위한 제안

제 1절 기술적 개선안

1. 범죄통계의 정확성 제고방안

한국 공식범죄통계의 여러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수집 통계가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어 정확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체계적 오류와 무작위적 오류 두 가지 모두로부터 비롯되는데, 먼저 무작위적 오류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하고자 한다.

가. 무작위적 오류 경감

전술한 바와 같이 범죄통계는 수사관이 직접 입력하는데, 이에 대한 인적 점검이나 프로그램적 점검이 거의 없어, 입력단계의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이런 입력단계의 오류를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은 통계치를 자동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가해자의 인적사항, 범죄의 발생시간, 장소, 피해내역 등은 수사과정에서 적어도 한번 이상은 수사서류로 작성되는데, 이런 내용을 경찰의 CIMS 등을 통해 자동적으로 추출하여 입력이 되도록 하는 방법이 그런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담당 수사관은 동일 정보를 반복 입력할 필요가 없어 업무 경감효과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형통망 사업단에서는 이러한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범죄사건 수를 올바르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적 통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i)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경찰서에 동일사건을 고소했을 때 이를 자동적으로 확인 통보해주거나, (ii) 한 명의 범인이 여러 경찰서 관할에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의 범죄로 병합처리¹⁶⁾ 될 수 있도록

알려주거나, (iii) 한 사건의 공범 중 일부를 나중에 다른 경찰서에서 검거했을 때, 즉 소위 재기사건의 경우, 원래 사건에 자동 병합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프로그램적 통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서, 지방경찰청 등 관서단위에 범죄통계 전문요원을 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전문요원은 프로그램적 통제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해당 관서의 사건들에 대해 통계 품질관리와 분석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경찰의 경우, 경찰청에 실무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적어도 각 지방경찰청별로 2명 이상이 근무하면서 통계품질관리와 통계분석 작업을 나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입력을 담당하는 수사관들에 대한 교육 훈련강화도 역시 중요한 개선방안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수사관들은 범죄통계 입력을 수사와 큰 관계없는 번거로운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검예규로 되어 있는 범죄통계원표의 작성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자세한 매뉴얼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범죄통계 입력이 성의 없이 이뤄지게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범죄통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범죄통계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자세한 통계 입력방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 통계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데는 그 활용도를 높여 경찰 자체의 수사 활동에서 그 통계를 직접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 것이다. 뒤에 신설을 제안한 범죄통계 분석팀을 중심으로 애써 수집한 통계가 여러 사람들에 의해 활발히 사용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6) 범인 A가 여러 경찰서관내에서 수차례에서 걸쳐 절도를 한 경우, 상습절도 한 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대검찰청, 2004). 만일 각 경찰서에서 별도로 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면, 한 건의 범죄가 발생했다고 통계처리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나. 체계적 오류 경감

체계적 오류를 줄이는 작업은 그 발생 원인에 대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데, 다행히도 한국 범죄통계에서의 체계적 오류는 그 형태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다. 탁종연의 연구(2006; 2007)에 따르면, 경찰에서는 범죄발생률과 검거율을 통해 업무성과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발생사건 수를 임의적으로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한다.

(1) 발생원표 작성에 대한 적극적 통제

통계누락의 경향을 기술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경찰이 범죄를 접수하는 순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자동적으로 발생통계원표가 작성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현재 CIMS상에서 접수와 발생통계원표 작성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접수하고 정식으로 입건수사한 후에도 범인을 검거하기 전까지 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검거되지 않은 미제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통계가 작성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CIMS에서 접수와 발생통계원표를 자동으로 연동화 시킬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의 통계누락을 막을 수 있다. 다른 방법은 범죄사건의 범인을 검거하기 못해 사건을 미제 처리(미해결 처리)할 때, 발생통계원표의 작성이 없으면 미제처리를 할 수 없도록 막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2) 범죄발생에 대한 책임론 극복

정확한 범죄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지구대 등 일선경찰 등이 경미한 절도범죄 사건 등을 묵살해 버리는 경우나, 강도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좀 더 가벼운 범죄인 절도가 발생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범죄피해자가 사건을 정식 수사의 요구인 “고소”를 하지 않고 “진정”을 통해 수사를 요청한 경우 합의를 유도하고 사건을 통계처리하지 않는 경우 등이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경찰관들이

이렇게 통계처리에 소극적인 주요 원인은 경찰지휘관들이 범죄발생과 미검거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기 때문이라고 하므로(탁종연, 2006)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경찰지휘관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경찰 스스로가 고쳐나가야 할 점이라고 본다.

참고로, 미국 연방수사국에서는 범죄통계 발표시 관서별 범죄순위의 해석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범죄발생은 경찰활동 외에 다른 많은 변수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범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볼 때, 한국 범죄통계의 누락현상을 개선하려면 한국 경찰지휘관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할 뿐 아니라, 범죄발생에 대해 경찰에 책임을 추궁하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인식전환이 같이 이뤄질 때만이 이 체계적 오류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경찰청에서는 범죄발생과 검거에 대한 매커니즘에 대해 관련학자들과의 워크숍과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범죄통계」 등 통계간행물 발표시 부연설명하고, 언론과 정치인, 그리고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것이다.

(3) 범죄통계 수집의 중요성 홍보

범죄통계에 체계적 오류가 생기는 원인 중 하나는 외부기관의 압력이다. 즉, 범죄학 등 관련학문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정보 중 하나가 범인, 즉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인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신상정보를 묻는 것이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 그러한 것이다. 이것은 범죄통계가 아직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의 소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통계를 주관하는 대검찰청에서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경찰, 해경, 특사경등에 대하여 이의수집을 재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실 현재도 대검에서는 여전히 신상정보를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묻고 있으므로 충분히 현실성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2. 범죄통계의 적정성 향상방안

이하에서 형사사법기관 자체뿐 아니라, 관련 학자, 언론, 국민 등 통계의 다른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식범죄통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범죄통계의 분석단위 다양화

한국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원표작성 기준으로 범죄사건과 피의자만이 인정되는 등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가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범죄통계에서는 단지 어떤 피의자들이 어떤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검거되는가에 초점을 둘 뿐, 어떤 집단이나 지역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지, 어떤 피해자나 피해품이 주로 목표물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피의자원표도 모든 피의자에 대해서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피의자도 온전한 분석단위로 활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여러 개의 범행, 피해품, 피해자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입력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미국의 NIBRS를 참고하여 입력단계부터 분석단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박정선, 2008:111-112). 즉, 분석단위를 수준별로 개인 뿐 아니라, 집단, 지역까지 나누고, 주체별로 가해자, 피해자, 피해품, 위반행위 및 사건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입력 때부터 가해자, 피해자, 피해품, 위반행위 등에 대해 얼마든지 복수로 입력할 수 있도록 원표입력방식을 개편해야 한다. NIBRS에서 한 사건에 내포된 범죄는 10건까지, 피해자는 999명까지, 가해자는 99명까지 입력하게 한 것을 참고하여 이 정도 수준까지 입력 가능하도록 CIMS등 통계입력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 범죄통계에 대한 기본설명 및 분석제공

대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는 공히 범죄통계의 의미 등에 대한 배경설명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통계내용에 대한 진지한 분석 역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이런 관행은 기관의 내·외부 소비자 모두의 요구 충족에 큰 장애요소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범죄통계를 제시할 때 반드시 기본적인 설명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범죄통계의 수집방법, 오류통제 방식, 추정된 통계가 있을 경우 추정방식, 통계의 의미(검거율의 산정방식, 기수와 미수를 포함한 것인지 등), 그리고 통계에 나타난 죄명이 실제로 포함하는 세부 범죄명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미국 연방수사국의 범죄통계 홈페이지에서는 UCR정보를 소개하면서 제공하는 설명자료(narrative)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see <http://www.fbi.gov/ucr/>). 예를 들어, FBI는 통계대상이 된 각 범죄의 법률적인 정의, 기수와 미수의 포함여부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범죄현상에 대한 진정한 범죄분석을 제공해야 한다. 연구의 기본목적은 단순히 기술(describe)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명(explain)과 예측(predict) 나아가 통제(control)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범죄통계를 관리하는 것은 범죄통계를 통해 현재 범죄가 어느 정도, 어떤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는지 등을 기술하는 외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향후에는 어떻게 변화할 지를 추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경찰청과 검찰청은 공히 자신들이 통제하는 범죄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는 것 외에도 이에 대한 설명과 예측 등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물론 학술적 배경이 부족한 공무원들이 이 같은 연구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범죄학자 등 관련학자들이나 자체 연구기관에 업무위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인적 지원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설명할 것이다.

다. 죄명을 개별 범죄의 본질 중심으로 재구성

현행 「범죄통계」와 「범죄분석」등 범죄 통계간행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죄명의 분류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데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즉, 형법죄명은 원칙적으로 형법각론의 각 장(章)을 단위로 한 죄명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1) 상세한 범죄분류

형법의 장은 범죄통계의 죄명 단위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인 죄명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 범죄 통계 책자에 나오는 내용 중 ‘강간’에는 진정한 강간만을 넣고 외국 경찰처럼 강제추행 등은 따로 통계치를 분류해야 한다.

관련된 문제로서 형법상 하나의 죄로 되어 있어도, 필요시에는 통계정보를 세분화해 제시해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 하나의 범죄이지만, 피해품목별로 세분화하여 자동차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자전거절도, 전자제품절도, 현금절도, 기타 유가증권절도, 농산물 절도 등으로 통계치를 생산하여 제공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는 훨씬 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범죄통계원표에도 피해품을 세분화해 수집하면서도 발표 시에는 이를 제대로 분리해서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범행 방법별로 나누어 주거침입절도와 대인절도로 나누어 통계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2) 본질이 같은 범죄의 통합

또한, 범죄의 본질이 같을 경우 처벌의 근거가 된 법 규정과 관계없이 합쳐서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에서 서술한 형법상 강간통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중 강간사건에 해당하는 통

계치를 합산하여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08년부터는 형법상 폭력/상해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중 해당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이미 합산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아직 일부 이뤄지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질이 같더라도 적용 법조가 다른 경우에는, 형사사법기관과 법학자들의 편의를 위해 개별 범죄를 적용된 죄명에 따라 추가적으로 나누어 통계치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3) 미수범과 기수범 분리

또한 외국과의 비교를 위해서는 범죄의 미수사건과 기수사건을 나누어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상당한 국가에서는 기수사건만을 통계로 산정하기도 하기 때문에 미수와 기수의 별도 추산 및 제시가 중요하다.

라. 특별법 위반사건에 대한 통계처리

대검찰청은 특별법범의 경우, “발생빈도가 많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일반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을 위반한 범죄를 선정”하여 「범죄분석」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한다(대검찰청, 2007: 2). 즉 모든 특별법 위반 범죄를 통계로 산정하는 것은 아니며, 포함여부는 상당히 작위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연 특별법위반사건을 범죄통계로 모두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관행 때문에 당장 특별법 위반사건에 대한 통계를 전혀 수집하는 않는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다만, 한국전체 연간 범죄건수인 180만 건 중 절반이 넘는 100만 건 이상의 특별법 위반범죄의 상당수는 일반 국민들이나 학자들도 잘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범죄성격상 수집되는 통계정보의 내용도 달라야 하는데, 형법범 사건과 같은 통계를 수집하는 것이 타당하

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더욱이 특별법이 너무 많아 이를 어떻게 분류해야 할지도 몰라 대검찰청에서는 단순히 ‘가나다’순으로 분류하는 형편이고 보면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1) 특별법범 수집통계 내용 재정리

특별법 위반 범죄에 대해서는 수집통계의 수준 정리와 죄명의 대분류 두 가지가 우선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발생, 검거, 피의자원표의 내용은 강절도 등 전통적 형법범을 기준으로 만든 것으로서 특별법범 사례에 잘 어울리지도 않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많은 특별법범의 경우,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묻는 것은 무의미하다. 또한 전체 특별법범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교통사고에 관련해서는, 경찰의 교통통계원표가 이미 훨씬 더 중요하게 쓰이므로 과감하게 범죄통계원표 작성을 생략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아무튼 각 특별법범의 경우에는 통계원표의 내용을 범죄의 성격에 맞게 전면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특별법범의 적절한 재분류

이와 수반되어 해결할 문제가 특별법범을 적정하게 대분류하는 것이다. 특별법범을 ‘범죄의 성격’에 따라 대분류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예를 들어, 환경범죄, 보건범죄, 경제범죄, 공공질서에 관한 범죄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특별법 제정시 담당 행정부처가 있으며 이들 부처의 성격은 특별법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참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범죄의 경우 재경부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등이 있다¹⁷⁾.

17) 2008년 현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대검찰청의 용역을 받아 특별법범을 대분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를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마. 주요 지표범죄의 구성

한국에서는 법률적으로 처벌하는 모든 범죄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발표방식은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으나 그다지 많이 사용되지 않는 정보까지 관리하기 위해 많은 자원을 사용하고, 또 관리하기도 곤란하다는 단점도 있다. 미국처럼, 주요 지표범죄(Index Crimes)를 선정하고 그 범죄통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경찰에서는 소위 '5대 범죄'라는 지표범죄 개념을 도입하여, 살인, 강도, 절도, 폭력, 성범죄 등에 대해서 별도로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검찰의 「범죄분석」에서 분류한 형법범 중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도 경찰청의 5대 범죄와 전체적으로 약간 더 광범위할 뿐 내용은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재산범죄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강력범죄(흉악)에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그리고 강력범죄(폭력)에는 폭력,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그리고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기존 지표들은 미국의 지표범죄들과 유사하다. 즉, UCR의 지표범죄나 NIBRS의 A그룹 범죄와 비슷한 것이다(박정선, 2008: 109-110). UCR의 1군 범죄에는 폭력범죄인 살인, 강간, 강도, 가중 폭행(상해) 등 4개 범죄와 재산범죄인 주거침입, 절도, 자동차절도, 그리고 방화 등 4개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상 한국 5대 범죄에 방화가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NIBRS의 A그룹은 조금 더 많은 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A그룹에는 방화, 폭력행위, 뇌물, 주거침입범죄, 위조, 손괴, 마약, 횡령, 공갈, 사기, 도박, 살인, 납치/유괴, 절도, 자동차절도, 음란물, 매춘, 강도, 성범죄, (비강요)성범죄, 장물관련, 무기관련법 위반 등 22개 범죄가 속해 있다.

사실, 세계 각국의 범죄피해조사에서도 이러한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들에 대해서만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Niewbeerta, 2002). 이런 국제적 관행을 볼 때, 경찰의 5대 범죄를 약간 더 확장한 재산범죄와 강력범죄를 주요 지표범

죄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주요 지표범죄를 선정하고 나면, 지표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입력하는 통계의 내용을 차별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 NIBRS에서 22개 범주 46개 범죄인 Group A의 범죄에는 행정요소와 범죄, 피해자, 피해품, 가해자, 체포된 자 등 53개 항목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경미범죄인 Group B에 속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체포된 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 기록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면 절도, 강도 등 재산범죄와 살인, 강간, 폭행 및 상해 등 강력범죄(흉악 및 폭력)를 한국의 주요 지표범죄로 보고, 범죄, 피해자, 피해품, 가해자, 체포된 자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기타 형법범죄나 특별법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체포된 자에 대한 정보만을 기록하거나 범죄성격에 맞는 새로운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이다.

바. 수집 통계내용 개선

(1) 범죄성격에 따른 통계원표 양식 다양화

수집하는 통계원표의 내용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범죄원표들은 강절도와 사기사건에 초점을 두고 제작한 것으로서 사이버범죄나 경제범죄 등 범죄성격이 다른 범죄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표범죄에 해당된 범죄에 대해서는 통계항목을 조금 더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범죄성격이 완전히 다른 범죄는 새로운 통계항목을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90년대 이후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경우 기존의 통계원표의 내용으로는 범죄의 방식과 피해유형을 통계화 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 사이버범죄의 경우 범죄유형은 바이러스, 악성코드 배포, 서버공격, 사이버금융사기 등으로 분류하고, 피해액, 침투방식 등에 내용도 이에 맞게 새롭

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개정작업은 사이버범죄를 많이 다룬 수사관과 학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통계항목이 필요한지를 연구한 후에 이뤄져야 할 사항일 것이다.

또한, 소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의자원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살펴 본 일본의 경우를 보면 형법범 피의자 중 소년은 성인과 구분해서 원표를 작성하고 있다. 그리고 소년의 피의자원표에는 가족관계 및 보호사항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년의 경우 가족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며, 2007년 12월에 개정된 우리나라 소년법에서도 보호자에 대한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소년비행에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소년의 경우에는 부모 특성 및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내용들을 원표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수집 항목의 값 세분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범죄통계를 실제 수사와 연구목적에 맞게 발전시키려면, 무엇보다 통계원표의 내용을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절도의 경우 피해품목을 좀 더 세분화하여 자동차절도, 자동차부품절도, 자전거절도, 전자제품절도, 현금절도, 기타 유가증권절도, 농산물 절도 등으로 나눌 뿐 아니라, 이 세부속성도 좀 더 구체화시켜 자동차라면 자동차의 회사명, 용도(승용, 승합, 트럭), 차명도 특정할 수 있게 하고, 전자제품이라면 컴퓨터, MP3, TV 등 제품종류까지 분류하고, 더 나아가 제품명까지 입력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항상 주관식으로 추가정보를 기입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정보가 수집될 때에만 어떤 자동차, 어떤 전자제품이 가장 많이 도난을 당하는지 등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 특별사법경찰의 통계수집방법 개선

경찰과 검찰은 이미 전산망을 이용하여 범죄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시간을 절약하게 할 뿐 아니라 통계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 특별사법경찰의 경우 원표는 종이문서로 작성한 후 지청이나 지검으로 보내지며, 이를 해당 지청이나 지검 전산실에서 입력하게 된다. 특사경에서 원표작성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지청이나 지검으로 보내지더라도 이를 확인한 후 되돌려 보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사경에서의 원표작성도 전산화되어야 하며, 필수입력사항 등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범죄통계자료 공개방안

현재 한국의 공식범죄통계는 「범죄통계」와 「범죄분석」 등 두 권의 통계간행물을 출판하는 것 외에는 전혀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활용이 되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 자료의 부정확성과 기본설명이 부족한 탓이 크다고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는 기타 통계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적 방안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가. 현재 제공하는 자료의 공개 활성화

먼저, 경찰청은 최소한 현재 출판하고 있는 「범죄통계」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현재는 경찰청에 친분이 있는 사람만이 「범죄통계」를 구해볼 수 있을 뿐이다.

(1) 범죄통계 파일의 온라인상 공개

현 상태에서 가장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과 같이 범죄통계의 내용을 범용 문서파일인 아도브사의 PDF파일로 변환시켜 일반인도 쉽게 내

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도 단순히 책자를 올린 것에 불과하고 그 세부내용은 Excel등 응용프로그램에서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경찰과 검찰의 범죄통계간행물에 나타난 통계치를 일일이 손으로 입력하는 수고로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2) 범죄통계의 웹버전 공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진보된 방법으로는 미국 연방수사국과 같이 범죄통계 책자의 내용을 인터넷 버전으로 바꾸어 하나의 웹사이트의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사용자들은 방대한 통계자료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음은 물론, 범죄통계에 나온 내용을 표나 Excel파일 등으로 내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2008년 현재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책자의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올려 일반인들이 Excel등의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대검에서는 형사정책연구원에 원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는 작업은 단지 책자의 내용을 온라인에 올리는 작업이라서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계자료는 제공받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나. 원자료의 공개를 통한 연구 자료로서의 활용도 제고

가장 이상적인 범죄통계 자료 공개방법은 범죄통계원표 자료와 같은 원자료(raw data)를 CD 등 전자매체를 통해 관련 학자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적 태도도 학술연구 목적을 위해서는 그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한국정부의 통계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통계법에서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통계는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¹⁸⁾”(제3조)로서 통계는 “공공자원”(제2조 제1항)이므로, “개인이나 법인 또

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이용되어야 한다” (제2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1조(통계자료의 이용) 제 1항에서 “특정의 대상에 관한 수량적 정보를 작성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통계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동법 제 31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통계작성의 장은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내용 및 범위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서는 이런 심사는 “통계자료 제공 심의회”를 두어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학술연구 차원의 통계 공개요구에 대해 적절한 심의를 거쳐 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한 것이다.

단지 통계법에서는 관련자의 사생활이 침해되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로 “특정의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 자료를 처리한 후 제공하여야 한다”(제31조 제2항 하단)고 규정하여, 자료공개에 있어 관련자의 사생활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데이터 마스킹 기법 등을 사용해 가공한 자료를 제공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통계법의 태도를

18) 통계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통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로서

1. 통계작성기관이 그 기관의 관리·운영이나 일상적인 업무수행 등에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량적 정보 가. 하부조직, 소속기관, 산하 기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제출 받은 현황, 실적 등의 자료를 단순하게 집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나. 소속 직원이나 회원, 이해관계자, 서비스 이용자 등 특정 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 성과나 계획에 관한 만족도 등 주관적인 인식이나 의식 또는 의견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2. 통계작성기관이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 또는 사후 확인과정에서 통계작성대상이나 절차 또는 방법 등의 적합성 및 타당성, 오차의 발생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3. 통계작성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개인적인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연구 논문이나 보고서 등에 수록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4. 그 밖에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나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수량적 정보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통계는 경찰청의 정책평가 및 수립에 가장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며 범죄라는 사회현상의 연구와 분석을 위해 불가결한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작성한 자료이므로, 시행령에서 말하는 통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적인 통계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통계자료의 공개 등을 원칙으로 정한 통계법의 적용을 받는 수량적 정보라고 해석해야 한다.

종합해 볼 때 검찰과 경찰은 학술연구 목적을 위해 범죄통계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학자들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데이터 마스킹을 거친 원자료 공개

이렇게 범죄통계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근거가 확실한 만큼 중요한 것은 검찰과 경찰이 향후 자료 공개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절차와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범죄통계 자료공개와 관련되어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역시 관련자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인데, 자료공개와 사생활보호의 충돌을 완충시켜 주는 방법 중 하나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 예컨대 Data masking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것이다. 현행 범죄통계 자료 중 숨겨야 할 정보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민번호, 나이, 주소 등인데 Data masking 기법을 적용하여 이를 삭제하거나 불명확하게 만드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완전히 삭제하고, 나이는 10살 단위¹⁹⁾로 단순화해 공개하고, 주소는 광역시와 도 수준 또는 시, 군, 구 수준²⁰⁾까지만 제공하면 통계자료를 통해 관련자를 특정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사생활보호는 거의 충분할 것이다. 범죄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은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이유가 거의 없으므로 이렇게 정화된 자료만으로도 충분한 연구를 수행할 수가 있을 것이므로 이런 방법은 사생활보호와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보존이라는 두 가지 목적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인적·공간적 제한을 거친 원자료 공개

만일 이러한 Data Masking 만으로도 사생활보호에 대한 우려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호책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원자료에 대

19) 지금도 통계원표상의 나이는 10대를 제외하고는 10살 단위로 수집되고 있다.

20) 지금 통계원표상 발생지는 서울, 부산, 대구등 시, 도 수준으로 수집되고 있다.

한 접근을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사람에게만 허용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통계청이나 미국의 지역정보 포함 범죄피해조사(Area Identified-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자료의 공개방식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인구통계국(Census Bureau)에서는 범죄피해사건의 지역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범죄피해조사 자료는 피해자의 인적사항만을 정화시킨 후 온라인을 통해 일반에게 무료로 배포²¹⁾하지만, 피해사건의 지역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경우에는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만 공개한다(Lauristen & Schaum, 2004: 355-35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 사용하고 싶은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의 필요성(substantive merit)과 노출방지책(disclosure avoidance review)을 인구통계국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ii) 승인 후, 모든 자료 분석은 인구통계국의 지역 데이터연구소(Regional Data Center)에서 CCTV와 사람에 의한 감독 하에서만 실시한다. iii) 분석을 통한 모든 결과물은 감독관이 먼저 검사한 후 연구자에게 넘겨준다.

한국 통계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방법을 쓰고 있다. 즉, 광공업통계조사와 기업활동 통계조사의 원자료를 외부교수에게 활용하게 할 경우 통계청의 한정된 공간에서만 접근토록 하고 자료의 외부유출을 막는 것이다.

(3) 구체적인 범죄통계 공개방안

한국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범죄통계의 공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i) 범죄통계자료의 접근은 대학의 교수, 연구소의 연구원 등으로 제한한다.
- ii) 자료를 이용하고 싶은 연구자는 연구의 범죄통계의 명칭, 목적, 내용과 범위, 제공방법 및 보안대책 등²²⁾을 범죄통계작성기관장인 경찰청장 또는 검찰

21) 전 세계 어디서건 ICPSR에 이메일만 등록하면 미국 범죄피해조사 (NCVS)자료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22) 통계법시행령 제47조에서는 통계이용자가 통계자료를 신청할 때, 1. 통계이용자의 이름(기관등인 경우에는 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 2. 통계자료의 명칭 3. 통계자료의 사용목적 4. 통계자료의 내용 및 범위 5. 통계자료의 제공방법 6. 통계자료의 보호방법을 적어서 신청해야 하고,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여부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얻는다.

iii) 기관의 승인은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통보한다. 자문위원은 수사국장과 범죄학 및 경찰학자 중 명망있는 자들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iv) 승인 후에 연구자는 경찰청에서 지정한 장소와 시간에 경찰의 감시 하에 자료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초창기에는 경찰청내의 과학수사계 사무실 또는 경찰관이면서 연구자들이 근무하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등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여 행동을 감시하고, USB나 CD, 이동식 하드디스크 등을 일체 지참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료가 담긴 컴퓨터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v) 분석결과가 나오는 프린터는 감독관실에 설치하여 감독관이 먼저 검토 후에 연구자에게 건네준다.

제 2 절 제도적 개선안

1. 가칭 [범죄통계관리팀]의 신설

가. 범죄통계관리팀 신설의 근거규정

현재 범죄통계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인적자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발전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으로 먼저 통계관리요원을 확충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계법 제6조(통계책임관의 지정 및 운영) 제1항에서도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소관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통계업무 종합관리 및 품질관리, 다른 기관과의 협력,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통계책임관을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통계책임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범죄통계관리팀의 인원 구성방안

이런 통계법의 태도를 고려할 때, 경찰청의 경우에는, 경찰청 수사국에 가칭 [범죄통계관리팀]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팀의 팀장은 범죄통계에 대한 기획 및 통계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 경무관급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선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범죄학이나 경찰학 등 관련학문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 양적 방법론에 정통한 자 또는 이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무관급 경찰관을 팀장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다.

책임관의 임무를 보좌할 팀원으로는 (i) 통계 간행물 등 공개 자료의 제작을 담당하는 행정요원, (ii) 통계자료를 통해 현 범죄현상에 대한 고찰 및 예측 등을 실시하는 통계분석요원, (iii) 각 경찰관서의 통계생산과정을 점검하여 통계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점검하는 감사요원과 (iv) 올바른 통계관리를 훈련시킬 훈련요원 및 그 보조원들이 필요할 것이다. 팀원들도 통계학 및 관련학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자가 필요함은 당연할 것이다.

이런 범죄통계관리팀은 경찰청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각 지방경찰청에도 유사한 기구가 필요하다. 한국에도 지역별로 발생범죄의 양상과 지역행정의 특성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통계분석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청에서 설치할 조직과 비슷한 조직이 존재해야 한다. 대검찰청과 각 지방검찰청에도 경찰청과 비슷한 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2. 통계 교육 및 감사 강화

가. 통계교육 강화

범죄통계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중의 하나

가 범죄통계에 대한 교육훈련과 감사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경찰이나 특별사법경찰, 지방검찰청, 대검찰청 등에서 범죄통계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원표를 직접 입력(특사경의 경우에는 작성)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대검예규에 지침이 제시되어 있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이를 사건발생시 적용해서 입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표입력이 보다 정확하고 통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기존의 원표입력 담당자 및 새로 원표입력을 담당하게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교육의 주체와 방법은 수사보안연수원을 통해 모든 수사관들에게 수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범죄통계의 올바른 입력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거나, 미국 연방수사국의 경우와 같이 [범죄통계분석팀]의 교육훈련관이 전국 경찰관서에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경찰청의 지침과 입력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통계관리 감사제도 신설

교육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범죄통계 관리에 대한 적절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국내외에서 경찰기관들이 통계관리의 부실과 심지어 조작을 통해 범죄발생률을 낮추고 검거율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었음이 지적된 바 있으므로(탁종연, 2006), 적절한 감사제도가 필요하다. 미국경찰에서 운영하는 품질보증 리뷰(Quality Assurance Review or QAR) 감사 제도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감사제도는 경찰청과 검찰청 모두 반드시 운영해야 하며, 감사팀의 구체적인 임무는 각 경찰관서를 현장 방문하여, 각종 입력통계의 정확성 및 범죄 검거율 계산 등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교정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또, 감사 후에는 각 지방경찰청의 범죄통계 관리 담당자로부터

개선현황을 보고받고 재확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범죄통계 자문위원회 운영

범죄통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안 중 하나는 가칭 [범죄통계 관리자문위원회] 또는 통계자문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 위원회의 위원들은 경찰과 검찰의 통계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범죄학, 경찰학 및 통계학 관련학자로 3-5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위원회가 해야 할 임무는 범죄통계의 수집, 관리, 공개에 대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i) 범죄통계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방향과 기준을 설정하고, ii) 범죄통계의 공개범위와 방법에 대한 조언을 하고, iii) 자료 사용에 대한 신청이 오면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 등이 이들이 해야 할 임무가 될 것이다. 또한 현재와 같이 형통망사업과 관련하여 범죄통계 수집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질 때 효율성과 정확성과 적정성을 고려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경찰과 검찰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범죄통계에 대한 규정을 총괄하는 대검찰청의 경우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4. 관련 법규 정비

전술한 바와 같이 범죄통계 수집을 위한 근거규정으로 법무부령과 규칙 등은 존재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즉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치안정보의 수집이라는 것이 범죄통계를 수집·관리하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다.

범죄통계 자료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물론, 범죄사건의 민감

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집, 가공하고 외부에 일부 공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국가기관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향후 범죄통계에 대한 각종 영과 규칙을 담당하고 있는 대검찰청이나 범죄통계의 대부분을 실제로 처리하는 경찰청에서는 자신들의 업무인 범죄통계의 목적, 수집내용과 범위 및 공개범위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법률을 제정하는 작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5. 통계 작성기준 재검토

가. 죄수, 검거율 기준 재검토

범죄통계관리자문위원회가 선정되어 해야 할 임무 중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범죄통계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범죄사건 수 (죄수)의 산정기준과 검거율 계산기준 등은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현재처럼 위계적 기준을 적용시켜 사기에 부속되어 발생한 사문서 위조의 죄나 동 행사죄는 계산하지 않아야 하는지 등은 학술적 토론과 정책적 판단이 모두 필요한 사안이나, 미국의 NIBRS의 사례를 보아 각각의 범죄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검거율 계산기준은 더욱 많은 고려를 필요로 한다. 현재처럼 다수의 범죄자에 의해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한 명이라도 검거하면 검거사건 원표를 작성하게 하여(대검찰청, 2004: 5) 그 사건 전체를 검거된 사건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옳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 범죄자 중 몇 명을 검거했을 때 검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일부만을 검거했을 때 주범을 검거하면 검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등도 깊이 연구해야 할 사안이다. 생각건대, 주범과 종범이 명확한 경우에는 주범이 검거된 경우만 범죄가 해결된

것으로 판정해야 하고, 주·종범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적어도 절반이상의 범
죄자가 검거된 경우에만 검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범죄통계 용어 개정

범죄통계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현재 사용하는 관련 용어를 개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그 중 가장 시급히 바뀌어야 할 것이 발생건수라는 개념과
검거건수라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이 직접 알게 된 사건을 인지
사건이라고 부르고, 고소 고발 등으로 알게 된 사건까지 포함하여 발생사건
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발생사건이라는 용어는 여러 모로
논리적이지 않다. 일본의 경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해서 범죄발생건수라는 표현 대
신 경찰이 알게 된 사건이라는 의미에서 범죄인지 건수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발생사건을 인지사건으로 바꿔 부르고, 이를 경찰이
적발한 사건과 기타 방법으로 인지한 사건으로 나누면 될 것이다.

또한 검거사건과 검거율이라는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검거사건이나 검거율이라는 개념은 경찰의 활동으로 인해 범인을 검거해서
해결한 사건만을 검거했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해자의 사망, 피해자의
협조거부로 인한 검거불가능 사례 등을 예외적 방법에 의해 해결될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하는지 등도 논의해 보아야 할 사안이다. 생각건대, 미국이나
영국 등의 경우와 같이 검거(arrest)가 아니라 해결(clearance)이라는 용어를
쓰고 여기에 경찰이 직접 검거한 경우, 그 밖의 방법에 의해 해결된 경우를
나누어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만, 검거율을 통해 경찰
활동의 효과성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범죄통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에는 이와 같이 많은 논점이 있으므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해 현재 사용하는 범죄통계 관리규칙을 재개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 7 장 결 론

제 1절 연구요약

본 연구는 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 등 한국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범죄통계의 작성주체인 경찰, 검찰, 해경 등의 원자료 작성 및 입력과정, 처리과정 및 활용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미국과 일본의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범죄통계의 품질제고 및 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자료의 정확성과 적정성 등을 저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한국의 공식범죄통계는 작성기관에 관계없이 모두 정확성과 적정성 등의 측면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보였다. 모든 기관 공히 입력단계에서의 무작위 오류의 가능성이 있었고, 이를 검증할 인적·시스템적 방법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집한 범죄통계의 분류·분석과 관련하여 개선될 점이 있다고 보였으며, 외부 공개가 제한적이어서 통계수요자에게 적정하게 이용되지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태는 매년 100억이 넘는 예산과 수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정확하고 쓸모 있는 범죄통계를 관리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가 지속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적·물적 자원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고, 통계관리에 대한 연구·교육·감사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기술적인 개선안으로 먼저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범죄통계를 자동 입력하고, 시스템적인 오류검증 방법을 개발하는 등 무작위적 오류를 감소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집단계에서부터 분석의 단위를 다양화하는 한편, 입력하는 통계항목의 세부 값을 상세하게 수정하는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범죄를 형법의 장이 아니라 본질에 따라 재분류하고, 전체 범죄를 주요 지표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죄로 나누고 지표범죄에 대해서는 상세한 통계정보를 관리하되, 기타 범죄에 대해서는 간략한 정보만을 관리하는 등 통계관리의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였다. 또 통계정보의 활발한 이용을 위하여, 통계법과 동시행령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통계자료를 적절하게 가공하고 인적·공간적 제한을 둔 상태에서 외부학자에게도 공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적인 개선안으로 경찰청과 검찰청 등 주요 기관에 가칭 범죄통계관리팀을 신설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범죄통계관리를 위한 교육 및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범죄학자 및 통계전문가로 구성된 범죄통계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여 범죄통계의 정책과 공개심의 등 통계업무를 도와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범죄통계 관리의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둘 것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범죄통계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발생건수 및 검거율이라는 용어와 계산방법의 개정을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수정하도록 제안하였다.

제 2절 연구의 함의

범죄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데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국가기관은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다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한국의 국가기관들은 이제까지

어떤 범죄가 왜 발생하는 지,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 파악하고, 알려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도입할만한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우리나라 공식범죄통계의 실태 및 문제점을 밝혀내고, 구체적인 개선방법을 제시하였다. 공식범죄통계는 우리 사회의 범죄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형사정책 및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식범죄통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정확한 공식범죄통계를 생산해 낼 수 있는 방안들이 계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공식범죄통계에 대한 연구들이 축적되어서 공식범죄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의 공식범죄통계는 보다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한국의 범죄통계 관리개선을 위한 작은 밑받침이라도 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한국 문헌>

- 김지선·이천현·홍영오·박형민·김한균·권수진. 2007.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이동원. 1991. 범죄통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서울.
- 권세혁·탁종연. 2007. 경찰통계.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 탁종연. 2006. “범죄통계의 진실성.”한국경찰연구. 5 (2):59-80.
- 탁종연. 2007. “한국 범죄통계관리 분석과 발전방안: 경찰 범죄정보관리 시스템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17 (3): 169-194.
- 경찰청. 2007. 범죄통계.
- 대검찰청. 2004. 범죄통계원표작성.전산입력요령.
- 대검찰청. 2007. 범죄분석.
- 대검찰청. 2008. 범죄분석.
- 박정선. 2008. NIBRS의 소개와 범죄통계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서울.
- 이건·이현희. 2005. 범죄정보관리시스템 (CIMS) 활용방안연구.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 임준태. 2000. New York시 경찰개혁 사례와 한국경찰 발전 방향 모색.
용인: 치안연구소.
- 정재구·박석희·남경현·이우리·윤종욱·박덕근·노재곤·윤형백. 2008.
국가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사회문화분야 범죄분석통계), 통계청.
- 조선은행조사부. 1948. 경제연감.
- 조선은행조사부. 1949. 경제연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외국문헌>

- Bachman, Ronet & Raymond Paternoster. 2004. *Statistics for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Boston: McGrawHill.
- Cantor, David & Lynch, James. 2000. "Self-report Surveys as measure of crime and criminal victimization". *Criminal Justice*. 85-138.
- Catalano, Shannan M. 2006. *The Measurement of Crime: Victim Reporting and Police Recording*. LFB Publication: New York.
- Doerner, William & Steven Laub. 2002. *Victimology*. New York:Anderson.
- Felson, Marcus. 2002. *Crime and Everyday Life*. London:Sage.
- Hirschi, Travis. 1969. *Causes of Delinquency*.
- Hofer, Hanns Von. 2000. "Crime Statistics as Constructs: the Case of Swedish Rape Statistics." *European Journal of Criminal Policy and Research* 8:77-89.
- Lauristen, Janet L. and Robin J. Schaum. 2004. "The Social Ecology of Violence against Women" *Criminology*. 42. 2:323-358.
- Maxfield, Michael & Earl Babbie. 2001. *Research Methods for Criminal Justice and Criminology*. CA: Wadsworth.
- Langworthy, Robert H. & Lawrence F. Travis III. 2003. *Policing in America*. London:Prentice Hall.
- Nieuwbeerta, Paul. 2002. *Crime victimiza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Results from the International Crime Victims Survey, 1989-2000*. NCSR: Boom Juridische uitgevers.
- Mosher, Clayton, Terance Miethe, and Dretha Philips. 2002. *The Mismeasure of Crime*. Sage: London.

Skogan, Wesley. 2004. Community Policing. CA: Wadsworth.

Vold, George, Thomas Bernard, & Jefferey Snipes. 2001.

Theoretical Criminology. New York: Oxford Press.

Walker, Jeffery & Sean Maddan. 2005. Statistics in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MI: Jones and Barlett.

Walker, Samuel & Charles Katz. 2005. The Police in America.
Boston: McGrawHill.

浜井浩一. 2006. 犯罪統計入門. 日本評論社.

<인터넷 자료>

미국 연방수사국 홈페이지: www.fbi.gov

미국 대학간 정치사회연구 컨소시엄 홈페이지: www.icpsr.org

미국 관리 및 예산실 홈페이지: www.whitehouse.gov/omb

일본 경찰청 홈페이지: www.npa.go.jp

일본 법무성 홈페이지: www.moj.go.jp

일본 최고재판소 홈페이지: www.courts.go.jp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www.kcg.go.kr

<부록 1> 일본 범죄통계원표

평범 평면지정요표
[사상평도능 제외]

구분	구분명	사상평도능 제외			
		1	2	3	4
①	비밀정보·사기·위장·배임·경유이탈·부동산권·세리권 이익				
②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③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④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⑤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⑥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⑦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⑧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⑨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⑩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⑪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⑫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⑬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⑭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⑮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⑯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⑰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⑱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⑲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⑳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㉑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㉒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㉓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㉔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㉕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㉖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㉗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㉘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㉙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㉚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㉛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㉜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㉝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㉞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㉟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㊱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㊲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㊳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㊴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㊵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㊶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㊷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㊸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㊹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㊺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㊻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㊼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㊽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㊾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㊿	면적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지중도

1. 수법 코드표

장소	002 동기소지상선	0102 기타	0102 무의연장도	0113 기타	0114 기타
장도	0103 수택장도	0101 근용기타장도	0102 무의연장도	0113 기타	0114 기타
비밀입장도	0103 도공(합 도공에지장도)	0108 탁자장도	0107 자용차장도	0110 도상장도	0118 기타
종교	0203 동신공관	0201 동지(합학하여) 공종을 법함	0202 기타		
침입장도	0308 비밀첩이	0304 들어 숨어 침입	0302 벽에 숨어 침입	0303 허공자물 침투	0304 침입기 회피
	0309 비밀첩이	0301 숨어 침입	0302 벽에 숨어 침입	0303 허공자물 침투	0304 침입기 회피
장도	0401 서명(문장) 장편을	0402 은인(문장) 장편을	0403 은기(문장) 장편을	0404 은기(문장) 장편을	0405 기타
	0402 은인(문장) 장편을	0401 은인(문장) 장편을	0403 은기(문장) 장편을	0404 은기(문장) 장편을	0405 기타
장도	0508 직행물이	0501 초상인에서	0502 남의	0503 수첩(문장) 장편을	0504 복권에서
	0509 복구권에	0501 허공자물 침투	0502 침입으로	0503 침입으로	0504 남의
기타	0608 장자는	0601 차악을	0602 차악을	0603 차악을	0604 차악을
	0609 동거인들	0601 차악을	0602 차악을	0603 차악을	0604 차악을
장도	0708 동거인들	0701 차악을	0702 차악을	0703 차악을	0704 차악을
	0709 동거인들	0701 차악을	0702 차악을	0703 차악을	0704 차악을
장도	0808 동거인들	0801 차악을	0802 차악을	0803 차악을	0804 차악을
	0809 동거인들	0801 차악을	0802 차악을	0803 차악을	0804 차악을
장도	0908 동거인들	0901 차악을	0902 차악을	0903 차악을	0904 차악을
	0909 동거인들	0901 차악을	0902 차악을	0903 차악을	0904 차악을
장도	1008 동거인들	1001 차악을	1002 차악을	1003 차악을	1004 차악을
	1009 동거인들	1001 차악을	1002 차악을	1003 차악을	1004 차악을
장도	1108 동거인들	1101 차악을	1102 차악을	1103 차악을	1104 차악을
	1109 동거인들	1101 차악을	1102 차악을	1103 차악을	1104 차악을
장도	1208 동거인들	1201 차악을	1202 차악을	1203 차악을	1204 차악을
	1209 동거인들	1201 차악을	1202 차악을	1203 차악을	1204 차악을
장도	1308 동거인들	1301 차악을	1302 차악을	1303 차악을	1304 차악을
	1309 동거인들	1301 차악을	1302 차악을	1303 차악을	1304 차악을
장도	1408 동거인들	1401 차악을	1402 차악을	1403 차악을	1404 차악을
	1409 동거인들	1401 차악을	1402 차악을	1403 차악을	1404 차악을

2. 발생장소 코드표

장소	0101 동기소지상선	0102 무의연장도	0103 수택장도	0104 탁자장도	0105 동신공관	0106 침입장도	0107 서명(문장) 장편을	0108 은인(문장) 장편을	0109 직행물이	0110 초상인에서	0111 복구권에	0112 장자는	0113 동거인들	0114 차악을	0115 동거인들	0116 차악을	0117 차악을	0118 차악을	0119 차악을	0120 차악을
장도	0201 동지(합학하여) 공종을 법함	0202 기타	0203 허공자물 침투	0204 침입기 회피	0205 은기(문장) 장편을	0206 은기(문장) 장편을	0207 은기(문장) 장편을	0208 은기(문장) 장편을	0209 은기(문장) 장편을	0210 은기(문장) 장편을	0211 은기(문장) 장편을	0212 은기(문장) 장편을	0213 은기(문장) 장편을	0214 은기(문장) 장편을	0215 은기(문장) 장편을	0216 은기(문장) 장편을	0217 은기(문장) 장편을	0218 은기(문장) 장편을	0219 은기(문장) 장편을	0220 은기(문장) 장편을

3. 범죄공공발 코드표

장소	0101 동기소지상선	0102 무의연장도	0103 수택장도	0104 탁자장도	0105 동신공관	0106 침입장도	0107 서명(문장) 장편을	0108 은인(문장) 장편을	0109 직행물이	0110 초상인에서	0111 복구권에	0112 장자는	0113 동거인들	0114 차악을	0115 동거인들	0116 차악을	0117 차악을	0118 차악을	0119 차악을	0120 차악을
장도	0201 동지(합학하여) 공종을 법함	0202 기타	0203 허공자물 침투	0204 침입기 회피	0205 은기(문장) 장편을	0206 은기(문장) 장편을	0207 은기(문장) 장편을	0208 은기(문장) 장편을	0209 은기(문장) 장편을	0210 은기(문장) 장편을	0211 은기(문장) 장편을	0212 은기(문장) 장편을	0213 은기(문장) 장편을	0214 은기(문장) 장편을	0215 은기(문장) 장편을	0216 은기(문장) 장편을	0217 은기(문장) 장편을	0218 은기(문장) 장편을	0219 은기(문장) 장편을	0220 은기(문장) 장편을

4. 직업코드표

거주법 · 가족장사자	01 노동법 · 여법	02 판매업주	03 음악업주	04 교육 · 건축업자별	05 부동산업자별	06 제조업자별	07 기타 자영업주
거주 · 기술직	11 고령	12 의료 · 보건장사자	13 애견인 · 프로스포츠선수	14 변호사	15 기타 전문 기술직		
관리직 직업	16 의법 · 의사 · 과장 이상의 공무원	18 회사 · 중앙 총의 역할		19 회사 · 중앙 총의 부 · 과장			
사무직	21 사무직						
판매장사자	25 판매장업	26 회계직 · 세입계정	27 노점 · 영상 · 배행회사				
서비스종사업자	28 미용사 · 이발사	29 조리사 · 바텐더	30 음식결정원	31 후스디스 · 풍수론	32 유동업소통의 직업	33 기타 서비스직	
기술직	36 건설업 · 배관공	38 자동차 · 정밀기계 제조	39 금속기술직				
보안종사자	35 경찰관 · 자위관	46 기타 보안장사자					
통신종사자	47 통신종사자						
노동자업자	50 தொகைப்பலுருய்யர்	51 일반노동자업자					
55 기타							
학생 · 정도 종	60 미취학 아동	62 중학생	63 고등학교	64 대학생	65 전문학교생 중		
유치자	66 추부	68 입법자	69 의사 · 법관 · 입대중 생활자	69 연금 · 고용보험을 생활자	70 유럽자	71 기타 유리지	

5. 국적등 코드표

아시아	04 싱가포르	05 필리핀	06 홍콩영국	07 북조선	08 요녕성	09 베트남	10 일본의 기타	11 대만	12 이스라엘	13 이란	14 인도
15 인도네시아	16 캄보디아	17 푸에르토	18 사우디아라비아	19 시리아	20 싱가포르	21 스리랑카	22 미국	23 튀니지	24 네팔	25 파키스탄	
26 방글라데시	27 팔리핀	28 베트남	29 캄보디아	30 캄보디아	31 튀니지	32 홍콩	33 요르단	34 태완스	35 태완스	36 태완스 기타	
37 이탈리아	38 영국	39 이탈리아	40 오스트리아	41 독일	42 그리스	43 스위스	44 스페인	45 스페인	46 우루과이	47 체코	48 덴마크
49 독일	50 노르웨이	51 헝가리	52 아일랜드	53 프랑스	54 벨기에	55 폴란드	56 모로코	57 루마니아	58 러시아	59 유럽 기타	
60 이탈리아	61 벨기에	62 캐나다	63 쿠바	64 과테말라	65 오스트리아	66 도미니크 공화국	67 페루	68 페루	69 북아메리카 기타		
70 아르헨티나	71 추루카	72 에콰도르	73 콜롬비아	74 칠레	75 파라과이	76 브라질	77 페루	78 페루	79 페루	80 남아메리카 기타	
아프리카	81 알제리	82 이집트	83 케냐	84 케냐	85 튀니지	86 나이지리아	87 남아프리카	88 모리셔스	89 모리셔스	90 아프리카 기타	
오세아니아	91 호주	92 뉴지랜드	93 피지	94 오세아니아 기타							
북극권 등	95 북극권	96 북극권									

6.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 코드표

주요외국인	05 학사	06 연수	07 장기(연속)가	특별체류		09 불법상학	10 불법체류	불법기류		13 주학	14 취학	15 연수	16 기타	08 여행	09 여학	10 단기체류	11 단기체류	12 단기체류	13 단기체류	14 단기체류	15 단기체류	16 단기체류	17 단기체류	18 단기체류	19 단기체류	20 단기체류	21 단기체류	22 단기체류	23 단기체류	24 단기체류	25 단기체류	26 단기체류	27 단기체류	28 단기체류	29 단기체류	30 단기체류	31 단기체류	32 단기체류	33 단기체류	34 단기체류	35 단기체류	36 단기체류	37 단기체류	38 단기체류	39 단기체류	40 단기체류	41 단기체류	42 단기체류	43 단기체류	44 단기체류	45 단기체류	46 단기체류	47 단기체류	48 단기체류	49 단기체류	50 단기체류	51 단기체류	52 단기체류	53 단기체류	54 단기체류	55 단기체류	56 단기체류	57 단기체류	58 단기체류	59 단기체류	60 단기체류	61 단기체류	62 단기체류	63 단기체류	64 단기체류	65 단기체류	66 단기체류	67 단기체류	68 단기체류	69 단기체류	70 단기체류	71 단기체류	72 단기체류	73 단기체류	74 단기체류	75 단기체류	76 단기체류	77 단기체류	78 단기체류	79 단기체류	80 단기체류	81 단기체류	82 단기체류	83 단기체류	84 단기체류	85 단기체류	86 단기체류	87 단기체류	88 단기체류	89 단기체류	90 단기체류	91 단기체류	92 단기체류	93 단기체류	94 단기체류	95 단기체류	96 단기체류	97 단기체류	98 단기체류	99 단기체류	100 단기체류	101 단기체류	102 단기체류	103 단기체류	104 단기체류	105 단기체류	106 단기체류	107 단기체류	108 단기체류	109 단기체류	110 단기체류	111 단기체류	112 단기체류	113 단기체류	114 단기체류	115 단기체류	116 단기체류	117 단기체류	118 단기체류	119 단기체류	120 단기체류	121 단기체류	122 단기체류	123 단기체류	124 단기체류	125 단기체류	126 단기체류	127 단기체류	128 단기체류	129 단기체류	130 단기체류	131 단기체류	132 단기체류	133 단기체류	134 단기체류	135 단기체류	136 단기체류	137 단기체류	138 단기체류	139 단기체류	140 단기체류	141 단기체류	142 단기체류	143 단기체류	144 단기체류	145 단기체류	146 단기체류	147 단기체류	148 단기체류	149 단기체류	150 단기체류	151 단기체류	152 단기체류	153 단기체류	154 단기체류	155 단기체류	156 단기체류	157 단기체류	158 단기체류	159 단기체류	160 단기체류	161 단기체류	162 단기체류	163 단기체류	164 단기체류	165 단기체류	166 단기체류	167 단기체류	168 단기체류	169 단기체류	170 단기체류	171 단기체류	172 단기체류	173 단기체류	174 단기체류	175 단기체류	176 단기체류	177 단기체류	178 단기체류	179 단기체류	180 단기체류	181 단기체류	182 단기체류	183 단기체류	184 단기체류	185 단기체류	186 단기체류	187 단기체류	188 단기체류	189 단기체류	190 단기체류	191 단기체류	192 단기체류	193 단기체류	194 단기체류	195 단기체류	196 단기체류	197 단기체류	198 단기체류	199 단기체류	200 단기체류	201 단기체류	202 단기체류	203 단기체류	204 단기체류	205 단기체류	206 단기체류	207 단기체류	208 단기체류	209 단기체류	210 단기체류	211 단기체류	212 단기체류	213 단기체류	214 단기체류	215 단기체류	216 단기체류	217 단기체류	218 단기체류	219 단기체류	220 단기체류	221 단기체류	222 단기체류	223 단기체류	224 단기체류	225 단기체류	226 단기체류	227 단기체류	228 단기체류	229 단기체류	230 단기체류	231 단기체류	232 단기체류	233 단기체류	234 단기체류	235 단기체류	236 단기체류	237 단기체류	238 단기체류	239 단기체류	240 단기체류	241 단기체류	242 단기체류	243 단기체류	244 단기체류	245 단기체류	246 단기체류	247 단기체류	248 단기체류	249 단기체류	250 단기체류	251 단기체류	252 단기체류	253 단기체류	254 단기체류	255 단기체류	256 단기체류	257 단기체류	258 단기체류	259 단기체류	260 단기체류	261 단기체류	262 단기체류	263 단기체류	264 단기체류	265 단기체류	266 단기체류	267 단기체류	268 단기체류	269 단기체류	270 단기체류	271 단기체류	272 단기체류	273 단기체류	274 단기체류	275 단기체류	276 단기체류	277 단기체류	278 단기체류	279 단기체류	280 단기체류	281 단기체류	282 단기체류	283 단기체류	284 단기체류	285 단기체류	286 단기체류	287 단기체류	288 단기체류	289 단기체류	290 단기체류	291 단기체류	292 단기체류	293 단기체류	294 단기체류	295 단기체류	296 단기체류	297 단기체류	298 단기체류	299 단기체류	300 단기체류	301 단기체류	302 단기체류	303 단기체류	304 단기체류	305 단기체류	306 단기체류	307 단기체류	308 단기체류	309 단기체류	310 단기체류	311 단기체류	312 단기체류	313 단기체류	314 단기체류	315 단기체류	316 단기체류	317 단기체류	318 단기체류	319 단기체류	320 단기체류	321 단기체류	322 단기체류	323 단기체류	324 단기체류	325 단기체류	326 단기체류	327 단기체류	328 단기체류	329 단기체류	330 단기체류	331 단기체류	332 단기체류	333 단기체류	334 단기체류	335 단기체류	336 단기체류	337 단기체류	338 단기체류	339 단기체류	340 단기체류	341 단기체류	342 단기체류	343 단기체류	344 단기체류	345 단기체류	346 단기체류	347 단기체류	348 단기체류	349 단기체류	350 단기체류	351 단기체류	352 단기체류	353 단기체류	354 단기체류	355 단기체류	356 단기체류	357 단기체류	358 단기체류	359 단기체류	360 단기체류	361 단기체류	362 단기체류	363 단기체류	364 단기체류	365 단기체류	366 단기체류	367 단기체류	368 단기체류	369 단기체류	370 단기체류	371 단기체류	372 단기체류	373 단기체류	374 단기체류	375 단기체류	376 단기체류	377 단기체류	378 단기체류	379 단기체류	380 단기체류	381 단기체류	382 단기체류	383 단기체류	384 단기체류	385 단기체류	386 단기체류	387 단기체류	388 단기체류	389 단기체류	390 단기체류	391 단기체류	392 단기체류	393 단기체류	394 단기체류	395 단기체류	396 단기체류	397 단기체류	398 단기체류	399 단기체류	400 단기체류	401 단기체류	402 단기체류	403 단기체류	404 단기체류	405 단기체류	406 단기체류	407 단기체류	408 단기체류	409 단기체류	410 단기체류	411 단기체류	412 단기체류	413 단기체류	414 단기체류	415 단기체류	416 단기체류	417 단기체류	418 단기체류	419 단기체류	420 단기체류	421 단기체류	422 단기체류	423 단기체류	424 단기체류	425 단기체류	426 단기체류	427 단기체류	428 단기체류	429 단기체류	430 단기체류	431 단기체류	432 단기체류	433 단기체류	434 단기체류	435 단기체류	436 단기체류	437 단기체류	438 단기체류	439 단기체류	440 단기체류	441 단기체류	442 단기체류	443 단기체류	444 단기체류	445 단기체류	446 단기체류	447 단기체류	448 단기체류	449 단기체류	450 단기체류	451 단기체류	452 단기체류	453 단기체류	454 단기체류	455 단기체류	456 단기체류	457 단기체류	458 단기체류	459 단기체류	460 단기체류	461 단기체류	462 단기체류	463 단기체류	464 단기체류	465 단기체류	466 단기체류	467 단기체류	468 단기체류	469 단기체류	470 단기체류	471 단기체류	472 단기체류	473 단기체류	474 단기체류	475 단기체류	476 단기체류	477 단기체류	478 단기체류	479 단기체류	480 단기체류	481 단기체류	482 단기체류	483 단기체류	484 단기체류	485 단기체류	486 단기체류	487 단기체류	488 단기체류	489 단기체류	490 단기체류	491 단기체류	492 단기체류	493 단기체류	494 단기체류	495 단기체류	496 단기체류	497 단기체류	498 단기체류	499 단기체류	500 단기체류	501 단기체류	502 단기체류	503 단기체류	504 단기체류	505 단기체류	506 단기체류	507 단기체류	508 단기체류	509 단기체류	510 단기체류	511 단기체류	512 단기체류	513 단기체류	514 단기체류	515 단기체류	516 단기체류	517 단기체류	518 단기체류	519 단기체류	520 단기체류	521 단기체류	522 단기체류	523 단기체류	524 단기체류	525 단기체류	526 단기체류	527 단기체류	528 단기체류	529 단기체류	530 단기체류	531 단기체류	532 단기체류	533 단기체류	534 단기체류	535 단기체류	536 단기체류	537 단기체류	538 단기체류	539 단기체류	540 단기체류	541 단기체류	542 단기체류	543 단기체류	544 단기체류	545 단기체류	546 단기체류	547 단기체류	548 단기체류	549 단기체류	550 단기체류	551 단기체류	552 단기체류	553 단기체류	554 단기체류	555 단기체류	556 단기체류	557 단기체류	558 단기체류	559 단기체류	560 단기체류	561 단기체류	562 단기체류	563 단기체류	564 단기체류	565 단기체류	566 단기체류	567 단기체류	568 단기체류	569 단기체류	570 단기체류	571 단기체류	572 단기체류	573 단기체류	574 단기체류	575 단기체류	576 단기체류	577 단기체류	578 단기체류	579 단기체류	580 단기체류	581 단기체류	582 단기체류	583 단기체류	584 단기체류	585 단기체류	586 단기체류	587 단기체류	588 단기체류	589 단기체류	590 단기체류	591 단기체류	592 단기체류	593 단기체류	594 단기체류	595 단기체류	596 단기체류	597 단기체류	598 단기체류	599 단기체류	600 단기체류	601 단기체류	602 단기체류	603 단기체류	604 단기체류	605 단기체류	606 단기체류	607 단기체류	608 단기체류	609 단기체류	610 단기체류	611 단기체류	612 단기체류	613 단기체류	614 단기체류	615 단기체류	616 단기체류	617 단기체류	618 단기체류	619 단기체류	620 단기체류	621 단기체류	622 단기체류	623 단기체류	624 단기체류	625 단기체류	626 단기체류	627 단기체류	628 단기체류	629 단기체류	630 단기체류	631 단기체류	632 단기체류	633 단기체류	634 단기체류	635 단기체류	636 단기체류	637 단기체류	638 단기체류	639 단기체류	640 단기체류	641 단기체류	642 단기체류	643 단기체류	644 단기체류	645 단기체류	646 단기체류	647 단기체류	648 단기체류	649 단기체류	650 단기체류	651 단기체류	652 단기체류	653 단기체류	654 단기체류	655 단기체류	656 단기체류	657 단기체류	658 단기체류	659 단기체류	660 단기체류	661 단기체류	662 단기체류	663 단기체류	664 단기체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형법범인지정보표
[차량등 질도]

①	비 보고종별	1	2	3	4
②	차량구분	차량구분			
23		14			
현 시군구별 시군구별 코드 (: : :) (: : :) (: : :) (: : :)					
③	발행종기	구경은 번·번지 호			
15-234		0900 질도(239호)			
④	과외	0501 상습특수질도(도법 3호)			
215-218					
⑤	기수·미수구분	(1) 기수 (2) 미수			
219					
⑥	수법	0860 자동차 질도(영의 있음)	0861 자동차 질도(영의 없음)	0862 오토바이 질도(영의 있음)	0863 오토바이 질도(영의 없음)
230-232					
⑦	도난방거장치의 유무	(3) 없음 (4) 자동차 질도, 오토바이 질도 이외 있음 (1) 이모탈라이저(イモバイザ) (2) 기타			
234		명칭 (예: : 1년 (:)월 (:)일 (:)시 ~ 명칭 (예: : 2년 (:)월 (:)일 (:)시) 시작은 24시제(00시~23시)로 기입한다. 시간이 불명인 경우에는 00시)로 기입한다. 종료는 24시제(00시~23시)로 기입한다. 시간이 불명인 경우에는 23시)로 기입한다.			
⑧	발생연월일지	사각은 24시제(00시~23시)로 기입한다.			
235-242		발생년월일이 특정한 때에는 과속의 년에 '년월일'시를 기입하고, 우측의 '년월일'은 '발'으로 기입한다.			
⑨	인지년월일지	사각은 24시제(00시~23시)로 기입한다.			
243-251		명칭 (예: : 1년 (:)월 (:)일 (:)시 (01) 고소 (02) 고발 (03) 110번 신고 (04) 고발 (05) 110번 신고 (06) 110번 신고 (07) 110번 신고 (08) 기타 (09) 일반인 제보·공발 (10) 119번 진술 (11) 타기관으로부터 인계 (12) 회당 (13) 범의발견 (14) 과속촬영 (15) 영문 (16) 취조 (17) 기타 (18) 기수 (01) 단속구역 (02) 출고중(4층이상) 구역 (03) 기타 구역 (04) 주차장 (05) 학교(유치원) (06) 백화점 (07) 편의점 (08) 약국 (09) 할인점 (10) 기타 슈퍼마켓 (11) 도로상 (이전 코드표 1)에 의함			
⑩	인지의 단서	(01) 고소 (02) 고발 (03) 110번 신고 (04) 고발 (05) 110번 신고 (06) 110번 신고 (07) 110번 신고 (08) 기타 (09) 일반인 제보·공발 (10) 119번 진술 (11) 타기관으로부터 인계 (12) 회당 (13) 범의발견 (14) 과속촬영 (15) 영문 (16) 취조 (17) 기타 (18) 기수			
252-253					
⑪	발생장소	(01) 단속구역 (02) 출고중(4층이상) 구역 (03) 기타 구역 (04) 주차장 (05) 학교(유치원) (06) 백화점 (07) 편의점 (08) 약국 (09) 할인점 (10) 기타 슈퍼마켓 (11) 도로상 (이전 코드표 1)에 의함			
254-255					
⑫	주요 피해자의 성명 (법인 단체명)	외 (: :)명			
261-263					
⑬	피해자의 성명	(1) 남 (2) 여 (3) 법인·단체 (00) 피해자 없음			
364					
⑭	피해자의 연령	(00) 법인·단체, 피해자 없음			
365-366					

1. 계 코드표

01 경찰서(서소계)		지역계		실도경찰대	
02 주청소순구활동		03 경찰업무순회활동		04 기타 지역경찰활동	
05 경찰업무순회활동		06 경찰업무순회활동		07 기타 활동	
08 초·경의대특계		09 도·별·계		10 소년계	
11 지방계		12 경비·공안계		13 소년계	
14 지방계		15 경비·공안계		16 소년계	
17 기타계		18 기타계		19 기타계	
20 경비·공안계		21 교통부원계		22 기타계	

2. 국적등 코드표

아시아	04 중화인민공화국	05 캄보디아	06 몽골	07 베트남	08 태국	09 인도네시아	10 필리핀	11 미얀마	12 라오스	13 캄보디아	14 타이완	15 홍콩	16 마카오	17 대만	18 일본	19 한국	20 미국	21 캐나다	22 브라질	23 칠레	24 콜롬비아	25 페루	26 아르헨티나	27 볼리비아	28 파라과이	29 우루과이	30 에콰도르	31 쿠바	32 멕시코	33 중앙아메리카	34 카리브해	35 기타																																																																																																																																																																																																																																																																																																																																																																																																																																																																																																																																																																																																																																																																																																																																																																																																																																																																																																																																																																					
유럽	36 독일	37 프랑스	38 영국	39 이탈리아	40 스페인	41 그리스	42 포르투갈	43 폴란드	44 헝가리	45 체코	46 슬로바키아	47 헝가리	48 터키	49 그리스	50 루마니아	51 불가리아	52 세르비아	53 몬테네그로	54 크로아티아	55 슬로베니아	56 리투아니아	57 라트비아	58 에스토니아	59 핀란드	60 덴마크	61 스웨덴	62 노르웨이	63 아이슬란드	64 아일랜드	65 벨기에	66 룩셈부르크	67 네덜란드	68 룩셈부르크	69 스위스	70 오스트리아	71 독일	72 프랑스	73 영국	74 이탈리아	75 스페인	76 그리스	77 포르투갈	78 폴란드	79 헝가리	80 체코	81 슬로바키아	82 터키	83 루마니아	84 불가리아	85 세르비아	86 몬테네그로	87 크로아티아	88 슬로베니아	89 리투아니아	90 라트비아	91 에스토니아	92 핀란드	93 스웨덴	94 노르웨이	95 아이슬란드	96 아일랜드	97 벨기에	98 룩셈부르크	99 스위스	100 오스트리아	101 독일	102 프랑스	103 영국	104 이탈리아	105 스페인	106 그리스	107 포르투갈	108 폴란드	109 헝가리	110 체코	111 슬로바키아	112 터키	113 루마니아	114 불가리아	115 세르비아	116 몬테네그로	117 크로아티아	118 슬로베니아	119 리투아니아	120 라트비아	121 에스토니아	122 핀란드	123 스웨덴	124 노르웨이	125 아이슬란드	126 아일랜드	127 벨기에	128 룩셈부르크	129 스위스	130 오스트리아	131 독일	132 프랑스	133 영국	134 이탈리아	135 스페인	136 그리스	137 포르투갈	138 폴란드	139 헝가리	140 체코	141 슬로바키아	142 터키	143 루마니아	144 불가리아	145 세르비아	146 몬테네그로	147 크로아티아	148 슬로베니아	149 리투아니아	150 라트비아	151 에스토니아	152 핀란드	153 스웨덴	154 노르웨이	155 아이슬란드	156 아일랜드	157 벨기에	158 룩셈부르크	159 스위스	160 오스트리아	161 독일	162 프랑스	163 영국	164 이탈리아	165 스페인	166 그리스	167 포르투갈	168 폴란드	169 헝가리	170 체코	171 슬로바키아	172 터키	173 루마니아	174 불가리아	175 세르비아	176 몬테네그로	177 크로아티아	178 슬로베니아	179 리투아니아	180 라트비아	181 에스토니아	182 핀란드	183 스웨덴	184 노르웨이	185 아이슬란드	186 아일랜드	187 벨기에	188 룩셈부르크	189 스위스	190 오스트리아	191 독일	192 프랑스	193 영국	194 이탈리아	195 스페인	196 그리스	197 포르투갈	198 폴란드	199 헝가리	200 체코	201 슬로바키아	202 터키	203 루마니아	204 불가리아	205 세르비아	206 몬테네그로	207 크로아티아	208 슬로베니아	209 리투아니아	210 라트비아	211 에스토니아	212 핀란드	213 스웨덴	214 노르웨이	215 아이슬란드	216 아일랜드	217 벨기에	218 룩셈부르크	219 스위스	220 오스트리아	221 독일	222 프랑스	223 영국	224 이탈리아	225 스페인	226 그리스	227 포르투갈	228 폴란드	229 헝가리	230 체코	231 슬로바키아	232 터키	233 루마니아	234 불가리아	235 세르비아	236 몬테네그로	237 크로아티아	238 슬로베니아	239 리투아니아	240 라트비아	241 에스토니아	242 핀란드	243 스웨덴	244 노르웨이	245 아이슬란드	246 아일랜드	247 벨기에	248 룩셈부르크	249 스위스	250 오스트리아	251 독일	252 프랑스	253 영국	254 이탈리아	255 스페인	256 그리스	257 포르투갈	258 폴란드	259 헝가리	260 체코	261 슬로바키아	262 터키	263 루마니아	264 불가리아	265 세르비아	266 몬테네그로	267 크로아티아	268 슬로베니아	269 리투아니아	270 라트비아	271 에스토니아	272 핀란드	273 스웨덴	274 노르웨이	275 아이슬란드	276 아일랜드	277 벨기에	278 룩셈부르크	279 스위스	280 오스트리아	281 독일	282 프랑스	283 영국	284 이탈리아	285 스페인	286 그리스	287 포르투갈	288 폴란드	289 헝가리	290 체코	291 슬로바키아	292 터키	293 루마니아	294 불가리아	295 세르비아	296 몬테네그로	297 크로아티아	298 슬로베니아	299 리투아니아	300 라트비아	301 에스토니아	302 핀란드	303 스웨덴	304 노르웨이	305 아이슬란드	306 아일랜드	307 벨기에	308 룩셈부르크	309 스위스	310 오스트리아	311 독일	312 프랑스	313 영국	314 이탈리아	315 스페인	316 그리스	317 포르투갈	318 폴란드	319 헝가리	320 체코	321 슬로바키아	322 터키	323 루마니아	324 불가리아	325 세르비아	326 몬테네그로	327 크로아티아	328 슬로베니아	329 리투아니아	330 라트비아	331 에스토니아	332 핀란드	333 스웨덴	334 노르웨이	335 아이슬란드	336 아일랜드	337 벨기에	338 룩셈부르크	339 스위스	340 오스트리아	341 독일	342 프랑스	343 영국	344 이탈리아	345 스페인	346 그리스	347 포르투갈	348 폴란드	349 헝가리	350 체코	351 슬로바키아	352 터키	353 루마니아	354 불가리아	355 세르비아	356 몬테네그로	357 크로아티아	358 슬로베니아	359 리투아니아	360 라트비아	361 에스토니아	362 핀란드	363 스웨덴	364 노르웨이	365 아이슬란드	366 아일랜드	367 벨기에	368 룩셈부르크	369 스위스	370 오스트리아	371 독일	372 프랑스	373 영국	374 이탈리아	375 스페인	376 그리스	377 포르투갈	378 폴란드	379 헝가리	380 체코	381 슬로바키아	382 터키	383 루마니아	384 불가리아	385 세르비아	386 몬테네그로	387 크로아티아	388 슬로베니아	389 리투아니아	390 라트비아	391 에스토니아	392 핀란드	393 스웨덴	394 노르웨이	395 아이슬란드	396 아일랜드	397 벨기에	398 룩셈부르크	399 스위스	400 오스트리아	401 독일	402 프랑스	403 영국	404 이탈리아	405 스페인	406 그리스	407 포르투갈	408 폴란드	409 헝가리	410 체코	411 슬로바키아	412 터키	413 루마니아	414 불가리아	415 세르비아	416 몬테네그로	417 크로아티아	418 슬로베니아	419 리투아니아	420 라트비아	421 에스토니아	422 핀란드	423 스웨덴	424 노르웨이	425 아이슬란드	426 아일랜드	427 벨기에	428 룩셈부르크	429 스위스	430 오스트리아	431 독일	432 프랑스	433 영국	434 이탈리아	435 스페인	436 그리스	437 포르투갈	438 폴란드	439 헝가리	440 체코	441 슬로바키아	442 터키	443 루마니아	444 불가리아	445 세르비아	446 몬테네그로	447 크로아티아	448 슬로베니아	449 리투아니아	450 라트비아	451 에스토니아	452 핀란드	453 스웨덴	454 노르웨이	455 아이슬란드	456 아일랜드	457 벨기에	458 룩셈부르크	459 스위스	460 오스트리아	461 독일	462 프랑스	463 영국	464 이탈리아	465 스페인	466 그리스	467 포르투갈	468 폴란드	469 헝가리	470 체코	471 슬로바키아	472 터키	473 루마니아	474 불가리아	475 세르비아	476 몬테네그로	477 크로아티아	478 슬로베니아	479 리투아니아	480 라트비아	481 에스토니아	482 핀란드	483 스웨덴	484 노르웨이	485 아이슬란드	486 아일랜드	487 벨기에	488 룩셈부르크	489 스위스	490 오스트리아	491 독일	492 프랑스	493 영국	494 이탈리아	495 스페인	496 그리스	497 포르투갈	498 폴란드	499 헝가리	500 체코	501 슬로바키아	502 터키	503 루마니아	504 불가리아	505 세르비아	506 몬테네그로	507 크로아티아	508 슬로베니아	509 리투아니아	510 라트비아	511 에스토니아	512 핀란드	513 스웨덴	514 노르웨이	515 아이슬란드	516 아일랜드	517 벨기에	518 룩셈부르크	519 스위스	520 오스트리아	521 독일	522 프랑스	523 영국	524 이탈리아	525 스페인	526 그리스	527 포르투갈	528 폴란드	529 헝가리	530 체코	531 슬로바키아	532 터키	533 루마니아	534 불가리아	535 세르비아	536 몬테네그로	537 크로아티아	538 슬로베니아	539 리투아니아	540 라트비아	541 에스토니아	542 핀란드	543 스웨덴	544 노르웨이	545 아이슬란드	546 아일랜드	547 벨기에	548 룩셈부르크	549 스위스	550 오스트리아	551 독일	552 프랑스	553 영국	554 이탈리아	555 스페인	556 그리스	557 포르투갈	558 폴란드	559 헝가리	560 체코	561 슬로바키아	562 터키	563 루마니아	564 불가리아	565 세르비아	566 몬테네그로	567 크로아티아	568 슬로베니아	569 리투아니아	570 라트비아	571 에스토니아	572 핀란드	573 스웨덴	574 노르웨이	575 아이슬란드	576 아일랜드	577 벨기에	578 룩셈부르크	579 스위스	580 오스트리아	581 독일	582 프랑스	583 영국	584 이탈리아	585 스페인	586 그리스	587 포르투갈	588 폴란드	589 헝가리	590 체코	591 슬로바키아	592 터키	593 루마니아	594 불가리아	595 세르비아	596 몬테네그로	597 크로아티아	598 슬로베니아	599 리투아니아	600 라트비아	601 에스토니아	602 핀란드	603 스웨덴	604 노르웨이	605 아이슬란드	606 아일랜드	607 벨기에	608 룩셈부르크	609 스위스	610 오스트리아	611 독일	612 프랑스	613 영국	614 이탈리아	615 스페인	616 그리스	617 포르투갈	618 폴란드	619 헝가리	620 체코	621 슬로바키아	622 터키	623 루마니아	624 불가리아	625 세르비아	626 몬테네그로	627 크로아티아	628 슬로베니아	629 리투아니아	630 라트비아	631 에스토니아	632 핀란드	633 스웨덴	634 노르웨이	635 아이슬란드	636 아일랜드	637 벨기에	638 룩셈부르크	639 스위스	640 오스트리아	641 독일	642 프랑스	643 영국	644 이탈리아	645 스페인	646 그리스	647 포르투갈	648 폴란드	649 헝가리	650 체코	651 슬로바키아	652 터키	653 루마니아	654 불가리아	655 세르비아	656 몬테네그로	657 크로아티아	658 슬로베니아	659 리투아니아	660 라트비아	661 에스토니아	662 핀란드	663 스웨덴	664 노르웨이	665 아이슬란드	666 아일랜드	667 벨기에	668 룩셈부르크	669 스위스	670 오스트리아	671 독일	672 프랑스	673 영국	674 이탈리아	675 스페인	676 그리스	677 포르투갈	678 폴란드	679 헝가리	680 체코	681 슬로바키아	682 터키	683 루마니아	684 불가리아	685 세르비아	686 몬테네그로	687 크로아티아	688 슬로베니아	689 리투아니아	690 라트비아	691 에스토니아	692 핀란드	693 스웨덴	694 노르웨이	695 아이슬란드	696 아일랜드	697 벨기에	698 룩셈부르크	699 스위스	700 오스트리아	701 독일	702 프랑스	703 영국	704 이탈리아	705 스페인	706 그리스	707 포르투갈	708 폴란드	709 헝가리	710 체코	711 슬로바키아	712 터키	713 루마니아	714 불가리아	715 세르비아	716 몬테네그로	717 크로아티아	718 슬로베니아	719 리투아니아	720 라트비아	721 에스토니아	722 핀란드	723 스웨덴	724 노르웨이	725 아이슬란드	726 아일랜드	727 벨기에	728 룩셈부르크	729 스위스	730 오스트리아	731 독일	732 프랑스	733 영국	734 이탈리아	735 스페인	736 그리스	737 포르투갈	738 폴란드	739 헝가리	740 체코	741 슬로바키아	742 터키	743 루마니아	744 불가리아	745 세르비아	746 몬테네그로	747 크로아티아	748 슬로베니아	749 리투아니아	750 라트비아	751 에스토니아	752 핀란드	753 스웨덴	754 노르웨이	755 아이슬란드	756 아일랜드	757 벨기에	758 룩셈부르크	759 스위스	760 오스트리아	761 독일	762 프랑스	763 영국	764 이탈리아	765 스페인	766 그리스	767 포르투갈	768 폴란드	769 헝가리	770 체코	771 슬로바키아	772 터키	773 루마니아	774 불가리아	775 세르비아	776 몬테네그로	777 크로아티아	778 슬로베니아	779 리투아니아	780 라트비아	781 에스토니아	782 핀란드	783 스웨덴	784 노르웨이	785 아이슬란드	786 아일랜드	787 벨기에	788 룩셈부르크	789 스위스	790 오스트리아	791 독일	792 프랑스	793 영국	794 이탈리아	795 스페인	796 그리스	797 포르투갈	798 폴란드	799 헝가리	800 체코	801 슬로바키아	802 터키	803 루마니아	804 불가리아	805 세르비아	806 몬테네그로	807 크로아티아	808 슬로베니아	809 리투아니아	810 라트비아	811 에스토니아	812 핀란드	813 스웨덴	814 노르웨이	815 아이슬란드	816 아일랜드	817 벨기에	818 룩셈부르크	819 스위스	820 오스트리아	821 독일	822 프랑스	823 영국	824 이탈리아	825 스페인	826 그리스	827 포르투갈	828 폴란드	829 헝가리	830 체코	831 슬로바키아	832 터키	833 루마니아	834 불가리아	835 세르비아	836 몬테네그로	837 크로아티아	838 슬로베니아	839 리투아니아	840 라트비아	841 에스토니아	842 핀란드	843 스웨덴	844 노르웨이	845 아이슬란드	846 아일랜드	847 벨기에	848 룩셈부르크	849 스위스	850 오스트리아	851 독일	852 프랑스	853 영국	854 이탈리아	855 스페인	856 그리스	857 포르투갈	858 폴란드	859 헝가리	860 체코	861 슬로바키아	862 터키	863 루마니아	864 불가리아	865 세르비아	866 몬테네그로	867 크로아티아	868 슬로베니아	869 리투아니아	870 라트비아	871 에스토니아	872 핀란드	873 스웨덴	874 노르웨이	875 아이슬란드	876 아일랜드	877 벨기에	878 룩셈부르크	879 스위스	880 오스트리아	881 독일	882 프랑스	883 영국	884 이탈리아	885 스페인	886 그리스	887 포르투갈	888 폴란드	889 헝가리	890 체코	891 슬로바키아	892 터키	893 루마니아	894 불가리아	895 세르비아	896 몬테네그로	897 크로아티아	898 슬로베니아	899 리투아니아	900 라트비아	901 에스토니아	902 핀란드	903 스웨덴	904 노르웨이	905 아이슬란드	906 아일랜드	907 벨기에	908 룩셈부르크	909 스위스	910 오스트리아	911 독일	912 프랑스	913 영국	914 이탈리아	915 스페인	916 그리스	917 포르투갈	918 폴란드	919 헝가리	920 체코	921 슬로바키아	922 터키	923 루마니아	924 불가리아	925 세르비아	926 몬테네그로	927 크로아티아	928 슬로베니아	929 리투아니아	930 라트비아	931 에스토니아	932 핀란드	933 스웨덴	934 노르웨이	935 아이슬란드	936 아일랜드	937 벨기에	938 룩셈부르크	939 스위스	940 오스트리아	941 독일	942 프랑스	943 영국	944 이탈리아	945 스페인	946 그리스	947 포르투갈	948 폴란드	949 헝가리	950 체코	951 슬로바키아	952 터키	953 루마니아	954 불가리아	955 세르비아	956 몬테네그로	957 크로아티아	958 슬로베니아	959 리투아니아	960 라트비아	961 에스토니아	962 핀란드	963 스웨덴	964 노르웨이	965 아이슬란드	966 아일랜드	967 벨기에	968 룩셈부르크	969 스위스	970 오스트리아	971 독일	972 프랑스	973 영국	974 이탈리아	975 스페인	976 그리스	977 포르투갈	978 폴란드	979 헝가리	980 체코	981 슬로바키아	982 터키	983 루마니아	984 불가리아	985 세르비아	986 몬테네그로	987 크로아티아	988 슬로베니아	989 리투아니아	990 라트비아	991 에스토니아	992 핀란드	993 스웨덴	994 노르웨이	995 아이슬란드	996 아일랜드	997 벨기에	998 룩셈부르크	999 스위스	1000 오스트리아

3.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 코드표

주요외국인	01 영구거주권	02 영구거주권	03 영구거주권</
-------	----------	----------	------------

4. 범죄공용물 코드표

총포	01 권총	02 소총	03 신민총	04 공기총	05 기타 총포
도검류·칼날류 모조	10 일본도	11 단도	12 권 나이프	13 기타 도검류	14 나이프류
	20 모조총	21 모의총기	22 모조도검류		15 부업칼류
공구류	30 드라이버	31 시로	32 렌치·스패너	33 톱	34 우리조각
죽극물(액)	40 청산가리	41 농약제	42 미약제	43 쇠파괴	44 기타 죽극물
화약·폭약류	50 화약	폭약		53 수류탄·실포·도폭선들의 화공품	
	51 다이나이트	52 기타			
위험물	60 고압가스·도시가스	61 소병상외 위험물	62 방사성물질		
	70 스프레이호신 용 고압가스 등	71 (중세외)계합 식물	72 기타의 활	73 에어-소프(에어 소프트 건)	74 모프·군류
기타	78 불기·공분통	79 기타			75 스프레이
					76 점안대이크 (익스 등제)
					77 장난감총(에어소프트총 제외)

5. 폭력단체 범죄의 범죄태양 코드표

범죄태양	00 대량학살	01 고문	02 기도포 간첩죄 위반	04 철위도박	05 어구도박	06 기타 도박	07 청소년 등을 괴롭히는 것	08 인부공급	09 보행금	10 기업대상폭력	11 기타
민사책임	20 재경허위증에 가입하는 것	21 금전대차에 가입하는 것	22 수표발인 기타 수표에 가입하는 것	23 기업도산·취무정리에 가입하는 것	24 가족임대차등 부동산에 가입하는 것	25 경찰대이크 (익스 등제)	26 판매대금 기타 일상생활에 가입하는 것	27 기타 민사문제에 가입하는 것	28 판판대금 기타 일상생활에 가입하는 것	29 민사문제에 가입하는 것	30 민사문제에 가입하는 것

합법범피의사정정보표 (성인)

구 분	종 류	보고종별		
		1	2	3
9	☑ 재도구분	합법범피의사		
		38		
10	경도	100 이하 경도(205코)	105 이하 중등복수경도(도형 2코)	105로 상승수범경도(도형 3코)
	경도 이외	☑ (: :) 과 합법 (특별법) 제 조제 항		
	(: :)	수범	1	(100) 심면, 경고, 감금, 불도, 시거, 상법외 이외
9-11	수 범	계합 1	1	이법 코드 표 10)에 의함
10	피의자 특검의 단서를 받은 계	계합 1	1	
11	피의자를 체포한 계	계합 1	1	(100) 신범물구속
13	14	계합 1	1	이법 코드 표 10)에 의함
15	16	계합 1	1	
17	신범물구속	(1) 연법제호	(2) 긴급제호	(3) 통상제호
				(4) 다른 시점에 의한 신범물구속(수범자 등의 경우)
18	승계자의 구분	(1) 신범물구속(기본사유)	(2) 신범물구속(간이사유)	(3) 서유승계 - 부(간이사유)
				(4) 서유승계 - 부(간이사유)
				(5) 신범물구속
19	범행부연수	(1) 0) 원	2 원	3 원 이상
		(2) 1구역	(3) 2구역	(4) 1구역 (5) 2구역 (6) 3구역 이상
20	피의자의 성명			
21	피의자의 생년월일			
22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23	범행시의 연령			
24	성명	(1) 남	(2) 여	
25	범행시의 거주지			
26	국적 등	주거지 ()	(1) 일본	(2) 한국
27	재류자격(외국인)			
28	범행시의 직업	직업 ()	(1) 일본인	이법 코드 표 10)에 의함
29	각급의 특수형태			
30	간역의 공무원(도교원 제외)	(1) 전역요원	(2) 전역요원	

㉔ 권력도교법 제() 244-247 ㉕ 권력처분 248-249 ㉖ 권력강제에의 유구 250 ㉗ 단체연장 251-252 ㉘ 조직근위 253 ㉙ 지위 254 ㉚ 크고·중리족 255-258	총수 () 법 그 중 본표기제법칙의 동법법칙 () 법 (:) 권력처분 () () (1) 권력강제자 (2) 권력강제의 주체가 있는 자 (3) 권력어망자 (4) 권력어망자 (5) 권력어망자 (6) 권력어망자 (7) 권력어망자와 () (8) 권력어망자 (9) 권력어망자 (10) 권력어망자 (:) 속 단체법 (1) 1차 조직 (2) 2차 조직 (3) 3차 조직 (4) 4차 조직 이하 (5) 제법법칙 (6) 제법법칙 (1) 수명 (2) 간부 (3) 조원 (4) 권구성원(비인원) (5) 제법법칙 (:) 속 크고·중리족(남·남원·남)·중리족 () (1) 제법법칙
㉛ 지역자정보호규정 법령집 352-383 ㉜ 지역자정보호규정 법령집 384-379 ㉝ 이 료의 변호 371-379 ㉞ 각종자적법령호 388-437 ㉟ 관세집계정보 이원호 438-452 예탁인 453-482 예탁인(부현용) 483-542	법성 (1) ()년 ()월 ()일 격상 자동부여(남은 일본역) 자동부여(남은 일본역) 세 계 직법면회 () 권력 () () 권 () 서 ㉟ 제법법칙의 상해 () (1) (2) (3) (4) (5) (6) (7) (8) (9) (10) 제법법칙의 상해 () (1) (2) (3) (4) (5) (6) (7) (8) (9) (10) 제법법칙의 상해 () (1) (2) (3) (4) (5) (6) (7) (8) (9) (10) 제법법칙의 상해 () (1) (2) (3) (4) (5) (6) (7) (8) (9) (10)

1. 수범 코드표

침입	000. 총기소지불법	010. 무기		
장도	침입장도	011. 총포기밀장도	013. 기타	014. 기타
	비침입장도	015. 도둑(단 도둑예외장도)	016. 도둑사건도	015. 기타
종류	000. 총기밀법	001. 총기밀법(비밀) (금품을 벗김)	002. 기타	
침입장도	030. 침입장도	031. 총기밀법(비밀) (금품을 벗김)	032. 기타	
	030. 침입장도	032. 침입장도	033. 침입장도	034. 침입장도
장도	040. 침입장도	041. 침입장도	042. 침입장도	043. 침입장도
	040. 침입장도	041. 침입장도	042. 침입장도	043. 침입장도
시기도	050. 침입장도	051. 침입장도	052. 침입장도	053. 침입장도
	050. 침입장도	051. 침입장도	052. 침입장도	053. 침입장도
기타	060. 침입장도	061. 침입장도	062. 침입장도	063. 침입장도
	060. 침입장도	061. 침입장도	062. 침입장도	063. 침입장도
성형과 기타	070. 침입장도	071. 침입장도	072. 침입장도	073. 침입장도
	070. 침입장도	071. 침입장도	072. 침입장도	073. 침입장도
사기	080. 침입장도	081. 침입장도	082. 침입장도	083. 침입장도
	080. 침입장도	081. 침입장도	082. 침입장도	083. 침입장도
간음	090. 침입장도	091. 침입장도	092. 침입장도	093. 침입장도
	090. 침입장도	091. 침입장도	092. 침입장도	093. 침입장도
기타	100. 침입장도	101. 침입장도	102. 침입장도	103. 침입장도
	100. 침입장도	101. 침입장도	102. 침입장도	103. 침입장도

2. 계 코드표

01. 경찰서(서)계	02. 주부소연구활동	03. 경찰부연구활동	04. 기타 지역경찰활동	05. 지역경찰활동 이상	06. 경찰활동	07. 기타 활동
08. 경찰서(서)계	09. 경찰부계	10. 도법계	11. 기능법계	12. 인사계	13. 인사계	14. 기타계
15. 인사계	16. 인사계	17. 인사계	18. 인사계	19. 인사계	20. 인사계	21. 인사계
22. 인사계	23. 인사계	24. 인사계	25. 인사계	26. 인사계	27. 인사계	28. 인사계

3. 국적 코드표

01. 국적	02. 국적	03. 국적	04. 국적	05. 국적	06. 국적	07. 국적	08. 국적	09. 국적	10. 국적	11. 국적	12. 국적	13. 국적	14. 국적
15. 국적	16. 국적	17. 국적	18. 국적	19. 국적	20. 국적	21. 국적	22. 국적	23. 국적	24. 국적	25. 국적	26. 국적	27. 국적	28. 국적
29. 국적	30. 국적	31. 국적	32. 국적	33. 국적	34. 국적	35. 국적	36. 국적	37. 국적	38. 국적	39. 국적	40. 국적	41. 국적	42. 국적
43. 국적	44. 국적	45. 국적	46. 국적	47. 국적	48. 국적	49. 국적	50. 국적	51. 국적	52. 국적	53. 국적	54. 국적	55. 국적	56. 국적
57. 국적	58. 국적	59. 국적	60. 국적	61. 국적	62. 국적	63. 국적	64. 국적	65. 국적	66. 국적	67. 국적	68. 국적	69. 국적	70. 국적
71. 국적	72. 국적	73. 국적	74. 국적	75. 국적	76. 국적	77. 국적	78. 국적	79. 국적	80. 국적	81. 국적	82. 국적	83. 국적	84. 국적
85. 국적	86. 국적	87. 국적	88. 국적	89. 국적	90. 국적	91. 국적	92. 국적	93. 국적	94. 국적	95. 국적	96. 국적	97. 국적	98. 국적
99. 국적	100. 국적	101. 국적	102. 국적	103. 국적	104. 국적	105. 국적	106. 국적	107. 국적	108. 국적	109. 국적	110. 국적	111. 국적	112. 국적

1. 국제 코드표

아시아	중국												
	04 싱타이	05 톈징	06 푸둥	07 베이징	08 요녕성	09 랴오닝	10 허베이	11 톈진	12 허베이	13 허난	14 허난	15 허난	16 윈난
유럽	17 영국	18 프랑스	19 독일	20 이탈리아	21 스페인	22 그리스	23 터키	24 폴란드	25 헝가리	26 스웨덴	27 핀란드	28 덴마크	29 노르웨이
	30 미국	31 캐나다	32 멕시코	33 브라질	34 칠레	35 아르헨티나	36 콜롬비아	37 페루	38 볼리비아	39 파라과이	40 우루과이	41 남아프리카	42 남아프리카
북아메리카	43 호주	44 뉴질랜드	45 뉴질랜드	46 뉴질랜드	47 뉴질랜드	48 뉴질랜드	49 뉴질랜드	50 뉴질랜드	51 뉴질랜드	52 뉴질랜드	53 뉴질랜드	54 뉴질랜드	55 뉴질랜드
	56 뉴질랜드	57 뉴질랜드	58 뉴질랜드	59 뉴질랜드	60 뉴질랜드	61 뉴질랜드	62 뉴질랜드	63 뉴질랜드	64 뉴질랜드	65 뉴질랜드	66 뉴질랜드	67 뉴질랜드	68 뉴질랜드
남아메리카	69 뉴질랜드	70 뉴질랜드	71 뉴질랜드	72 뉴질랜드	73 뉴질랜드	74 뉴질랜드	75 뉴질랜드	76 뉴질랜드	77 뉴질랜드	78 뉴질랜드	79 뉴질랜드	80 뉴질랜드	81 뉴질랜드
	82 뉴질랜드	83 뉴질랜드	84 뉴질랜드	85 뉴질랜드	86 뉴질랜드	87 뉴질랜드	88 뉴질랜드	89 뉴질랜드	90 뉴질랜드	91 뉴질랜드	92 뉴질랜드	93 뉴질랜드	94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95 뉴질랜드	96 뉴질랜드	97 뉴질랜드	98 뉴질랜드	99 뉴질랜드	00 뉴질랜드	01 뉴질랜드	02 뉴질랜드	03 뉴질랜드	04 뉴질랜드	05 뉴질랜드	06 뉴질랜드	07 뉴질랜드
	08 뉴질랜드	09 뉴질랜드	10 뉴질랜드	11 뉴질랜드	12 뉴질랜드	13 뉴질랜드	14 뉴질랜드	15 뉴질랜드	16 뉴질랜드	17 뉴질랜드	18 뉴질랜드	19 뉴질랜드	20 뉴질랜드
동남아시아	21 뉴질랜드	22 뉴질랜드	23 뉴질랜드	24 뉴질랜드	25 뉴질랜드	26 뉴질랜드	27 뉴질랜드	28 뉴질랜드	29 뉴질랜드	30 뉴질랜드	31 뉴질랜드	32 뉴질랜드	33 뉴질랜드
	34 뉴질랜드	35 뉴질랜드	36 뉴질랜드	37 뉴질랜드	38 뉴질랜드	39 뉴질랜드	40 뉴질랜드	41 뉴질랜드	42 뉴질랜드	43 뉴질랜드	44 뉴질랜드	45 뉴질랜드	46 뉴질랜드

2. 외국인인 체류자격 등 코드표

취업외국인	01 취업외국인											
	02 취업외국인	03 취업외국인	04 취업외국인	05 취업외국인	06 취업외국인	07 취업외국인	08 취업외국인	09 취업외국인	10 취업외국인	11 취업외국인	12 취업외국인	13 취업외국인
재정비준	15 재정비준											
	16 재정비준	17 재정비준	18 재정비준	19 재정비준	20 재정비준	21 재정비준	22 재정비준	23 재정비준	24 재정비준	25 재정비준	26 재정비준	27 재정비준
특별	29 특별											
	30 특별	31 특별	32 특별	33 특별	34 특별	35 특별	36 특별	37 특별	38 특별	39 특별	40 특별	41 특별

3. 비행시의 학력 및 직업 코드표

직업	01 직업											
	02 직업	03 직업	04 직업	05 직업	06 직업	07 직업	08 직업	09 직업	10 직업	11 직업	12 직업	13 직업
학력	15 학력											
	16 학력	17 학력	18 학력	19 학력	20 학력	21 학력	22 학력	23 학력	24 학력	25 학력	26 학력	27 학력
유치	29 유치											
	30 유치	31 유치	32 유치	33 유치	34 유치	35 유치	36 유치	37 유치	38 유치	39 유치	40 유치	41 유치

4. 학력 및 직업의 특수형태 코드표

특수형태	01 특수형태											
	02 특수형태	03 특수형태	04 특수형태	05 특수형태	06 특수형태	07 특수형태	08 특수형태	09 특수형태	10 특수형태	11 특수형태	12 특수형태	13 특수형태
공무원	15 공무원											
	16 공무원	17 공무원	18 공무원	19 공무원	20 공무원	21 공무원	22 공무원	23 공무원	24 공무원	25 공무원	26 공무원	27 공무원

5. 전회치분 코드표

대분	00 보양음	01 구부림저장	02 시집냉장	03 기타
계분	05 장해, 용고	06 벌음, 구부, 괴로	07 각종 소념은 화염	08 보양냉(소념)
	09 기타	10 감동저장음	11 기름채, 감동음역음	12 각종 소념임시 화염음
	기타	13 기호채, 감동음역음	14 이종저장저장시물	15 기타
	16 기호유채	17 식민화저지	18 물저분	19 정조저분
			20 기타	21 기타

6. 비형의 동기원인 코드표

01 생활근거	00 보합유목적	01 투쟁이유상	02 배우병적	03 직업적병적	04 일시적 필요 이용	05 대상물거래의 소후, 소외목적	06 기타 이유
20 계호, 간병, 피곤	02 양육하기 위해	03 벌음	04 병환	05 분노	06 성격착구	07 복종음 이용	08 출어, 호기심, 스릴
17 이상행동, 정신장애 또는 그 혐의	08 기타	09 동기불명					15 자기과치
							16 타물의 악용

7. 정신장애 등의 유무 코드표

1 정신장애가	2 정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	3 성격이상자	4 연으로 어지럽게 하는 자	5 도덕이상자	6 대위상용자	7 기타 악물상용자	8 동기불명상용자
3 합동상용자		0 비정정음					

8. 처우의견 코드표

01 심한불거시	02 불거분	03 일반	04 타기	05 복수타기	06 살인타기	07 장기	08 특수수감자	09 불안전가	10 단기	11 특별소년원용자
12 의료소년원용자	13 이종저장저장시물용자	14 이종양호저장용자	15 형사처분	16 경찰대(숙업소년)	17 기타					

9. 비행부원수 코드표

10X번	0211구역	0302구역	0411구역	0503구역	0609구역 이상
------	--------	--------	--------	--------	-----------

10. 계 코드표

01 경찰서(거소계)	02 구개소소관구활동	03 경찰유무관과동자활동	04 기타 지역경찰활동	05 지역경찰활동 이상	06 경중활동	07 기타 활동
08 조직범죄대책계	09 감형법계	10 도범계	11 가동법계	12 특별법계	13 감시계	14 기타계
18 보안계	19 기타계	20 경비 - 풍안계	21 교통부원계	22 기타계	23 방범 - 생활안전계	24 소년계
						25 복지법계

11. 생활형태 코드표

1 가족과 동거	2 고유주와 동거	3 개숙사	4 위숙	5 기타	6 기타(유형음)
----------	-----------	-------	------	------	-----------

12. 양친의 상태 코드표

1 양친의 심부름	2 양친이 모두 계	3 부가 계부	4 모가 계모	5 실 - 양부	6 계부	7 모고 있고 부고 없음	8 계모	9 양친없음	0 불명
-----------	------------	---------	---------	----------	------	---------------	------	--------	------

13. 모의 부재상황 코드표

1. 65후종일	2. 이간	3. 불구치	4. 불리고 징계 강	5. 미부분 강제 징	6. 소년과 별거	7. 모 없음
----------	-------	--------	-------------	-------------	-----------	---------

④	피해자의 직접 387-388	(:)	직접 (:)	(00) 법인·단체, 피해자 없음	이전 코드에 비해 외함
④	피해자의 국적 등 389-370	(:)	국적 등 (:)	(00) 법인·단체, 피해자 없음 (01) 일본	(02) 한국 (03) 조선 이전 코드에 비해 외함
④	피해자의 채무자액 등 371-372	(:)	채무자액 등 (:)	(00) 일본인·법인·단체, 피해자 없음	이전 코드에 비해 외함
④	피해금액 374-387	(:)	상액의 전액·상당·상당량	0000000 피해없음, 신용구한	
			상액의 전액·상당·상당량	0000000 피해 없음	
④	연금 이외의 피해종 388-393	(:)	(01) 송포	(02) 도둑류 (03) 화각·폭탄류 (04) 폭근류류 (05) 송용자동차 (06) 회용자동차 (07) 특수자동차 (08) 특수자동차 (기타)	차량·부품 기타, 자동차
			(10) 자동차(이하50cc이상)	(11) 항공기부착·착륙(50cc미만) (12) 자전거 (13) 보조판 (14) 내외계이연 (15) 카스태레오 (16) 그 외 차량용 부 기계류	
(:)	(:)	(17) 가전제품류 (18) 카메라류 (19) 휴대용 전화기 (20) 기타 전화기·팩스 (21) 휴대용 컴퓨터 (22) 건설기계 (23) 기타 기계	(24) 신용카드 (25) 현금카드 (26) 소회지급용카드 (27) 신용카드 (28) 그 외 카드 (29) 주권·유가증권 (30) 어음·수표 (31) 우표 (32) 카드·유가증권 (33) 송차권 (34) 기타 유가증권 (35) 배급통장·배급증서 (36) 외국통화 (37) 은행현금 (38) 신분증명서 (39) 증명서 (40) 조각 (41) 기 (42) 귀금속·보석·품 (43) 시계류 (44) 인장 (45) 의도통류 (46) 식료품류 (47) 화장품류 (48) 라이터 (49) 서적·공방구류 (50) 책·지갑 (51) 기타 (52) 미정	(53) 기타	
		(54) 인장 (55) 의도통류 (56) 식료품류 (57) 화장품류 (58) 라이터 (59) 서적·공방구류 (60) 책·지갑 (61) 기타 (62) 미정	(63) 기타		
④	임차정보요약장 415-409	평상 (:)	년 (:)	월 (:)	일 작성
④	임차정보요약장 402-409	자물부여(납은 일본력)			
④	이 포의 번호 409-437	자물부여(납은 일본력)			
④	사건수리부 번호 438-446	평상 (:)	년 (:)	월 (:)	일 작성
④	작성일자원번호 447-504	평상 (:)	년 (:)	월 (:)	일 작성
④	메타판 505-544				
④	메타판(부원용) 545-594				

4. 외국인의 체류자격 등 코드표

주요외국인	01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복지, 경관, 법률, 회계사, 의료사, 연구, 교육, 기술, 인문지리, 국제업무, 기업에 건근, 기능, 문화예술, 가족체류, 특정 활동, 일본인의 배우자등, 임시체류, 기업지상권 등(상업), 동시 임시비호신청		02 연구	03 취업	04 유학
	05 학학	06 연수	07 장기(보통)거주	08 불법입국	09 불법입국
재입미권	재입미권 관계자		10 불법체류	11 여형	12 단기체류
	17 국민	18 연속	19 국민 - 연속의 가족	13 우한	14 취학
재입외국인	30 영주권, 영주자의 배우자 등, 특별영주자		15 영수	16 기타	
불법체류	긴급경정				

<부록 2> 한국 범죄통계 원표

작성 년월	년	월	발 생 통 계 원 표																								
발생시 수사기관	본표번호		수사사건번호			관계검거사건표번호			죄 명																		
청	청 서		청 서			청 서			형(특별)법 제 조(의) 항																		
특별시(도) 서	월		월			월			가정폭력	1.유	2.무	학교폭력	1.유	2.무													
코드	제 호		제 호			제 호			외국인 피의자 관련		1.유	2.무															
발 생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요일)			인 지 년 월 일 시			년 월 일 시 (요일)																				
발 생 부 터 인 지 까 지 기 간	1. 1 시간 이내	2. 2 시간 이내	3. 5 시간 이내	4. 12 시간 이내	5. 24 시간 이내	6. 2 일 이내	7. 5 일 이내	8. 10 일 이내	9. 1 개월 이내	10. 3 개월 이내	11. 3 개월 초과																
범죄 수 범	강 도	1.침입강도 2.노상강도 3.차내강도 4.해상강도 5.차량이용강도 6.약취강도 7.마취강도 8.인질강도 9.강도강간 10.기타																									
	절 도	11. 빈 집 (아파트·주택)					12. 사 무 실		13. 공 장		20. 소매치기		21. 날 치 기		22. 들 치 기												
	사 기	14. 상 점		15. 숙박업소		16. 기 타		23. 차량이용절도		24. 속임수 절도		25. 기 타															
발 생 일 특 수 사 정	1. 토요일		2. 공휴일		3. 행사일		4. 정전시		5. 재해시		6. 미 상		7. 해당무														
범 행 시 일 기	1. 맑음		2. 흐림		3. 비		4. 폭풍우		5. 눈		6. 폭설		7. 안개		8. 바람		9. 만월		10. 안흑		11. 미상						
수 사 단 서	1. 현 행 범		신 고						미 신 고																		
			11. 피해자신고		12. 고 소		13. 고 발		21. 불심검문		22. 피해품발견		23. 변사체														
미 신 고 이 유	1. 피해근소		2. 부정물자		3. 명예보호		4. 보복우려		5. 범인이 친족·친우		6. 피해품 회수 기대 난		7. 범인검거 기대 난		8. 유실로 착각		9. 절차복잡		10. 신고지 원거리		11. 피해사실 올라서		12. 기 타				
	피 해 자	성 별	1. 남		2. 여		연 령		1. 6세 이하		2. 12세 이하		3. 15세 이하		4. 20세 이하		5. 30세 이하		6. 40세 이하		7. 50세 이하		8. 60세 이하		9. 60세 초과		외국인 코드
1. 국적			2. 신분																								
피해자피해시상황		1.취침중		2.일하는중		3.부재중		4.담화중		5.혼잡중		6.보행중		7.편대정신일어서		8.속아서		9.기타		10.미상							
발 생 지 (서울특별시 및 구 단위 광역시 선택함)	서울		1-1 종로	1-2 중구	1-3 용산	1-4 성동	1-5 광진	1-6 동대문	1-7 중랑	1-8 성북	1-9 강북	1-10 도봉	1-11 노원	1-12 은평	1-13 서대문	1-14 마포	1-15 양천	1-16 강서	1-17 구로	1-18 금천	1-19 영등포	1-20 동작					
	부산		2-1 중구	2-2 서구	2-3 동구	2-4 영도	2-5 부산진	2-6 동래	2-7 남구	2-8 북구	2-9 해운대	2-10 사하	2-11 근정	2-12 강서	2-13 연제	2-14 수영											
	대구		3-1 중구	3-2 동구	3-3 서구	3-4 남구	3-5 북구	3-6 수성	3-7 달서	3-8 달성	4-1 중구	4-2 동구	4-3 서구	4-4 남구	4-5 연수	4-6 남동	4-7 북동										
	광주		5-1 동구	5-2 서구	5-3 남구	5-4 북구	5-5 광산	6-1 중구	6-2 동구	6-3 서구	6-4 유성	6-5 대덕	7-1 중구	7-2 동구													
	대전		8-1 중구	8-2 서구	8-3 유성	8-4 대덕	9-1 중구	9-2 동구	9-3 서구	9-4 유성	9-5 대덕	9-6 울산	9-7 중구	9-8 동구													
	충청		10-1 중구	10-2 서구	10-3 유성	10-4 대덕	10-5 유성	10-6 대덕	10-7 유성	10-8 대덕	10-9 유성	10-10 대덕	10-11 유성	10-12 대덕	10-13 유성	10-14 대덕	10-15 유성	10-16 대덕	10-17 유성	10-18 대덕	10-19 유성	10-20 대덕					
	전라		11-1 중구	11-2 서구	11-3 유성	11-4 대덕	11-5 유성	11-6 대덕	11-7 유성	11-8 대덕	11-9 유성	11-10 대덕	11-11 유성	11-12 대덕	11-13 유성	11-14 대덕	11-15 유성	11-16 대덕	11-17 유성	11-18 대덕	11-19 유성	11-20 대덕					
경상		12-1 중구	12-2 서구	12-3 유성	12-4 대덕	12-5 유성	12-6 대덕	12-7 유성	12-8 대덕	12-9 유성	12-10 대덕	12-11 유성	12-12 대덕	12-13 유성	12-14 대덕	12-15 유성	12-16 대덕	12-17 유성	12-18 대덕	12-19 유성	12-20 대덕						
강원		13-1 중구	13-2 서구	13-3 유성	13-4 대덕	13-5 유성	13-6 대덕	13-7 유성	13-8 대덕	13-9 유성	13-10 대덕	13-11 유성	13-12 대덕	13-13 유성	13-14 대덕	13-15 유성	13-16 대덕	13-17 유성	13-18 대덕	13-19 유성	13-20 대덕						
충청		14-1 중구	14-2 서구	14-3 유성	14-4 대덕	14-5 유성	14-6 대덕	14-7 유성	14-8 대덕	14-9 유성	14-10 대덕	14-11 유성	14-12 대덕	14-13 유성	14-14 대덕	14-15 유성	14-16 대덕	14-17 유성	14-18 대덕	14-19 유성	14-20 대덕						
경상		15-1 중구	15-2 서구	15-3 유성	15-4 대덕	15-5 유성	15-6 대덕	15-7 유성	15-8 대덕	15-9 유성	15-10 대덕	15-11 유성	15-12 대덕	15-13 유성	15-14 대덕	15-15 유성	15-16 대덕	15-17 유성	15-18 대덕	15-19 유성	15-20 대덕						
전라		16-1 중구	16-2 서구	16-3 유성	16-4 대덕	16-5 유성	16-6 대덕	16-7 유성	16-8 대덕	16-9 유성	16-10 대덕	16-11 유성	16-12 대덕	16-13 유성	16-14 대덕	16-15 유성	16-16 대덕	16-17 유성	16-18 대덕	16-19 유성	16-20 대덕						
전라		17-1 중구	17-2 서구	17-3 유성	17-4 대덕	17-5 유성	17-6 대덕	17-7 유성	17-8 대덕	17-9 유성	17-10 대덕	17-11 유성	17-12 대덕	17-13 유성	17-14 대덕	17-15 유성	17-16 대덕	17-17 유성	17-18 대덕	17-19 유성	17-20 대덕						
전라		18-1 중구	18-2 서구	18-3 유성	18-4 대덕	18-5 유성	18-6 대덕	18-7 유성	18-8 대덕	18-9 유성	18-10 대덕	18-11 유성	18-12 대덕	18-13 유성	18-14 대덕	18-15 유성	18-16 대덕	18-17 유성	18-18 대덕	18-19 유성	18-20 대덕						
전라		19-1 중구	19-2 서구	19-3 유성	19-4 대덕	19-5 유성	19-6 대덕	19-7 유성	19-8 대덕	19-9 유성	19-10 대덕	19-11 유성	19-12 대덕	19-13 유성	19-14 대덕	19-15 유성	19-16 대덕	19-17 유성	19-18 대덕	19-19 유성	19-20 대덕						
전라		20-1 중구	20-2 서구	20-3 유성	20-4 대덕	20-5 유성	20-6 대덕	20-7 유성	20-8 대덕	20-9 유성	20-10 대덕	20-11 유성	20-12 대덕	20-13 유성	20-14 대덕	20-15 유성	20-16 대덕	20-17 유성	20-18 대덕	20-19 유성	20-20 대덕						
전라		21-1 중구	21-2 서구	21-3 유성	21-4 대덕	21-5 유성	21-6 대덕	21-7 유성	21-8 대덕	21-9 유성	21-10 대덕	21-11 유성	21-12 대덕	21-13 유성	21-14 대덕	21-15 유성	21-16 대덕	21-17 유성	21-18 대덕	21-19 유성	21-20 대덕						
전라		22-1 중구	22-2 서구	22-3 유성	22-4 대덕	22-5 유성	22-6 대덕	22-7 유성	22-8 대덕	22-9 유성	22-10 대덕	22-11 유성	22-12 대덕	22-13 유성	22-14 대덕	22-15 유성	22-16 대덕	22-17 유성	22-18 대덕	22-19 유성	22-20 대덕						
전라		23-1 중구	23-2 서구	23-3 유성	23-4 대덕	23-5 유성	23-6 대덕	23-7 유성	23-8 대덕	23-9 유성	23-10 대덕	23-11 유성	23-12 대덕	23-13 유성	23-14 대덕	23-15 유성	23-16 대덕	23-17 유성	23-18 대덕	23-19 유성	23-20 대덕						
전라		24-1 중구	24-2 서구	24-3 유성	24-4 대덕	24-5 유성	24-6 대덕	24-7 유성	24-8 대덕	24-9 유성	24-10 대덕	24-11 유성	24-12 대덕	24-13 유성	24-14 대덕	24-15 유성	24-16 대덕	24-17 유성	24-18 대덕	24-19 유성	24-20 대덕						
전라		25-1 중구	25-2 서구	25-3 유성	25-4 대덕	25-5 유성	25-6 대덕	25-7 유성	25-8 대덕	25-9 유성	25-10 대덕	25-11 유성	25-12 대덕	25-13 유성	25-14 대덕	25-15 유성	25-16 대덕	25-17 유성	25-18 대덕	25-19 유성	25-20 대덕						
전라		26-1 중구	26-2 서구	26-3 유성	26-4 대덕	26-5 유성	26-6 대덕	26-7 유성	26-8 대덕	26-9 유성	26-10 대덕	26-11 유성	26-12 대덕	26-13 유성	26-14 대덕	26-15 유성	26-16 대덕	26-17 유성	26-18 대덕	26-19 유성	26-20 대덕						
전라		27-1 중구	27-2 서구	27-3 유성	27-4 대덕	27-5 유성	27-6 대덕	27-7 유성	27-8 대덕	27-9 유성	27-10 대덕	27-11 유성	27-12 대덕	27-13 유성	27-14 대덕	27-15 유성	27-16 대덕	27-17 유성	27-18 대덕	27-19 유성	27-20 대덕						
전라		28-1 중구	28-2 서구	28-3 유성	28-4 대덕	28-5 유성	28-6 대덕	28-7 유성	28-8 대덕	28-9 유성	28-10 대덕	28-11 유성	28-12 대덕	28-13 유성	28-14 대덕	28-15 유성	28-16 대덕	28-17 유성	28-18 대덕	28-19 유성	28-20 대덕						
전라		29-1 중구	29-2 서구	29-3 유성	29-4 대덕	29-5 유성	29-6 대덕	29-7 유성	29-8 대덕	29-9 유성	29-10 대덕	29-11 유성	29-12 대덕	29-13 유성	29-14 대덕	29-15 유성	29-16 대덕	29-17 유성	29-18 대덕	29-19 유성	29-20 대덕						
전라		30-1 중구	30-2 서구	30-3 유성	30-4 대덕	30-5 유성	30-6 대덕	30-7 유성	30-8 대덕	30-9 유성	30-10 대덕	30-11 유성	30-12 대덕	30-13 유성	30-14 대덕	30-15 유성	30-16 대덕	30-17 유성	30-18 대덕	30-19 유성	30-20 대덕						
전라		31-1 중구	31-2 서구	31-3 유성	31-4 대덕	31-5 유성	31-6 대덕	31-7 유성	31-8 대덕	31-9 유성	31-10 대덕	31-11 유성	31-12 대덕	31-13 유성	31-14 대덕	31-15 유성	31-16 대덕	31-17 유성	31-18 대덕	31-19 유성	31-20 대덕						
전라		32-1 중구	32-2 서구	32-3 유성	32-4 대덕	32-5 유성	32-6 대덕	32-7 유성	32-8 대덕	32-9 유성	32-10 대덕	32-11 유성	32-12 대덕	32-13 유성	32-14 대덕	32-15 유성	32-16 대덕	32-17 유성	32-18 대덕	32-19 유성	32-20 대덕						
전라		33-1 중구	33-2 서구	33-3 유성	33-4 대덕	33-5 유성	33-6 대덕	33-7 유성	33-8 대덕	33-9 유성	33-10 대덕	33-11 유성	33-12 대덕	33-13 유성	33-14 대덕	33-15 유성	33-16 대덕	33-17 유성	33-18 대덕	33-19 유성	33-20 대덕						
전라		34-1 중구	34-2 서구	34-3 유성	34-4 대덕	34-5 유성	34-6 대덕	34-7 유성	34-8 대덕	34-9 유성	34-10 대덕	34-11 유성	34-12 대덕	34-13 유성	34-14 대덕	34-15 유성	34-16 대덕	34-17 유성	34-18 대덕	34-19 유성	34-20 대덕						
전라		35-1 중구	35-2 서구	35-3 유성	35-4 대덕	35-5 유성	35-6 대덕	35-7 유성	35-8 대덕	35-9 유성	35-10 대덕	35-11 유성	35-12 대덕	35-13 유성	35-14 대덕	35-15 유성	35-16 대덕	35-17 유성	35-18 대덕	35-19 유성	35-20 대덕						
전라		36-1 중구	36-2 서구	36-3 유성	36-4 대덕	36-5 유성	36-6 대덕	36-7 유성	36-8 대덕	36-9 유성	36-10 대덕	36-11 유성	36-12 대덕	36-13 유성	36-14 대덕	36-15 유성	36-16 대덕	36-17 유성	36-18 대덕	36-19 유성	36-20 대덕						
전라		37-1 중구	37-2 서구	37-3 유성	37-4 대덕	37-5 유성	37-6 대덕	37-7 유성	37-8 대덕	37-9 유성	37-10 대덕	37-11 유성	37-12 대덕	37-13 유성	37-14 대덕	37-15 유성	37-16 대덕	37-17 유성	37-18 대덕	37-19 유성	37-20 대덕						
전라		38-1 중구	38-2 서구	38-3 유성	38-4 대덕	38-5 유성	38-6 대덕	38-7 유성	38-8 대덕	38-9 유성	38-10 대덕	38-11 유성	38-12 대덕	38-13 유성	38-14 대덕	38-15 유성	38-16 대덕	38-17 유성	38-18 대덕	38-19 유성	38-20 대덕						
전라		39-1 중구	39-2 서구	39-3 유성	39-4 대덕	39-5 유성	39-6 대덕	39-7 유성	39-8 대덕	39-9 유성	39-10 대덕	39-11 유성	39-12 대덕	39-13 유성	39-14 대덕	39-15 유성	39-16 대덕	39-17 유성	39-18 대덕	39-19 유성	39-20 대덕						
전라		40-1 중구	40-2 서구	40-3 유성	40-4 대덕	40-5 유성	40-6 대덕	40-7 유성	40-8 대덕	40-9 유성	40-10 대덕	40-11 유성	40-12 대덕	40-13 유성	40-14 대덕	40-15 유성	40-16 대덕	40-17 유성	40-18 대덕	40-19 유성	40-20 대덕						
전라		41-1 중구	41-2 서구	41-3 유성	41-4 대덕	41-5 유성	41-6 대덕	41-7 유성	41-8 대덕	41-9 유성	41-10 대덕	41-11 유성	41-12 대덕	41-13 유성	41-14 대덕	41-15 유성	41-16 대덕	41-17 유성	41-18 대덕	41-19 유성	41-20 대덕						
전라		42-1 중구	42-2 서구	42-3 유성	42-4 대덕	42-5 유성	42-6 대덕	42-7 유성	42-8 대덕	42-9 유성	42-10 대덕	42-11 유성	42-12 대덕	42-13 유성	42-14 대덕	42-15 유성	42-16 대덕	42-17 유성	42-18 대덕	42-19 유성	42-20 대덕						
전라		43-1 중구	43-2 서구	43-3 유성	43-4 대덕	43-5 유성	43-6 대덕	43-7 유성	43-8 대덕	43-9 유성	43-10 대덕	43-11 유성	43-12 대덕	43-13 유성	43-14 대덕	43-15 유성	43-16 대덕	43-17 유성	43-18 대덕	43-19 유성	43-20 대덕						
전라		44-1 중구	44-2 서구	44-3 유성	44-4 대덕	44-5 유성	44-6 대덕	44-7 유성	44-8 대덕	44-9 유성	44-10 대덕	44-11 유성	44-12 대덕	44-13 유성	44-14 대덕	44-15 유성	44-16 대덕	44-17 유성									

작성 년월	년 월	검 거 통 계 원 표															
검거(최종처리)수사기관	본표번호	수사사건부번호	관계검거사건표번호	죄 명		형(특별)법 제 조(의) 항											
청 특별시(도) 서	청 서 월	청 서 월	청 서 월														
코 드	제	호 제	호 제	호	가정폭력	1.유	2.무	학교폭력	1.유	2.무							
검 거 년 월 일	년 월 일			방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발 생 부 터 검 거 까 지 기 간	1.1 일 이내	2.2 일 이내	3.3 일 이내	4.10 일 이내	5.1 개월 이내	6. 3 개월 이내	7. 6 개월 이내	8. 1 년 이내	9. 1 년 초관								
범 죄 수 법	강 도	1.침입강도	2.노상강도	3.차내강도	4.해상강도	5.차량이용강도	6.약취강도	7.미취강도	8.인질강도	9.강도강간	10.기타						
	절 도	침 입 절 도				20. 소매치기		21. 날 치 기		22. 들 치 기							
		11. 빈 집 (아파트·주택)		12. 사 무 실		13. 공 장		23. 차량이용절도		24. 속임수 절도		25. 기 타					
		14. 상 정		15. 숙박업소		16. 기 타											
사 기	31.가짜속임	32.매매가장	33.알선사기	34.부동산사 기	35.수표어음 속임	36.차용사기	37.모집사기	38.컴퓨터등 사용사기	39.기타								
침입· 절도	침 입 구	1.출입문		2.창 문		3.담		4.지 붕		5.비 상 구		6.기 타					
	침 입 방 법	1.문단속 없음		2.시정장치 부수고		3.문 부수고		4.시정장치 열고		5.유리 깨고		6.기 타					
검 거 인 원 · 기 수 미 수 별	검 거 인 원						기수·미수별										
	1.한 국 인			2.외 국 인			1.기수		2.미수		3.예비·음모						
	1.남자: 명	2.여자: 명	3.법 인	1.남자: 명	2.여자: 명	3.법 인											
공 범 수	1. 단독	2. 2명	3. 3명	4. 4명	5. 5명	6. 10명 이하	7. 20명 이하	8. 기타									
범행· 수단· 구	종 류	1.총기	2.모의총기	3.칼	4.도끼	5.낫	6.유리병	7.돌	8.몽둥이	범행도구 조치							
		9.공구	10.줄(끈)	11.마취제	12.독극물	13.컴퓨터	14.기 타	15.소지무	1.압수		2.미발견						
	입 수 방 법	1.총전부더소지		2.매입		3.대여받은		4.절취		5.습득		6.피해자 것 사용		7.자기가 만들		8.기타	
검 거 단 서	1.현 행 법		2.피해자신고		3.고 소		4.고 발		5.자수		6.민간체포		7.진정·투서		8.타인신고		
	9.신 문		10.불심검문		11.탐문·정보		12.안면식별		13.감식자료		14.번사체		15.범죄수법		16.발자국		
	17.검사지휘		18.타기관에서 이송		19.범행도구등 발견		20.장물		21.전화조회		22.기 타						
장 물	처 분 방 법	매 각 등						7.증여		8.폐기							
		1.전당포		2.귀금속상		3.고물상		4.노점		5.기타업자		6.일 반		9.피의자소비		10.기타	
	금전소비용도	1.유흥		2.오락		3.생활비		4.도박		5.학비		6.증여		7.소지중		8.기타	
회 수 상 황	회 수 액	품 명	1.화폐	2.자동차	3.유가증권	4.귀금속	5.전기 전자제품	6.오토바이 자전거	7.기구류	회 수 액 합 계							
		금액(시가)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품 명	8.의류	9.기계류	10.농·임산물	11.축산물	12.수산물	13.잡화	14.기타									
	금액(시가)	원	원	원	원	원	원	원									
	회 수 정 도	1. 전 부			2. 1/2 이상			3. 1/2 미만			4. 미회수						
이 상 작 성 자	년 월 일			계 급	성 명		(인)										

작성 년월	년 월		피 의 자 통 계 원 표														
검거(최종처리)수사기관	본 표 번호	수사사건부 번호	관계발생사건표번호	관계검거사건표번호	죄 명	형(특별)법 제 조(의) 항											
청 특별시(도) 서	청 서 월	청 서 월	청 서 월	청 서 월	가정폭력	1.유	2.무	학교폭력	1.유	2.무							
코 드	제 호	제 호	제 호	제 호	외국인코드	1.국적			2.신분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여권)번호		법행시연령		세 성별		1.남	2.여								
직 업	자 영 자	1.농.임.수산업	2.광업	3.제조업	4.건설업	5.도.소매업	6.무역업	7.요식업	8.숙박업								
	피고용자	9.유 흥 업	10.금 융 업	11.부동산업	12.의료보건업	13.차량정비업	14.노 정	15.행 상	16.기타사업								
	전 문 직	17.교원(사립)	18.사 무 원	19.기 술 자	20.점 원	21.공 원	22.운 전 사	23.경 비 원	24.외 판 원								
	공 무 원	25.국공영기업체 직 원	26.일 반 회 사 원	27.금융기관 직 원	28.유 흥 업 종 사 자	29.요 식 업 종 사 자	30.일 용 노동자	31.기타피고용자									
	기 타	32.의 사	33.변 호 사	34.교 수	35.종 교 가	36.언 론 인	37.예 술 인	38.기타 전문직									
전 과	0.없음	1.1범	2.2범	3.3범	4.4범	5.5범	6.6범	7.7범	8.8범	9.9범이상							
재 범 상 황	전회처분 내용	0.없음		1.즉결심판		2.기소유예		3.선도유예		4.수배중		5.보호처분		6.선고유예			
	보호처분 재범기관	7.집행유예중		8.보석.형집행 정지중		9.가석방		10.형(재산형포함)집행종료		11.감호소출소		12.기 타					
공 범 관 계	1.단독범	공 범								범							
		2.학교동창	3.교도소·소년원동료	4.직장동료	5.친인척	6.군동료	7.동네친구	8.고향친구	9.애인	10.기타							
피해자와의관계	1.국가	2.공무원	3.고용자	4.피고용자	5.직장동료	6.친구	7.애인	8.동거친족	9.기타친족	10.거래 상대방	11.이웃	12.지인	13.타인	14.기타			
법행후 은신처	1.자기집	2.공범집	3.애인집	4.친족집	5.지인집	6.숙박업소	7.야 외	8.현장검거	9.외국	10.기타							
마 약 류 등 상 용 여 부	마 약 류							4.본드.신나등 환각물질		5.알 콜		6.해 당 무					
	1.마약		2.대마		3.향정신성의약품												
범 행 시 정 신 상 태	1.정 상		정 신 장 애				5.주 취		6.월경시 이상								
			2.정신이상		3.정신 박약		4.기타 정신장애										
범 행 동 기	이 욱						7.	8.	9.	10.	11.	12.	13.	14.	15.		
	1.생 활비 마련	2.유 흥비 마련	3.도 박비 마련	4.허 영 사 치심	5.치 부	6.기 타	7.사 행심	8.보 복	9.가 정 불화	10.호 기심	11.유 혹	12.우 발적	13.현 실 불만	14.부 주의	15.기 타		
학 력	1.불 취학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전 문 대 학		일 반 대 학			17.대 학원	18.기 타	19.미 상
		2.재 중	3.중 퇴	4.졸 업	5.재 중	6.중 퇴	7.졸 업	8.재 중	9.중 퇴	10.졸 업	11.재 중	12.중 퇴	13.졸 업	14.재 중	15.중 퇴	16.졸 업	
생 활 정 도	1.하 류	2.중 류	3.상 류	종 교			1.불 교	2.기 독교	3.천 주교	4.원 불교	5.천 도교	6.기 타종교	7.종교무				
혼 인 관 계 및 부 모 관 계	혼 인 관 계						부 모 관 계 (미 혼 자 에 한 함)										
	1.유배 자	2.동 거	3.이 혼	4.사 별	5.미 혼	1.실(양) 부모	2.계 부모	3.실부 계모	4.실부 무모	5.실모 계부	6.실모 무부	7.계부 무모	8.계모 무부	9.부 모			
검 거 자 (경 찰)	1.수사.형사	2.외근·112차	3.교통	4.검문소	5.기타경찰	6.방범원	7.경비원	8.피해자	9.기타민간인	10.기타							
조 치	1.경찰(군)구속(송치)		2.경찰(군)불구속(송치)		자백여부		1.자백	2.일부자백		3.부인		4.묵비					
구 속 별	1.현행범체포		2.긴급체포	3.사전영장	4.체포	불구속별		1.불구속입건	2.감r사기각	3.판사기각	4.적부심석방	5.검사구속취소					
송 치 의 견	1.구속기소	2.불구속 기소	3.소년 보호송치	4.기소유예	5.기소중지	6.형의없음	7.죄가안됨	8.공소권 없음	9.공소부류	10.이송	11.참고인 중지	12.가정 보호송치					
사 건 처 리 기 간	1. 10일 이내		2. 20일 이내		3. 1개월 이내		4. 2개월 이내		5. 3개월 이내		6. 6개월 이내		7. 6개월 초과				
이 상 작 성 자	년 월 일				계 급		성 명		(인)								
검 찰	사건번호	200	형 제	호	청 코 드												